



제2장

公的資金의 支援 및 回收現況

여 백

를 지원하였다.¹⁾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구조조정특별기구의 정부보증채권발행, 중앙은행의 신용공급 또는 정부재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주고 있으므로 원금의 경우와 같이 양 기금이 향후 이자를 상환할 수 없을 때까지 채무이다. 또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도 정부가 양 기금에 무이자로 "용자"해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회수자금으로 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며 정부는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만을 여 상환하여야 한다. 동 자금은 그 조성 및 상환주체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고 발행된 채권만기시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도록부터)의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금을 위해서 사용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법들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6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그 조성원천에 따라 공적자금과 공공자

1. 公的資金의 概念

1. 公的資金의 支援

제 2 장 公的資金의 支援 및 回收現況

한편, 공공자금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동 자금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64조원의 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된 것으로서 해당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자금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보증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보증채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비록 금융기관이 정부보증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일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직접 투입된 자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이나 공공자금과는 구분된다.

2. 支援原則 및 支援根據와 意思決定體系

가. 공적자금의 지원원칙

1997년말 은행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24개국의 경험을 토대로 구조조정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비교분석한 IMF의 한 연구결과²⁾는 우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과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동 연구결과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면 초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사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우선 구조조정시 신속하고 예방적인 시정조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은행구조조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조정(부실채권정리 및

2) Claudia Dziobek and Ceyla Pazarbasioglu, "Lessons from Systemic Bank Restructuring: A Survey of 24 countries", IMF working paper

증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내부경영 혁신을 통해 은행 수익성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진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일 대차대조표상의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진 반면 추가적인 은행경영혁신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은행위기의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정확한 부실원인의 파악에 따른 적절한 대처, 정치적 컨센서스의 도출, 회계제도와 감독제도의 강화와 같은 환경의 개선 또한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구조조정시 발생가능한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긴축적 거시정책이 초기에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구조조정의 진전을 위한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는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은행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국가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면에서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 〉 금융구조조정의 속도와 공적비용간의 관계

(단위 : GDP대비 %)

신속한 진전도	비용	중간 진전도	비용	점진적 진전도	비용
Cote d'Ivoire(91)	13.0	Chile(83)	33.0	Kuwait(92)	45.0
Peru	0.4	Finland(91)	9.9	Mauritania(93)	15.0
Philippines(84)	4.0	Ghana(89)	6.0	Tanzania(92)	14.0
Spain(80)	15.0	Hungary(93)	12.2		
Sweden(91)	4.3	Poland(93)	5.7		

자료 : IMF working paper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전념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부실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구제금융 지원은 배제되었다. 부채조정기구(Loan workout unit)의 설치 및 적극적인 이용, 부실은행 정리시 폐

쇄와 합병방식의 적용, 부실채권과 정부보증채권의 스왑 및 정부증자지원방식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특징으로 제시되었으며 은행경영진에 대해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적절한 유인의 제공과 공적자금 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IMF등을 통한 이러한 각종 정책참고자료들은 구조조정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경우 구조개혁 및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과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³⁾

(1)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

공적자금은 엄밀하게 보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채무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공사가 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은 해야 하지만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손실분담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자금지원으로 인한 궁극적인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와 회생가능성을 엄밀히 판정하여 공적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결정할 때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실사하고 해당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필요 규모를 엄밀히 산정하였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자금회수율이 높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 유상증자, 후순위채권의 발행, 조직 및 인력의 감축과 같은 자구

3) 주요국가의 금융위기 극복사례들과 관련하여 Charles Goodhart 교수가 발표한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다섯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①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구조조정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②문제은행들이 대출을 연체한 차입자에게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③정치적 공감대 고취를 통해 구조조정계획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피한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위의 세가지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제약 조건(자금조달의 이용가능성, 부실채권과 금융기관을 처분하기 위한 시장의 이용가능성, 구조조정 계획을 관리하는 노우하우 등)들은 상이하므로 제약조건에 따라 구조조정의 모습이 결정된다. 셋째, 1980년대 칠레와 1990년대 멕시코의 경험은 개도국에서 정부나 금융감독당국들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의 채무에 대한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정부와 금융감독당국들은 위기시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의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금융감독당국들은 경제 또는 정치적 제약조건들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힘이 종종 아주 보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하고, 동종업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이나 기제공된 자금의 상환유예, 예금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손실의 분담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2) 자기책임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원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자기 책임의 원칙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진 교체, 인원·점포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한편, 특히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주)}

실제자금을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을 추진중에 있다.

(3)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금융위기를 경험한 각국의 예를 감안하여 구조조정전문기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자금지원절차 등 구조조정전문기구의 운영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실사를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시가로 부실채권을 매입토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한 IMF와 IBRD 등은 특히 엄격한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갔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증자를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될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존립수준인 5천만원의 최저자본금 수준으로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요구⁴⁾한 것도 IMF였다.

4) 종전에는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의해 설립최저자본금 수준(은행의 경우 1,000억원 등)까지만 자본금 감소가 가능하였다.

주) 2000년 8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261개 전 대상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임직원 2,103명을 문책조치하고 이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1,00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2,094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도록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5,894억원 상당의 가압류조치를 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p. 311~313 참조

정부는 IMF·IBRD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공적자금 지원의 세부원칙을 정립하였다.

■IMF와의 합의 내용

- 공적자금은 폐쇄 금융기관의 청산과 부실하나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다음에 한정된다
 -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영정상화와 합병의 경우. 단, 구주주 또는 신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자본참여 등과 같은 적절한 손실분담이 있는 경우
 - 계약이전의 경우
 - 주식의 완전감자, 경영진의 교체를 전제로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 단, 해당 은행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자본참여, 기타 지원수단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은행에 대해서는 제공될 수 없다.

■IBRD와의 합의내용

- 정부가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출채권 매입, 현금 또는 채권 등의 출자, 후순위채 매입 또는 기타 은행자산에 대한 보증의 방법이 가능하다.
- 정부는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현재 상태의 무수익여신외에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무수익여신까지 감안한 예상손실을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금융기관의 진정한 가치를 감안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자기자본이 부족한 은행들끼리 합병하는 경우 정부는 합병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 이를 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 우량은행과 자기자본 부족은행이 합병하는 경우 정부는 우량은행의 합병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타 자체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기본자본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신규투자가 있는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하고, 이 경우 자금지원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후순위채 매입에 한정한다.
- 은행이 합병에 실패하거나 적절한 신규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청산하는 경우 자체회생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분석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출자한다.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에 대한 이러한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부는 1998년 9월 본격적인 공적자금 지원에 앞서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우선 금융기관 스스로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원칙하에 보완적으로 실시한다.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소요액은 최대한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공적자금 지원에 앞서 감자를 통한 기존 주주의 손실분담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교체 등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한다. 인원과 점포의 감축 등 자체 경영개선노력과 외자유치 등의 자본확충 노력에 연계하여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내용을 사전에 고시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98년 9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적용하였다.

■ 5개 계약이전결정 대상은행

- 자산초과 부채액 보전을 위한 출연
- 은행 인수에 따라 인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증자지원
- 부실채권 매입
 - 부실은행: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 인수은행: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의 50% 범위내에서 매입

■ 합병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증자지원

- 우량은행 + 우량은행: 지원없음
 - 우량은행 + 부실은행: 우량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지원
 - 부실은행 + 부실은행: 부실화요인(협조유자, 워크아웃계열)을 감안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수준이 되도록 지원
 - * 부실은행: 조건부 승인은행, 경영진단 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 은행
 - 부실채권 매입
 - 부실은행: 매입가능한 부실채권 전량 매입
 - 우량은행: 부실채권의 50%범위내에서 매입
- 자체정상화 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이나 합병하지 않은 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 후순위채 매입 지원
 - 부실채권 매입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가능한 부실채권 전량 매입

구조조정유형		정부지원 원칙			
		증 자		부실채권 매입 ³⁾	후순위채 ⁴⁾
		자산부족분 (예금보험공사)	BIS제고 지원분		
건전은행 ¹⁾ +	①건전은행	×	×	○	○
	②회생가능은행	×	×	○	○
	③부실은행	○	○	○	○
	④현재형태지속	×	×	○	○
회생가능 은행 ²⁾ +	⑤회생가능은행	×	×	○	○
	⑥부실은행	○	○	○	○

주 1) 1997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초과은행

2) 1997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은행중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은 은행

3) 부실은행간의 합병 또는 부실은행 인수시에는 매입가능분을 전액매입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실분담 차원에서 50% 한도내에서 매입지원

4) 중소기업 지원실적등에 비례하여 후순위채 매입지원

< 참고 2 > IBRD와의 공적자금 지원원칙 합의내용

Supplement to Policy Matrix on Financial Sector Reform

As part of the Policy Matrix on Financial Sector Reform, the Government is to adopt objectives and principles acceptable to the Bank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in making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plans of the seven undercapitalized banks, and other banks so identified,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following objectives and principles

Objectives

- Bring in new private investors with substantial capital at risk, and who are fit and proper and will exert a positive, professional influence on bank governance.
- Bring in new managers with proven technical and managerial skills and experience to operate and restructure banks of comparable size.
- After receiving support, banks are adequately capitalized, have adequate liquidity and are sustainably profitable.
- Banks undergo operational restructuring in a minimum period of time, rapidly implement world-class risk management practices, and resume normal banking activities(e.g, lending to creditworthy firms).
-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to banks only provided where demonstrably less costly to the Government than liquidation.
- Government recovers to maximum extent possible its financial assistance.
- Government sells its ownership interest within shortest period possible

Principles:

-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banks by government may include equity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form of cash or interest-paying financial instruments, purchase of loans, purchase of subordinated debt, and/or guarantees on bank assets.

- Government will make transparent the criteria and processes for providing financial support.
- Government will attempt to attract new capital from qualified investors wherever possible, us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s an inducement to new investment where required.
- Government support will be conditional upon approved restructuring ("self-rescue") plans and efforts by banks.
- Government will make transparent its exit strategy, including publicly announcing its commitment to sell its ownership interests as soon as possible.
- Financial support (including direct recapitalization) will be provided only after capital has been adjusted to reflect its true value, taking into account adequate estimates of losses in currently identified non-performing assets(NPAs), as well as losses associated with a further deterioration in loan quality.
- Existing shareholders of undercapitalized banks will suffer a significant dilution of their ownership interests.
- In the case of mergers among undercapitalized banks,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resulting bank capital to 10% of risk-adjusted assets based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and will obtain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bank(generally 80 or 90% or more)
- In the case of mergers among an adequately capitalized bank and an undercapitalized bank,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resulting bank capital to the level of the adequately capitalized bank, which will in all cases exceed 8% of risk-adjusted assets base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by an adequately capitalized bank of an undercapitalized bank subject to mandatory transfer (e.g., P&A transactions),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resulting bank capital to the level of the adequately capitalized bank, which will in all cases exceed 8% or risk-adjusted assets based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 In the case of mergers among an adequately capitalized bank and an undercapitalized bank,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resulting bank capital to the level of the adequately capitalized bank, which will in all cases exceed 8% of risk-adjusted assets base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by an adequately capitalized bank of an undercapitalized bank subject to mandatory transfer (e.g., P&A transactions),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resulting bank capital to the level of the adequately capitalized bank, which will in all cases exceed 8% or risk-adjusted assets based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 In cases other than mergers and acquisitions as set out above,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only in the case of a new third-party investment that will raise tier one capital to 4% of risk-adjusted assets based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where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an amount necessary to increase capital to 8% of risk-adjusted assets based on Basle Committee risk-weighting criteria.
- In cases other than mergers, acquisitions and new investment as set out above, government will directly recapitalize undercapitalized banks where an analysis is performed demonstrating that liquidation is not a less costly option to government.

나.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투명한 의사결정체계의 확립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한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었다.

우선 예금보험기금⁵⁾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부실금융기관⁶⁾이 발생

5) 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과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를 심사하여 부실금융기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3자 매각, 인가취소 또는 경영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자 매각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수자 선정 및 자금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인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자금지원요청이 이루어지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⁷⁾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⁸⁾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경영정상화 대상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산업의구조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2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의3.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보험료 4의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5. 제36조의5제3항·제38조 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의 수입금

③기금은 보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제38조 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및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등을 그 지출로 한다.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6) 부실금융기관의 요건: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① 경영상태를 심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7) 예금자보호법 제38조(자금지원의 결정) ①공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8) 운영위원회 구성근거(예금자보호법 제9조)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5. 한국은행부총재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7.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8.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회장 9.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10. 사단법인 종합금융협회 회장 11.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회장 1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3. 공사의 사장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인

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⁹⁾에 의거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가취소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예금청구가 있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등 지급결의를 한 후 지급기간·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공고하게 되고,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한편, 부실우려금융기관¹⁰⁾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지원조건, 지원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¹¹⁾¹²⁾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면 매각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매입채권 인수기준 전반에 관한 사전 의견조율, 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료 접수, 매입대상부실채권 실사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¹³⁾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 매입을 결정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10)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의2 :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11)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둔다.

제39조(기금의 조성)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2) 부실채권 정리근거 :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은 보유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공사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13) 위원회의 구성(자산관리공사법 제15조)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2의2.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하게 된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채권 원인서류를 인수하게 되며, 담보권을 이전등기받고 채권 및 물건에 대한 보전관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설치근거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재정경제부가 정부보증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승인을 얻어 조성하고 일반적인 수급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원과 국회의 업무감사를 받게 된다.

3. 支援概要

가. 공적자금 지원내역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협회의 공적자금으로서 이하 “공적자금”이라 한다)을 채권의 발행시한인 1999년말까지 전액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되는 데 자금지원 조건 및 성격에 따라 3년, 5년, 7년만기로 발행되었으며 원리금상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 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발행되었다. 동 채권은 전액이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5.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 금융기관의 무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7. (1999. 4. 30. 본호삭제)
8.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 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다.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 ②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채권시장에서 발행되어 현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폐쇄되어 예금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금대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채권의 매입이나 출자지원시 직접 채권으로 지급되게 된다. 동 채권은 정부가 그 원리금을 지급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영(零)이며 대부분의 경우 3개월마다 시장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한 채권이자 지급되기 때문에 유동성과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64조원의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금의 금융기관 증자, 예금대지급 등에 43조5천억원, 부실채권 매입에 20조5천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하고 부실화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은행권에 전체 지원된 공적자금의 70%이상을 투입하였다. 또한, 지원자금의 성격별로 보면 약 20.5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 증자를 위해 지원하였고, 21조원의 자금¹⁴⁾을 계약이전된 금융기관의 자산초과부채액 보전과 폐쇄된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을 위해 지원하였고, 2조원은 5개 정리은행과 제일은행의 부동산 등 자산매입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20조5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였다.

〈 표 2-2 〉 공적자금 지원실적(1999년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조 성(A)		예금보험공사 증자지원 등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매입*	합 계
		43.5					20.5	64.0
지원실적(B)		증자	출연·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기타	43.5	20.5	64.0
		20.5	21.0	1.8	0.2			
은 행	퇴출은행(5개)	1.2	9.6	0.2	0.0	11.0	1.1	12.0
	제일·서울은행	9.0	0.0	1.6	0.0	10.6	4.1	14.8
	기타 은행	6.3	0.0	0.0	0.0	6.3	12.1	18.4
	소 계	16.5	9.6	1.8	0.0	27.9	17.3	45.2
제2금융권	생보사	3.9	1.4	0.0	0.0	5.3	0.0	5.3
	보증보험	0.1	0.0	0.0	0.0	0.1	1.4	1.5
	중금사	0.0	5.8	0.0	0.0	5.8	1.7	7.5
	금고	0.0	2.9	0.0	0.2	3.1	0.1	3.2
	신협	0.0	1.3	0.0	0.0	1.3	0.0	1.3
	소 계	4.0	11.4	0.0	0.2	15.6	3.2	18.8

* 계약액 기준

- 14) 11조원은 5개정리은행, 4개 정리 생보사 등과 같이 계약이전 결정으로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는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의 보전을 위해 지원되었고, 나머지 10조원은 폐쇄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위한 예금의 대지급을 위해 지원되었다.

64조원의 공적자금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양 기관에서 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64조원의 채권발행에 따른 채권만기도래 현황은 아래 <표 2-3>과 같으며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1998년에 발행한 1년만기 채권 5,000억원 등 6,287억원을 이미 상환한 이후 금년중 1997년에 발행한 3년만기 채권 4.1조원의 만기도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1999년말에 발행한 3년만기채권의 만기도래를 시작으로 채권의 만기가 종료되는 2006년까지 채권을 상환해나가야 한다.

< 표 2-3 >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원금만기 도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계
1999	-	6,287	6,287 ¹⁾
2000	-	41,453	41,453
2001	14,640	4,067	18,707
2002	47,215	9,680	56,895
2003	97,371	121,926	219,297
2004	139,728	21,587	161,315
2005	90,402	-	90,402
2006	45,644	-	45,644
계	435,000	205,000	640,000

주 1) 기 상환

한편, 1999년도중 채권을 전액 발행하여 사용한 이후의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기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다.(회수하여 사용한 자금도 편의상 공적자금이라 한다) 2000년 8월말 현재 총 25조3천억원의 회수자금중 18조6천억원을 재활용하였다. 재활용분을 포함하여 투입기준으로 볼 경우 총 지원액은 2000년 8월말까지 82조6천억원에 이른다.

〈 표 2-4 〉

회수재원 재 활용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계
회수재원	7.5	17.9	25.3
재사용실적	9.1*	9.5	18.6
가용재원	0.4	6.3***	6.7

*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자금중 2조원을 예금보험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

** 실제 인수액 기준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가용재원은 예금보험기금 대여금 등으로 6.3조원임

이처럼 기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국회보증동의를 받은 64조원의 재원범위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가능한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18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재 활용하여 지원한 주요 사용처는 〈표 2-5〉와 같다.

〈 표 2-5 〉

공적자금 회수금 재사용 내역

(단위: 억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계
97~99년	□ 34,181 ○ 제일은행 자산매입 및 출연, 은행 차입금 상환	□ 27,408억원 ○ 부실채권매입	61,589
2000.1월	□ 6,376 ○ 제일은행 자산매입, 조선생명 출자, 한미은행등에 출연, 신 협 예금대지급	□ 64,074 ○ 23개 투신사 부실채권 매입	70,450
2월	□ 3,702 ○ 동아생명 자산매입 및 출자, 신협 예금대지급, 제일은행에 출연		3,702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계
3월	□ 17,188 ○ 서울보증보험 출자, 태평양생명·대한생명 출연, 신탁보험금 지급, 제일은행 출연, 은행 차입금 상환	□ 370 ○ 5개 인수은행 협조융자여신 뜻백읍선	17,558
4월	□ 958 ○ 신탁보험금지급, 제일은행출연, 은행 차입금 상환	-	958
5월	□ 1,650 ○ 한덕생명 출자, 태평양생명·국민생명 자산매입, 신탁보험금지급, 제일은행출연	-	1,650
6월	□ 22,065 ○ 한아름중금 예금대지급, 신탁보험금지급, 제일은행출연, 부민금고출연, 산업은행차입금상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차입후 투신사 출자	□ 198 ○ 8개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매입	22,263
7월	□ 3,762 ○ 제일은행 출연, 중금·신탁보험금 지급, 생보사 출연 및 자산매입		3,762
8월	□ 1,248 ○ 제일은행 출연, 중금·신탁보험금 지급, 생보사 출연	□ 2,997 ○ 서울보증보험 부실채권매입	4,245
2000.1월~8월 소 계	56,949	67,639	124,588
총 계	91,130	95,047	186,177

* 실제 인수액 기준

나.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지원내역

64조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채권이자의 지원은 정부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년간 무이자로 용자해주고 있다. 채권발행이자에 대하여 정부가 출연형태로 직접 부담하고 매년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양 공사로 하여금 공적자금 회수에 보다 더 노력하도록 용자형태로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채권발행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양 공사가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채권발행이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너차례 변경되어 왔다. 1997년말부터 1998년초까지 시장금리가 30% 가까이 높게 치솟았던 시기에 특히 예금의 대지금을 위하여 시장발행을 통해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예금보합기금채권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1998년초 2차(제15)에 걸쳐 1997년말 영업정지된 14개 중금사의 예금대지금과 제1·사물은행의 출자를 위해 현금을 조달해야 했던 예금보합공사에서는 시장소화의 어려움과 이자지급부담으로 6조5천억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금리도 당시 시장금리의 절반수준인 15%(고정금리)로 정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부실채권 매입대금으로 채권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시장소화의 부담이 없었으나 유사한 채권인 산업금융채권 3년만기물의 유동금리를 기준(고정금리)으로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향후 이자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권을 변동금리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금리는 1998년 상반기 당시 향후의 금리동향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환(15%)과 하환(10%)을 모두 갖는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한편, 1999년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의 안정기조가 뚜렷하게 정착되고 향후 금리수준도 안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환선을 없앤 변동금리부 채권(15%)이화 범위내)으로 발행하여 재정부담의 축소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이자부담의 축소노력과 함께 한국은행이 1998년초에 15%의 고정금

15) 개안 : 1998년 1월 5일, 법안 등 : 1998년 1월 20일

리로 인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재정으로부터 1998년 하반기 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의 고금리인 15%의 채권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6조5천억원의 채권을 당시 시장의 실세금리수준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하기로 하였다. 채권의 재매각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6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졌는데 채권금리와 당시 시장금리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각이익금 1조5천억원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며 동 재원을 15%의 채권금리와 재정에서 재조정되어 지급하는 금리(8~10%수준 변동금리)와의 차액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5%의 고정금리로 지급되던 채권의 지급이자도 당시 실세금리인 8~10%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그만큼 재정의 이자용자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용자규모는 1998년 1조3천억원, 1999년 3조9천억원, 2000년 8월까지 3조3천억원 등 총 8조5천억원 규모이다.

〈 표 2-6 〉 정부보증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용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계
1998	2,663	10,582	13,245
1999	13,549	25,837	39,386
2000.1~8	9,031	23,543	32,574
계	25,243	59,962	85,205

한편, 공적자금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하였고 동 채권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이자가 용자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용자기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양 기관에서 용자지원 받은 이자를 재정에 갚아야 한다.

이자 용자 상환일정은 아래 〈표 2-7〉과 같다.

〈 표 2-7 〉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이자 용자 상환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계	만 기
1998	10,582	2,663	13,245	2001
1999	25,837	13,549	39,386	2002
2000	38,380	16,427	54,807	2003
2001	36,985	12,174	49,159	2004
2002	35,789	11,857	47,646	2005
2003	30,366	12,423	42,789	2006
2004	20,462	4,429	24,891	2007
2005	7,927	-	7,927	2008
2006	2,212	-	2,212	2009
계	208,540	73,522	282,062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3년, 5년만기로 발행

** 예금보험기금채권 : 3년, 5년, 7년만기로 발행

*** 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 금리를 8% 수준으로 가정한 것임

다. 공적자금 외의 공공자금 지원내역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외에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차관자금이나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해 왔다. 특히,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예산이나 국유재산에 의한 출자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IBRD와 ADB로부터 각각 10억불과 2억불을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조흥은행의 증자에 사용하였다.

16) 한편 구조조정기에 지원된 특수은행 출자분의 경우에는 초기 신용검색 해소 및 금융기관 지원에 따른 BIS(B)를 하향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자가 이루어졌고,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조정목적의 출자로 보지 않더라도 지원금(산은을 통한 도로공사 우회출자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전액 사용한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늘림에 따라 공공자금의 사용액이 일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64조원의 공공자금을 사용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공공자금의 절반가량은 64조원의 자금이 조성된 기 이전인 조기위국복과정에서 사용되었고, 법령상의 제한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없거나(특수은행 출자, 대부·환부 출자) 또는 신용검색기에 기업에 대한 여신공능능력 확대 등을 위해 지원(특수은행 출자 및 일부 은행 후순위채 매입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¹⁶⁾

또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전액 사용한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늘림에 따라 공공자금의 사용액이 일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1997년말 위기초기에 은행의 보완자본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27개 은행에서 발행한 4조4천억원의 후순위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지원선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지원과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자본확충목적의 후순위채 매입지원이 이루어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한 은행 후순위채의 규모는 2000년 8월말 현재 총 6조4천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후순위채의 매입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인 공공자금관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원물출자방식으로 1998년 위기초기 제일은행과 서흥은행의 증자지원에 각각 7,500억원씩 35천억원이 지원되었고, 1999년 하반기 대우그룹 부실화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증자를 위하여 9천억원의 국유재산이 원물출자형태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원물출자는 『국유재산의원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

〈 표 2-8 〉

공공자금 지원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초기위기극복시기 (97말~98상)	구조조정시기 (98하 이후)	대우관련	계
국유재산 관리특별 회 계	○ 서울은행 0.75조원 제일은행 0.75조원 현물출자 (98.1) ○ 산은 : 0.6조원 수은 : 1조원	○ 산은 : 4.1조원 기은 : 1.5조원	○ 대투 0.3조원, 한투 0.6 조원 현물출자(99.12) ○ 산은 : 0.6조원 (한투출자를 위한 지원용)	10.2
공공자금 관리기금	○ 30개은행 후순위채 매 입 4.4조원(97.12)	○ 중소기업지원실적 우수은행 후순위채 매입 1.4조원(98.12) ○ 지방은행 후순위채 매입 0.6조원(99. 6. 99.12)		6.4
정부예산등	○ 산은 : 0.2조원 ○ 수은 : 0.1조원	○ 산은 : 1.6조원 ○ 기은 : 0.3조원 ○ 수은 : 0.8조원(0.7 조원은 한은 출자)		3.0
차관자금		○ 서울보증보험 출자 1.2조원(99.6) ○ 조흥은행 출자 0.2조원(99.2) ⁴⁾		1.4
금융기관 차입금 ¹⁾	○ 부실채권정리기금 0.5조원 ²⁾	○ 예금보험기금 1.0조 원(2000.6, 산은· 기은 차입금)	○ 예금보험기금 2.8조 원(2000.6, 산은· 기은 차입금 1.9, 2000.8, 국민은행 차입금 0.9)	4.3
자체조달 재원	○ 부실채권정리기금 0.6조원 ³⁾	○ 예금보험기금 1.1조원 ⁵⁾		1.7
계	8.9	13.8	4.3	27.0

1)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폐쇄 종금사 관련 신용관리기금의 차입금(6.9조원)을 인수하여 일부를 상환한 후 3.9조원의 채무가 있음

2)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은 금액으로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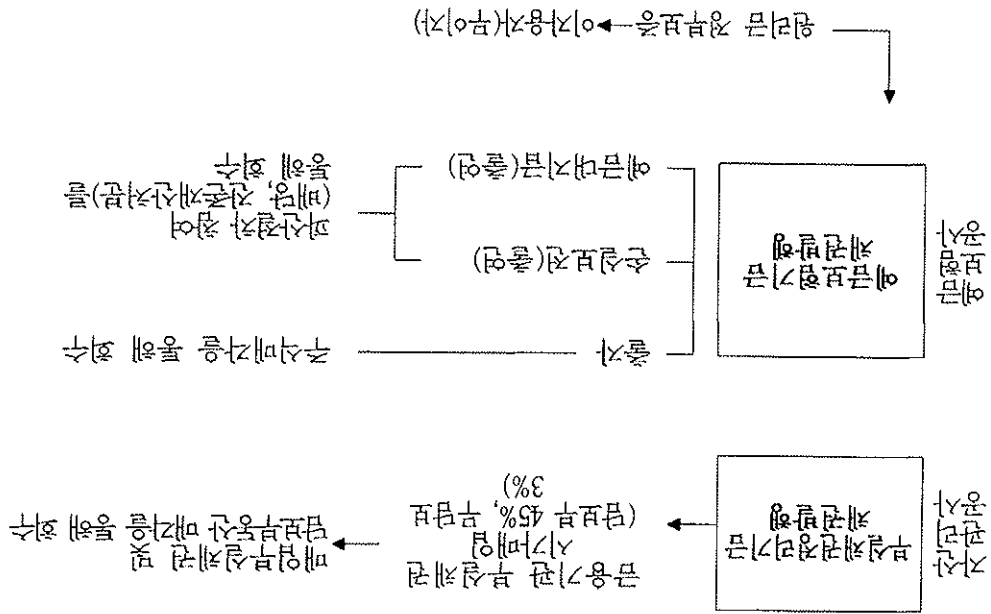
3)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일부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으로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

4) 99.2월 조흥은행에 대한 합병지원을 위해 2.1조원 지원시 예보채권발행자금 1.9조원에 추가하여 차관자금을 지원

5) 예금보험기금 발행 고금리 채권의 할증매각에 따른 이익금으로 예금대지급에 사용

한편, 공적자금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 중 64조원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IBRD, ADB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 공사채 및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차입들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편의상의 구분으로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채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64조원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서 부실채권 매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양 기금의 채권발행시 원리금 상황에 대해 보증을 하고 있으며, 채권의 이자는 정부가 양 기금에 무이자로 "용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엄밀하게는 정부가 아닌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예산과의 구별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은 조성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구에서 채권의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상환을 해야 한다.

< 참고 > 공적자금과 공공자금

4. 時期別 構造調整 및 公的資金 支援內譯

가. 외환위기 직후 초기의 구조조정(1997.11~1998.4 이전)

(1)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1997.11.21/11.27/12.31)

■ 지원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정부출자은행으로서 외환위기 초기에 기업자금공급과 외자조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설립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뿐만 아니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꺼리고 있는 일반은행을 대신하여 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보다 커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은행 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현금출자외에 정부보유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함으로써 대출 및 출자여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11월 11일, 12월 30일에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¹⁷⁾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등을 거쳐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부담 및 기업자금 공급을 위한 지원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해 수출기업체에 대한 지원여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원내용

정부는 1997년 11월 11일, 12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산업은행

17) 법 제3조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유재산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추진하였다. 우선 산업은행에 1997년 11월 21일 5,000억원 상당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현물출자¹⁸⁾하여 산업은행이 동 금액만큼 자산관리공사가 1997년 11월 24일 설립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용자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하기로 하였으며, 1997년 11월 27일 건설교통부 예산에 반영된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출자를 위해 반영된 1,500억원을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도로공사에 출자¹⁹⁾하였으며, 1997년 12월 31일에는 1,600억원 상당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1997년 12월 31일 1,600억원 상당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²⁰⁾

〈 표 2-9 〉

출자대상은행별 출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997.11.21	1997.11.27	1997.12.31
산업은행	5,000	1,500	1,600
수출입은행	-	-	1,600
계	5,000	1,500	3,200

(2)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1997.11.26)

■ 지원 배경

1997년 이후 한보, 기아, 삼미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급

18) 현물출자대상 재산 및 출자가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천주)	출자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한국전력공사주식	33,240	5.3	1,662	5,000

19) 경유출자는 다른 기관에 출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정부예산에 반영된 출자금을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출자한 것이므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공자금의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백서에서는 편의상 모든 출자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한 “공공자금”에 포함하였다.

20)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은행별 출자규모 및 출자가액

은행명	출자주식수(천주)	출자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산업은행	9,549	5.0	477	1,600
수출입은행	9,549	5.0	477	1,600
계	19,098	10.0	954	3,200

중합에 따라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미 1997년 8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일은행에 대한 우선 지원방침을 천명²¹⁾하였으며, 동년 11월 24일 (신)성업공사 출범식에 참가한 재경원장관은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의 우선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자산관리공사도 이들 은행들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실채권의 매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²²⁾에 의거하여 매입한 후 동년 12월 12일 제97-2차 경

21)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중 「4.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

- 한국은행 자금지원 및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현물출자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하여 부실채권 우선정리 지원
- 외화단기 유동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 적기 공급
- 대외채무 상환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

22) 법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입·인수등) 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입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수입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방법·절차) ①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 소유권이전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금융기관·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당해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할 수 있다.

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등) ①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기준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지방세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당해 부실채권의 인수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부실자산을 기금의 부담으로 인수하는 때에는 금융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인수대금의 전부

영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1997년11월24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1997년 11월 26일 제일·서울은행으로부터 총 4조3,943억원의 부실채권을 2조 9,103억원에 매입하였으며 구체적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10 〉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²⁾
서울은행	일반채권	담 보	4,164	3,124
		무담보	1,144	300
	특별채권 ¹⁾	담 보	13,195	9,896
		무담보	1,083	508
	소 계		19,586	13,828
제일은행	일반채권	담 보	1,378	1,033
		무담보	935	253
	특별채권 ¹⁾	담 보	15,588	11,691
		무담보	6,456	2,298
	소 계		24,357	15,275
합 계			43,943	29,103

주 1) 특별채권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회사가 법원에 채무상환조건의 완화를 신청하고, 법원이 채권자·주주·기타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조건을 장기로 재조정한 채권(화의, 회사정리 대상 업체의 채권 및 산업합리화 채권)을 말한다. 특별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영능력과 회생가능성이 반영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율을 결정함

2) 계약액 기준

한편, 매입대금은 기금채권발행²³⁾으로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3)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기금채권의 발행내역

채권종류	발행방법	표면금리	이자지급방법	상환방법	지급보증
무기명식이표채 (3년 만기)	등록발행	11.95%	3개월단위 후 급	만기일시 상 환	대한민국 정 부

(3) 30개 종합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1997.11.28)

■ 지원 배경

대한종금 등 8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외화부문정상화명령 및 나라종금의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이들 종금사들의 예금인출이 급증하자 재정경제원은 이들 종금사들이 극심한 자금부족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동성 부족 종금사에 대한 부실채권 우선매입을 협조요청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7년 11월 28일 우선 이들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동년 12월 12일 제97-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지원 내용

부실 종금사의 부실채권은 매입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매입하였다. 우선 극심한 자금부족 상태에 있는 9개 종금사(대한, 나라, 삼양, 한길, 영남, 삼삼, 경남, 고려, 경일종금)를 우선매입대상 종금사로 선정하여 인수한도(보유 부실채권 금액의 60%)내에서 우선매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21개 종금사에 대하여는 부실채권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매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30개 종금사의 2조6,98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1조7,555억원에 매입하였다. 각 종금사별 부실채권 매입내역은 다음 <표 2-11>과 같다.

< 표 2-11 >

30개 종금사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대	한	3,336	2,324
나	라	2,408	1,675
삼	양	632	410
한	길	653	286
영	남	557	342

1) 계약액 기준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동	양	952	651
제	일	2,125	1,442
엘	지	1,685	1,168
한	국	126	88
현	대	127	89
새	한	179	110
한	불	67	40
아	세	아	84
한	외	271	157
중	양	1,663	1,164
금	호	463	263
한	솔	856	549
경	수	150	90
대	구	1,275	866
울	산	391	228
삼	삼	2,259	1,418
경	남	612	315
고	려	752	520
경	일	321	170
한	화	796	505
청	솔	1,098	715
신	한	1,183	826
쌍	용	334	186
항	도	616	252
신	세	계	1,017
합	계	26,988	17,555

한편, 매입대금은 70%를 기금채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997년 11월 28일자로 2조6,988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던 30개 종금사 중 동년 12월 2일 청솔, 경일 등 9개 종금사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 등 5개 종금사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영업중인 16개 종금사로부터 인수한 12개 계열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정산금을 보전하기 위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기금채권에 대해 1997년 12월 31일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업무정지명령으로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 14개 종금사의 경우에는 정산금 보전을 위한 사후 대책으로 정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4) 30개 은행 부실채권 매입(1997.12.15)

■ 지원 배경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7년 12월 12일 제 97-3차 경영관리위원회²⁴⁾에서 조흥은행 등 30개 은행의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동년 12월 15일 동 30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당초 30개 은행은 12조4,175억원의 부실채권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는 기금재원의 부족으로 매입요청 부실채권의 30% 수준인 3조 9,510억원의 부실채권을 2조4,74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매입대금의 70%는 기금채권²⁵⁾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4) '97. 12. 12에 제97-2차 및 제97-3차 경영관리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음.

25) 기금채권의 발행내역

〈 표 2-12 〉

30개 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채 권 액(A)	매 입 액(B) ¹⁾	비 율(B/A) ²⁾
시 중 은 행	한 일	1,484	846	57.0
	의 환	4,376	2,806	64.1
	조 흥	4,672	3,099	66.3
	상 업	3,832	2,390	62.4
	평 화	317	73	23.0
	동 화	797	475	59.5
	대 동	335	246	73.5
	동 남	224	140	62.3
	보 람	480	281	58.5
	한 미	304	218	71.9
	신 한	2,133	1,307	61.3
	국 민	2,400	877	36.5
	하 나	292	214	73.5
	주 택	450	227	50.4
소 계		22,096	13,199	59.7
지 방 은 행	경 기	627	517	82.4
	강 원	160	84	52.6
	충 청	938	461	49.1
	충 북	151	44	29.2
	제 주	235	70	29.8
	전 북	277	176	63.4
	광 주	567	297	52.4
	대 구	600	364	60.6
	경 남	608	242	39.8
	부 산	781	486	62.2
소 계		4,944	2,741	55.4
특 수 은 행	산 업	8,756	6,543	74.7
	기 업	1,506	772	51.3
	장 기	1,070	777	72.6
	농 협	1,006	628	62.4
	수 협	72	54	74.6
	축 협	60	29	48.3
	소 계	12,470	8,803	70.6
합 계		39,510	24,743	62.6

1) 계약액 기준

2) 각 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중 고정(담보부),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금융기관
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

채권종류	발행방법	표면금리	이자지급방법	상환방법	지급보증
무기명식 이표채 (3년만기)	등록발행	12.14%	3개월 단위 후 급	만 기 일시상환	대한민국 정 부

(5)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1997.12.24)

■ 지원 배경

1997년 11월 이후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 이후 전 은행권에 대한 대내외의 불신은 크게 고조되었다. 또한,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권의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도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과 대출여력을 확충시켜 줌으로써 은행의 신인도 하락을 막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직접출자지원을 위한 재원의 마련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²⁶⁾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정부는 1997년 12월 22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²⁷⁾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금융채권 등 액면가 총 5조4,906억원의 공사채²⁸⁾를 은행이 발행하는 동일한 액면의 후순위채권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후순위특약에 의해 후순위채권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은 공

26)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서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가장 늦게 변제될 수 있는 등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항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후순위채는 크게 보아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Subordinated term debt)와 만기 10년 이상의 후순위채로 구별되며, 전자는 기본자본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후자는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된다.

2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6 (생략)

28) 교환에 사용되는 공사채 내역과 규모

(단위: 억원)

채 권 종 류	교 환 액	채 권 종 류	교 환 액
○ 산업금융채	18,645	○ 중소기업채	11,400
○ 도로건설채	11,854	○ 토지개발채	1,000
○ 주택채	1,609	○ 가스공사채	3,925
○ 수자원공사채	2,573	○ 한국전력채	3,900

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²⁹⁾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로 하였다.

당초 의결은 5조4,906억원의 범위내에서 1차로 약 4조5천억원규모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잔여분은 추후 은행별 대출실적,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24일 실제 발행되어 매입이 이루어진 후순위채 규모는 4조3,693억원이었으며, 은행별 세부 매입규모는 아래 <표 2-13>과 같다.

< 표 2-13 >

은행별 후순위채권 인수규모

(단위: 억원)

은행명	인수규모	은행명	인수규모
조흥	4,500	대구	1,040
상업	1,970	부산	1,160
제일	1,420	충청	640
한일	4,640	광주	1,500
서울	2,700	제주	420
외환	3,860	경기	710
신한	2,400	전북	800
국민	2,400	강원	430
동화	1,250	경남	1,920
동남	270	충북	460
주택	2,520	기업	2,990
하나	640	대동	253
장기	800	평화	800
보람	1,200	계	43,693

29)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6) 한아름종금 출자(1997.12.26)

■ 출자배경

한아름종금³⁰⁾은 부실종금사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등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정리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종금사이다. 다만, 그 업무는 부실종금사의 업무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인수·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금 등 채무의 지급과 대출 채권의 회수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출자내용

구 재정경제원은 부실종금사의 처리를 위해 1997년 12월 26일 한아름종금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신용관리기금이 자본금을 300억원³¹⁾ 출자하였다. 이후 한아름종금사는 1998년 9월 16일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7) 13개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1997.12.26~12.30 / 1998.1.5)

■ 지원배경

1997년 12월 2일 경남종금등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영업중인 아세아종금등 13개 종금사의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해당종금사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신용관리기금의 13개 종금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이관받았다.

30) 한아름 종금 현황

설립	인수종금사	조직	인원	예산(FY99)
98.1.3	16사	1본부 4사업부(출장소 1)	122명	151억원

31) 동 금액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나 공공자금을 해당되지 않으며 예금보험공사 설립이전 다른 기관이 사용한 금액을 기능인수에 따라 예보의 재산으로 편입한 것임

■ 지원내용

1997년 12월~1998년 1월중 신용관리기금이 아세아종금등 13개종금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총 1조1,642억원이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표 2-14>와 같다.

< 표 2-14 >

유동성 지원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종금명	대출금액	대출일	지원형태	비 고
아세아	300	97.12.26	단기대출 (유동성지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부터 이관 (‘98.4.1)
영 남	370	97.12.27		
울 산	200	97.12.27		
현 대	505	97.12.27		
금 호	375	97.12.26		
동 양	1,200	97.12.26		
한 국	914	97.12.27		
한 외	531	97.12.30		
제 일	1,118	97.12.27		
대 구	502	97.12.26		
새 한	4,238	97.12.26		
한 길	1,139	97.12.29		
삼 양	250	98. 1. 6		
합 계	11,642			

주 : 동 자금은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출범되기 이전에 종금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된 것으로서 증자,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된 공적자금의 성격과는 다르므로 총 자금지원실적과는 별도로 관리

(8) 종금사에 대한 예금대지급(1998.1.5/1.21/1.23/3.17/7.30)

■ 지원배경

1998년 이후 퇴출종금사의 자산·부채를 한아름종금으로 계약이전함에 따라 해당 종금사의 예금을 지급하고자 신용관리기금에서 한아름종금에 자금을 지원하

였고, 1998년 4월 1일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동 종금사들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대출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관받았다. 새한종금과 한길종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4조 및 제36조의⁵³²⁾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8년 7월 30일 보험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 지원내역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남종금 등 14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지원한 규모는 11조8,549억원이었으며, 1998년 7월말 새한·한길종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8,272억원을 지원하였다. 세부대출내역은 <표 2-15>와 같다.

< 표 2-15 >

종금사 예금대지급 내역(일지별)

(단위:억원)

지원일	지원금액	사용용도	지원내역
98.1. 5	30,000	경남종금등 14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송계 (기금채권)
98.1.21	10,000		
98.1.23	10,000		
'98.3.17	68,549	경남종금등 14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송계 (은행으로부터 차입)
98.7.30	8,272	새한,한길종금 보험금지급	공사운영위원회에서 보험금지급을 위한 자금지원 의결 (기금채권)
합 계	126,821		

* 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콜차입을 통해 조달한 금액으로서 2000. 8월 현재 38,747억원이 은행차입금 잔액으로 남아있다. ³³⁾

32) 제34조(지급의 결정)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①정리금융기관은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33) 금융구조조정 총 지원자금산정시 은행으로부터의 콜차입총액이 아닌 실제 상환되어 지원된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다.

* 상환내역 99년중 2조원, 2000년중 9,802억원(3월중 8,444억원, 4월중 500억원, 6월중 858억원)

(9)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출자(1998.1.30)

■ 제일·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조치의 배경

1997년 들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들 기업에 거액의 여신을 제공한 서울, 제일은행의 부실문제가 표면화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신이탈로 자금부족현상도 심화되게 되었다.

정부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두 은행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1997년 8월 25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9월 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일은행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1년간 1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실시하여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제일은행의 계속되는 예금이탈로 발생한 자금부족현상(8월중 약 1조 2,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며 특별대출 금리는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자금조달비용(7월중 연 8.05%)을 적용하여 연 8.0%로 결정되었다. 한국은행은 특별대출의 조건으로 제일은행이 향후 5개년간 전체 인원의 21.6%(1,800명)과 점포의 9.4%(40개)를 감축하고 보유 업무용부동산의 37.9%와 은행법상 자회사의 97.8%를 매각·정리하는 등 총 1조3,257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하겠다고 제출한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경영진의 사표와 책임경영각서 및 노조동의서를 함께 징구하는 한편, 매 6개월마다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7년 11월 26일 자산관리공사는 11월 24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서울, 제일은행의 부실채권 4조3,943억원(매입액 2조9,103억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8일 두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 표 2-16 〉

제일·서울은행의 자구계획(개요)

구 분	제일은행	서울은행
1. 조직 정비 및 인원 감축	○본부부서 13% 축소(15부 → 13부) ○98.6말까지 총인원 500명 감축 * 97~2000까지 1,800명(23%) 감축	○본부부서 20% 축소 ○98.6말까지 610명 감축 * 97~2000까지 1,143명(15%) 감축
2. 인건비 절감	○임원 30%, 직원 10%~20%	○임원 30%, 직원 10%~20%
3. 점포 통폐합	○98.6말까지 국내 32개, 해외 9개 점포 폐쇄	○98.6말까지 31개 점포 폐쇄 *98~2000까지 58개 점포 폐쇄
4. 자회사 매각	○제일시티리스, 일은신용금고	○서울리스, 서은투자자문매각
5. 자구계획효과	○약 938억원 (자구금액 2.3조)	○약 617억원 (자구금액 1.3조)

이로써 제일, 서울은행은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제일, 서울은행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제기준에 의하여 부실채권 규모를 재산정할 경우 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제일, 서울은행의 자금부족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1월 정부가 IMF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고 자금지원조건에 대한 IMF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문제가 심각한 제일, 서울은행의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두 은행의 예금이 탈현상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IMF와 자금지원에 합의한 12월 2일 이후 일주일간 제일은행은 1조405억원, 서울은행은 9,580억원의 예금이 인출되었다.

정부는 두 은행의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할 경우 은행의 도산가능성이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까지 예금인출사태가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두 은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신인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도록 자본확충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정부출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정부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두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방침을 발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정부출자는 당시 은행의 수권자본금이 2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납입자본금인 8,200억원을 제외한 1조 1,800억원 수준을 정부가 출자하여 정부지분율을 59%로 하기로 하였으며, 출자방법은 정부보유주식과 은행신주를 교환(swap)하는 방식으로 하되 추후 은행 주가가 액면가로 회복될 경우 swap을 해지하고 시가로 다시 증자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출자후에도 두 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분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제일, 서울은행도 정부지원에 상응하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엄격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감독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1997년 12월 2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일, 서울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동 조치는 두 은행이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필요적립액의 100%까지 충실히 적립토록 한 상태(full provising)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998년 6월말 이후 8%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2월 21일까지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1998년 2월 28일까지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미 밝힌 현물출자방침에 대하여 IMF측은 정부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출자방안을 마련하고 1998년 1월 3일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 서울은행에 대하여 개정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에 의거하여 정부의 현물출자와 감자를 동시에 추진하되 정부출자후 동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매각한다는 처리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제1·서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

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두 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자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은행에 대해서

는 현재의 납입자본금(8,200억원)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주식병합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의하여 제1·서

물은행은 자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발행주식을 8.2:1로 병합하여 납입자본금

을 8,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기로 의결하였으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맞추어 1998년 1월 30일 제1·서물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1조 5,000억원씩 총 3조원의 재원

을 마련하여 두 은행에 각각 1조 5,000억원³⁴⁾을 출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

1·서물은행의 자본금은 각각 1조 6,000억원, 주주는 정부 46.9%, 예금보험공사

46.9%, 일반주주 6.2%의 정부출자은행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출자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정부가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

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1조5,000억원의 현금재원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주

식과 담배인삼공사 주식(평가액 1조 5,000억원 규모)을 현물로 출자하게 되었다.

〈 표 2-17 〉

현물출자주식 개요(각 은행당)

출자주식종류	출자주식수	지분율	출자가액(시가기준)
한국전력공사	34,310천주	5.5%	5,900억원
담배인삼공사	9,550천주	5.0%	1,600억원
합 계	43,860천주		7,500억원

* 출자후 정부지분율 : 한전(59%), 담배인삼공사(80%)

34)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근거

한편, 당초 정부가 현물출자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출자후 정부가 취득하게 되는 은행주식과 정부가 현물출자한 주식을 사후에 교환하여 정부지원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swap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실질적인 자본금전입(fresh fund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출자가 되어 국제기준에 따를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동 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향후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의지를 표명하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상업적 차원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정부부담을 경감하며 선진금융기법 및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1998년 3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된 제일·서울은행의 주식(지분율 : 정부 47%, 예금보험공사 47%)을 자금력과 경영능력있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두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하기로 발표하고, 두 은행의 민영화는 IMF 및 IBRD와 협의한 일정(98.11.15까지)에 맞추어 추진될 예정임을 밝혔다.

(10) 2개 보증보험회사 부실채권 매입(1998.2.19)

■ 지원배경

고금리와 자금경색 등으로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보증보험사의 구상채권³⁵⁾이 크게 늘어나자, 1998년 1월 7일 보험감독원은 이를 방치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보증보험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2개 보증보험사의 부실채

35) 보증보험사의 부실채권 현황('97.12말 기준, 억원)

구 분	총부실채권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대한보증	27,656	1,788	25,868
한국보증	9,165	259	8,906
합 계	36,821	2,047	34,774

권 약 3조원을 매입토록 하였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보증보험사의 부설채권 신탁계약에 착수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대한·한국보증보험사의 부설채권 신탁계약을 끝낸 후, 『자산관리공사업』 제4조에 의거 1998년 2월 18일 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동 2개 보증보험사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2월 18일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대한보증보험 2조849억원, 한국보증보험 7,317억원 등 총 2조8,166억원의 부설채권을 매입하기로 약 보증보험사와 부설채권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설채권 매입대금으로 4,12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 위한 담보성격으로 매입대금 총액의 10% 해당분에 대하여 채권을 설정(대한보증보험 394억원, 한국보증보험 165억원)하는 동시에, 부담보채권의 경우에는 향후 2년의 범위내에서 보증보험사가 구상을 통해 회수한 자금으로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 표 2-18 〉 2개 보증보험사 부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대한보증보험	20,849	3,089
	한국보증보험	7,317	1,032
합	계	28,166	4,121

1) 계약액 기준

한편, 매입대금은 해당 보증보험사가 부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54억원)을 상계한 대금을 기금채권으로 지급하였다.

(11)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지원

(1998.2월중/1998.9~12월중 수시)

■ 지원배경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출자지원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고 자본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갔다.

이를 위해 1998년 들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보유주식의 현물출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 지원내역

우선 1998년 2월 16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 현물출자는 담배인삼공사 주식과 한전주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자규모는 3,699억원이었다.

〈 표 2-19 〉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천주)	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한국전력공사주식	8,298	1.3	415	1,699
담배인삼공사주식	11,937	6.2	597	2,000
계	20,235		1,012	3,699

주) 같은 날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수출입은행의 지분 상환을 위해 동 지분만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였다.

1998년 2월 24일에는 산업은행에 대해 7,000억원 상당의 포철, 담배인삼공사주식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

〈 표 2-20 〉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천주)	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포항종합제철(주) 주식	9,542	10.2	477	6,000
담배인삼공사주식	5,968	3.1	299	1,000
계	15,510		776	7,000

1998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현금 및 현물출자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설립될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출자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8,500억원의 현금출자가 이루어졌고, 연말에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산업자금공급능력의 확충을 위해 3조 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현물출자³⁶⁾가 이루어졌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9월에 예산에 반영된 1,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이루어졌고 연말에는 4,500억원의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동 은행을 통한 원활한 외자조달 및 정책금융지원을 도모하였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1998년 10월 15일 예산에 반영된 2,000억원의 현금출자가 이루어졌고, 1998년 3월 26일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지원이 결정된 후 1998년 10월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8년 10월 29일 1조 5,000억원의 현물출자³⁷⁾가 이루어졌다.

36)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천주)	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한국도로공사 주식	42,940	6.5	2,147	4,294
대한주택공사출자증권	-	26.8	9,277	11,892
한국수자원공사출자증권	-	12.8	3,212	6,058
한국토지공사출자증권	-	21.7	3,645	11,426
계	42,940		18,281	33,670

37) *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단위: 억원)

은 행	출자일	출자규모	내용	내 역
산업은행	9.15/9.25/10.21	8,500	현금	기업구조조정기금 출자지원
	9/21~11/10	5,000	경유	도로공사출자를 위한 지원
	12.31	33,670	현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주식
수출입은행	9.15	1,000	현금	
	12.31	4,500	현물	도로공사주식
기업은행	10.15	2,000	현금	
	10.29	15,000	현물	담배인삼공사주식 및 포철주식

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기(1998.4월 이후)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4월 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금융·기업구조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는 우선 당시의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경제는 외환부문의 수급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금융구조개혁은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빠른 시일내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회복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출자재산	출자주식수(천주)	지분율(%)	액면가액(억원)	출자가액(억원)
포항종합제철(주) 주식	5,789	6.0	289	2,705
담배인삼공사주식	67,547	35.4	3,377	12,295
계	73,336		3,668	15,000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금공급능력을 확충하고, 합병·자체유상증자·외국과의 합작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며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외자도입능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었다.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우량금융기관과의 합병, 경영능력이 있는 제3자로의 매각을 검토하고 자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합병·계약이전 등에 의한 퇴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market discipline)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 및 퇴출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부실채권 정리, 예금자보호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은 사전에 정립된 명료화된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과 비은행권간의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구조개혁은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여 동시에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의 완급을 조절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인출 등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책(contingency plan)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은행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을 IMF와 합의한 시한('98.11.15)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우선, 은행 실사를 추진하고 매각을 전담할 주간사 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매각과 관련된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7년말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12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당초 시한인 1998년 6월말 보다 가급적 단축(4월말)하여 제출받은 후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불승인은행에 대하여는 합병·제3자 인수 또는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범어선 은행에 대해서도 1998년 상반기 가결한 후 내부통제시스템·위험관리능력
을 경영진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은행은 은행권과 시차를 두고 추
진하기로 하고 우선, 대주주 책임하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
다. 채부가 자산을 조파하는 회사나 자금여력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는 자체
증거나 합병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해나가고 정상화가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
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영업 양도등을 통하여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투신
사의 경우에는 주가와 금리 등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
여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되, 그때까지는 회사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해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리스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스사가 은행의 자회사였
기 때문에 모은행의 주도하에 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재편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제도를 조
기에 도입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적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기관의 자본충실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철저한 지구노력을 전
제로 재무구조의 개선이 확실시 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
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이 자체 유상증자를 하는 경
우에는 공적자금관리기금등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해줌으로써 자체증자노력을 적
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와 향후
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에 대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전과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
한 공적자금의 조성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제6차 경제
대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공 계획에서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과제를 정리
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64조
원의 공적자금 조성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완비하였다.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의 구조조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6월 29일 1997년말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³⁸⁾중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퇴출결정을 하였다. 이들 5개 은행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확충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된다 하더라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들 5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하고 영업을 정지시킨 후 인가를 취소하였다. 이처럼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³⁹⁾만큼 해당 우량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자산의 인수에 따라 위험가중자산⁴⁰⁾의 증가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증자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은행이 인수한 자산이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하 “풋백 옵션(Put Back Option)”)이라 한다) 일정기간 동안은 공적자금의 추가지원이 이

38) 서울은행·제일은행을 제외한 조흥·상업·한일·외환·동화·동남·강원·충북·대동·평화·충청·경기은행을 말함.

39) 예금자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예금(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은 우량은행으로 전부 이전하고, 대출금(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경우에는 우량한 계약만 이전함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 금융기관의 자산 즉 여신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금융기관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자산의 위험이 감안된 자산규모를 산출하게 된다.

위험가중치의 결정은 일반 상업대출을 표준적 리스크(100%)로 하여 상대비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위험가중치는 해당 자산의 절대가치가 아니라 표준리스크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

(주요 자산별 위험가중치 예시)

- 위험가중치가 0%인 자산: 현금,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채권, 중앙은행 및 정부가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적금담보대출 등 해당 은행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
- 위험가중치가 10%인 자산: 정부투자기관, 정부등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지방공기업, 신용보증기금 등 특수공공법인에 대한 채권,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권 등
- 위험가중치가 20%인 자산: 국내은행 관련채권,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은행이 보증한 채권, 기타 특수공공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등
- 위험가중치가 50%인 자산: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등
- 위험가중치가 100%인 자산: 상가이외의 모든 채권 및 자산(민간대출금, 유가증권 등)

루어지게 된다. 또한, 우량은행이 인수하지 않는 부실자산은 전액 자산관리공사에서 시가에 매입정리하게 된다.

1997년말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7개 조건부승인은행(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은 경영혁신 및 자본확충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미이행시 퇴출, 합병 등을 하기로 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은행부문의 경영정상화 노력은 1998년 7월중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성공으로 점차 가시화되어 8월에는 상업·한일은행의 합병 발표, 9월에는 하나·보람은행의 합병, 국민·장기신용은행의 합병발표로 본격화되었다. 이들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반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계획은 1998년 9월 28일 발표된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서 확정되었다.

(2)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1998.7.23/31)

■ 지원 배경

1997년 12월 32개 은행 및 30개 종금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실채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자금경색이 더욱 악화되자, 1998년 1월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8년 2월까지 금융기관(은행, 종금사)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전량을 매입키로 하였다. 특히 당시 제3자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이 인수의 선결조건으로 자본 감소와 부실채권의 완전한 정리를 요구함에 따라, 1998년 2월중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3조 5천억원이 넘는 두 은행의 부실채권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2월 4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4개 은행으로부터 매각을 요청받은 부실채권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8년 2월 11일부터 “자산관리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감독위원회산하의

구조개혁기획단이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IMF와의 합의사항에 따라('99.1.7 IMF제4차 프로그램 합의)⁴¹⁾ 전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계획이 전면 보류되었다.

그러나, 서울·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아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양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IMF 합의대로 1998년 4월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될 구조개혁기획단이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계획상⁴²⁾ 은행의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 및 경영정상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타 다른 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선계획의 제출시기를 당초 1998년4월말에서 3월말로 앞당김으로써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4월 24일 2조2,782억원의 부실채권을 1조1,833억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기금채권의 발행이자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매입대상채권 범위에 대한 협의 등에 따라 서울은행의 경우 7월23일, 제일은행의 경우 7월 31일 총 2조1,735억원의 부실채권을 1조1,055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졌다.

■ 지원 내용

제일·서울은행의 경우에는 총 매입대상 부실채권이 2조2천억원이었으며 사후 부실채권의 가치가 확정될 경우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입가격 수준을 채권액의 약 51%로 하여 1조 1천억원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41) IMF와의 제5차 합의('98.2.7)에 의하면 1998년 2월 1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의 매입은 은행구조조정 전담반이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서 또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Further loan purchases by KAMC will be made in the context of recapitalization plans approved by the bank restructuring unit, or as part of the process of liquidation(February 11, 1998)

42) 정부의 금융구조조정계획상 은행 및 종금사는 4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 6월말 승인

〈 표 2-21 〉

제일·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서울은행	10,400	4,989
제일은행	11,335	6,066
합 계	21,735	11,055

1) 계약액 기준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시장금리가 점차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기금채권 발행금리에 반영하여 정부의 기금채권 이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채권 발행금리를 고정금리부에서 변동금리부로 변경하고 채권의 만기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구 분	발행방법	기준금리	채권만기	비 고
변경전 (’98.4.16 제98-5차 경영관리위원회)	고정금리부	금융채 3년물의 평균발행 금리	3년	금융채 : 산금채, 장신채 중기채, 주택채
변경후 (’98.7.16 제98-7차 경영관리위원회)	변동금리부	국민주택채권 1종 1개월간 평균유통수익률*	5년	매 3개월마다 이자 지급

* 국민주택채권 1종 1개월간 평균유통수익률(’98. 6. 15~7. 14) : 13.15%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기준)

그리고, 매입대금은 전액 기금채권⁴³⁾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정금액(서울은행 208억원, 제일은행 224억원)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의 실제 가치가 매입당시 보다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43) 기금채권의 발행내역

채권종류	발행방법	기준금리	이자지급방법	상환방법	지급보증
변동금리부 무기명식이표채 (5년 만기)	등록발행	국민주택채권 1종 1개월간 평균유통수익률	3개월단위 후 급	만기일시 상 환	대한민국 정 부

(3) 지급여력비율 0% 미만 보험회사의 구조조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3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거나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생명보험회사, 4개 손해보험회사 및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1998년 5월 11일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어서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998년 8월 11일 1998년 3월말 기준으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급격한 수입보험료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차입 제외)없이 보험금지급이 어려우며, 자산과 채무의 구조를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4개 생명보험회사(국제, BYC, 태양, 고려)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2000년 9월말까지 증자 및 후순위 차입등을 통한 자본조달계획, 경영효율개선 및 조직감축을 통한 사업비절감 등 내부유보 증대계획, 자산운용의 건전화 등 전반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실현가능성이 확실히 되는 7개 생명보험회사(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와 2개 손해보험회사(해동화재, 동부화재)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에 다소 미달하나 자산운용의 건전화, 경영효율 개선 및 조직감축을 통한 사업비절감 등 내부유보 증대계획, 증자 및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본조달계획등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2000년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경제여건 및 보험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비율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세부이행계획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개 생명보험회사(동아,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조선, 두원)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경영평가위원회는 2개 보증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보증보험회사를 퇴출시킬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양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진 개편, 경비절감, 합병 등이 포함된 강도높은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1998년 9월 12일 제출된 수정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하여 동 경영평가위원회는 인원 및 조직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보증보험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합병계획은 대체로 적정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의 기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합병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고 정부의 유동성지원을 병행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10월 15일까지 기 제출한 수정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분기별 세부 이행계획서의 제출,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미이행시 책임등을 명시한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양 보증보험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국제생명보험회사 등 4개 생명보험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보험회사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자 보호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삼성생명보험회사 등 4개 생명보험회사(국제 → 삼성, BYC → 교보, 태양 → 흥국, 고려 → 제일)로 각각 이전토록 결정하고 아울러 동 부실 생명보험회사의 순자산 부족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4) 23개 은행 및 2개 보증보험사 부실채권 매입 (1998.9.29)

■ 지원 배경

정부는 1998년 9월말 기준으로 은행, 보험부문을 클린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은행의 경우에는 1998년 4월 발표한 은행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어온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가 일단락되어 5개 은

행의 퇴출, 4개은행의 합병, 9개은행의 자체경영정상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의 매입과 증자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채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 취득하게 되는 구상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개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98.6.29)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제1차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1998년 9월 2일 제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부실채권매입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부실채권 매입계획」을 9월16일에 자산관리공사로 통보하였다.

〈 표 2-22 〉 1998.9중 부실채권 매입계획(1998.9.2 제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결정사항)
(단위 : 조원)

은행구분		매입액	매입 소요액	매입 사유·조건	비고
정리은행	동화 대동 경기 충청	전액	2.5	'98.6.29자 계약이전결정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				
합병은행	상업 한일	전액	1.8	합병 지원조건	'98.9.14 이행계획 승인
	(하나) 보람	(50%) 전액	0.1	"	
	(국민) 장신	(50%) 50%	0.1	"	50% 범위내에서 선택(우량은행)
	조흥 의환 평화 충북 강원	전액	3.5	정부지원 이행계획(9월중 제출예정) 금감위 승인조건	
자체정상화은행	경남 부산 대구	전액		정부지원 이행계획(합병) 금감위 승인조건	
	제주	전액		정부지원 이행계획 승인조건	
		전액		'98.9.12 금감위 이행계획 제출요청	
은행계	23개		10.0		
보증 보험	대한 한국	전액(3년 이내 부실채권)	0.9	합병 등 자구노력지원	

주 : 매입소요액은 변경된 매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표 2-23〉

5개 정리는행등의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금융기관	부실채권 보유액(A) ¹⁾	채 권 액(B)	매 입 액 ²⁾	매입비율 (B/A)
정리는행 (5개)	대 동	10,072	8,261	1,685	64.3
	동 남	11,066	5,257	1,205	
	동 화	21,215	12,507	2,147	
	경 기	16,928	13,954	3,191	
	충 청	12,983	6,478	1,523	
	소 계	72,264	46,457	9,751	
인수은행 (5개)	국 민	23,240	8,914	4,123	39
	주 택	19,057	4,252	1,842	
	신 한	16,394	9,064	4,374	
	한 미	4,955	3,158	1,457	
	하 나	3,512	782	410	
	소 계	67,158	26,170	12,206	
합병은행 (4개)	상 업	28,496	21,423	9,666	65.8
	한 일	25,696	20,715	10,019	
	보 람	5,056	4,214	2,096	
	장 기	14,792	2,387	1,773	
	소 계	74,040	48,739	23,554	
자 체 정상화은행 (9개)	조 흥	37,577	27,691	12,268	67.9
	외 환	32,474	20,270	9,384	
	평 화	5,197	2,349	667	
	충 북	3,876	2,575	1,091	
	강 원	5,725	2,249	1,053	
	대 구	10,733	8,099	4,033	
	부 산	10,033	6,973	3,480	
	제 주	2,907	2,116	935	
	경 남	6,765	5,987	2,885	
	소 계	115,287	78,309	35,796	
은행 계(23개)		328,749	199,675	81,307	60.7
보증보험(2개)		50,181	30,461	9,543	60.7
합 계(25개)		378,930	230,136	90,850	60.7

주 1) 부실채권은 '98. 6. 30기준 고정이하(3개월이상 연체포함) 채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집계한 것임.

2) 계약액 기준

■ 지원 내용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9월 28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9월 29일 23개 은행의 부실채권 19조9,675억원과 2개 보증보험사의 부실채권 3조461억원 등 총 23조136억원의 부실채권을 9조850억원에 매입하였다.

이번 부실채권의 매입은 합병은행, 자체정상화은행, 5개 인수은행 등 18개 지원대상 은행 중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은행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한 부실채권 전량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한 부실채권의 50% 범위내의 부실채권을 모두 매입하였고, 보증보험사(대한·한국)에 대해서는 매각가능채권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대상 금융기관 전체 부실채권의 60% 이상을 인수하게 되었다.

매입방법을 보면, 은행의 경우 확정매입률에 의한 방식을 통해 담보부채권은 채권액등의 45%,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의 매입률을 적용하였으며, 보증보험사의 경우는 평균구상률을 기준으로 결정한 일정 매입률로 일괄 매입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매입대금은 1998년 9월 29일 1차로 4개 합병은행과 9개 자체정상화은행, 2개 보증보험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9월 30일 2차로 5개 인수은행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동남은행을 인수한 주택은행이 동남은행 보유 부실채권의 매각명세서를 뒤늦게 제출함에 따라 동행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6일 3차 매입시에 함께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외화채권 매입대금은 1998년 12월 23일 외화표시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지급하였다.

■ 지원 효과

1998년 9월 23개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의 일괄매입은 그 규모나 효과면에서 금융기관 정상화와 금융중개기능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적지않은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은행의 매입희망 부실채권을 대부분 매입함으로써 은행들이 자산건전성을 회복시켜 우량은행(Clean Bank)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은 단기적으로는 매각손 발생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나, 무수익자산이 수익자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위험자산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정부의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이 병행됨으로써 5개 인수은행 및 합병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 수준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둘째로는 대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변화를 유도하여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IMF, Moody's, S&P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기관들이 1998년 10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셋째, 부실채권 매입은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주체가 되는 은행권의 정상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경제안정화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로부터 부실채권의 정리부담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정상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 표 2-24 〉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금융기관	총여신(A)	부실채권 보유액(B)	매입채권액 (C)	부실채권규모 (D=B-C)	부실채권비율 [D/(A-C)] *100
인수은행 (5개)	국 민	274,457	23,240	8,914	14,326	5.4
	주 택	297,259	19,057	4,252	14,805	5.1
	신 한	250,257	16,394	9,064	7,330	3.0
	한 미	89,756	4,955	3,158	1,797	2.1
	하 나	96,391	3,512	782	2,730	2.9

구 분	금융기관	총여신(A)	부실채권 보유액(B)	매입채권액 (C)	부실채권규모 (D=B-C)	부실채권비율 [D/(A-C)] *100
합병은행 (4개)	상 업	281,634	28,496	21,423	7,073	2.7
	한 일	346,792	25,696	20,715	4,981	1.5
	보 람	86,888	5,056	4,214	842	1.0
	장 기	150,864	14,792	2,387	12,405	8.4
자 체 정상화 은 행 (9개)	조 흥	348,738	37,577	27,691	9,886	3.1
	외 환	391,361	32,474	20,270	12,204	3.3
	평 화	47,072	5,197	2,349	2,848	6.4
	충 북	18,275	3,876	2,575	1,301	8.3
	강 원	21,388	5,725	2,249	3,476	18.2
	대 구	74,014	10,733	8,099	2,634	4.0
	부 산	60,820	10,733	6,973	3,760	7.0
	제 주	10,310	2,207	2,116	91	1.1
	경 남	51,089	6,765	5,987	778	1.7
계		2,897,365	256,485	153,218	103,267	3.8

주) 총여신(A)은 1998년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이며, 부실채권보유액, 매입채권액, 부실채권규모(B~D)은 1998년 9월말 해당 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5) 상업·한일은행 출자(1998.9.30)

■ 지원 배경

1998년 8월 합병방침을 발표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경우에는 1998년 9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양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손을 보전하고 1998년 6월말 기준으로 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잠식 리스사에 대한 여신의 50%, 협조융자 계열기업 여신의 50%, 기타 요주의 여신의 일부가 추가로 부실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충당금 적립을 보전하는 한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각각 BIS기준 기본 자기자본비율 5%⁴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출자방

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 내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하여 3조2,642억원⁴⁵⁾의 출자를 지원하여 해당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양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정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조건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1998년 10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매분기별로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일 제출된 이행계획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실천하지 아

44) BIS자기자본비율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과 같은 기본자본(tier 1)과 후순위채권, 각종 충당금성격의 적립금과 같은 보완자본(tier 2)으로 이루어지는데, 양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수준의 보완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자본만 5%로 확충할 경우 전체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었다.

45)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적자금 요청 금액 산출내역

(단위 : 억원)

	항 목	금 액	비 고
A.	부실채권매각후 위험가중자산	484,881	
B.	필요 BIS자기자본 (10% 달성에 필요액)	48,488	$A \times 10\%$
C.	보완자본 기조달액 ¹⁾	24,244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
D.	기본자본 필요액	24,244	$B - C$
E.	부실요인등을 감안후 기본자본 조달액	-8,456	$a-b-c+d$
	a. 98.6말 기본자본	17,965	
	b. 충당금추가적립 ²⁾	(16,126)	
	- 기존부실채권관련	4,058	
	- 추가부실채권관련	12,068	
	c. 부실채권매각손 ²⁾	(16,172)	
	- 기존부실채권관련	11,477	
	- 추가부실채권관련	4,695	
	d. 경상업무이익	5,877	
F.	증자지원액	32,700	$D - E$
G.	부실채권매입액 ³⁾	12,600	
H.	정부지원액 계	45,300	$F + G$

1) 정상 요주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

2) ○ 기존부실채권 : 98.7.1부터 시행된 수정은감원기준 부실채권(4.6조원)

○ 추가부실채권 예상규모(3.2조원으로 추정)

3) 기존 부실채권 4.6조원중 3.7조원 매입시 성업공사가 지급하는 금액

→ 매입을 고정여신 45%, 회수의문·추정손실 여신 3%

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은행의 상임임원 전원은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행계획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 전원이 공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은행장을 비롯한 전 상근임원의 서명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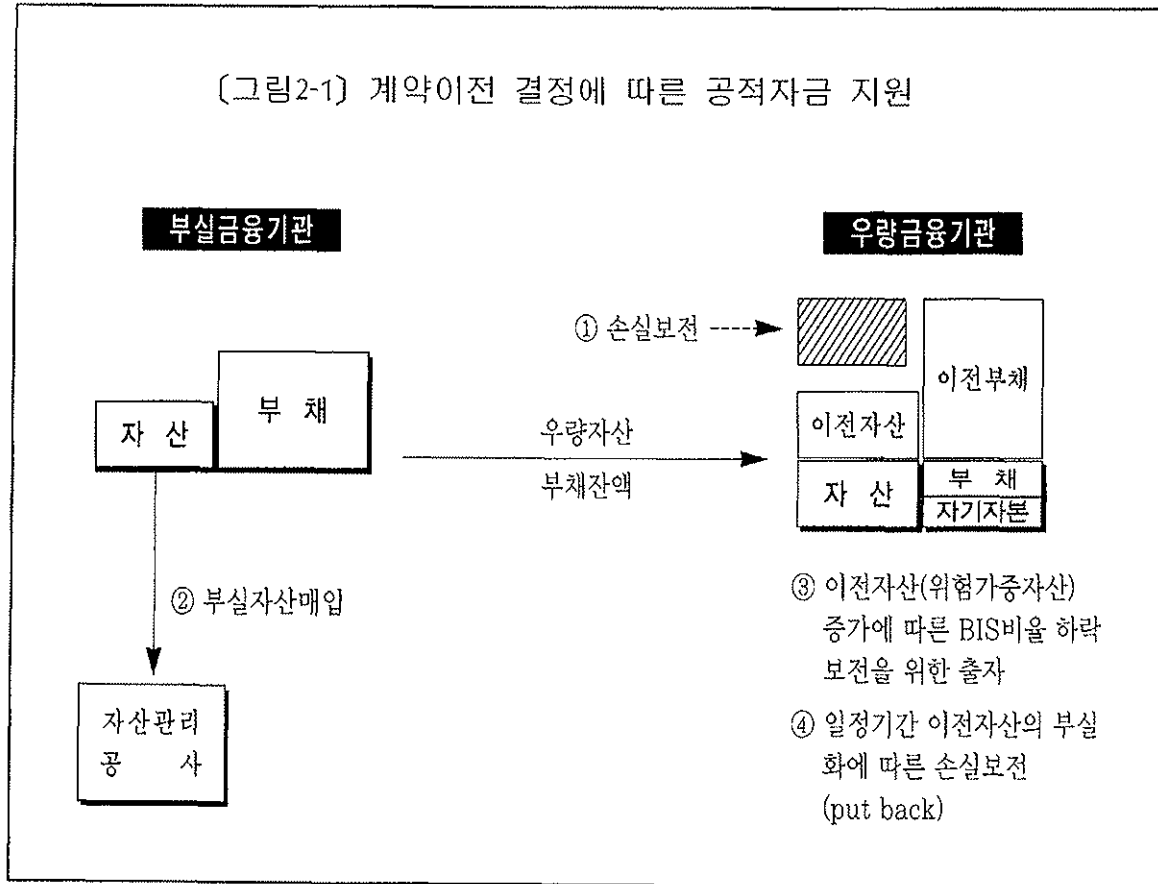
(6)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1998.9.30)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5개 정리은행(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의 자산과 부채등은 5개 우량은행(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으로 이전되도록 확정되었다. 그러나 5개 인수은행과의 손실보전 범위 및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약이전 결정서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9월 30일 최종적인 손실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 최초 계약이전결정서에서는 부채 전체와 우량자산을 이전한 후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정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 지급보증 및 협조융자업체의 여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손실발생시점에서 지원하는 한편, 각 은행이 자산을 인수한 후 1999년 3월 31일(풋백옵션기간 : 6개월)까지 부실화되는 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1999년 3월 31일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수은행이 인수하지 않는 부실채권의 매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담보부 채권인 경우에는 원금채권액의 36%, 무담보채권인 경우에는 원금채권액의 1% 수준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이전결정후 5개 인수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협의결과 계약이전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손실보전의 방법등과 관련하여 1998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자산초과부채액 보전의 방법은 당초 결정서에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급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출연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그림2-1〕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할 경우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탁계정, 협조융자계열여신, 지급보증의 인수범위에 대해서도 변경이 이루어 졌다. 당초에는 모든 관련 여신에 대하여 인수은행측에서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신탁계정중 원본보전 신탁은 인수하고 실적신탁은 인수하지 않되, 인수은행이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대행에 따른 손실은 적절히 보전하기로 하였으며, 협조융자계열 여신은 인수하지 않고 지급보증중에서도 보증채무 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원화지급보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풋백옵션의 기간은 일반여신은 6개월, 지급보증은 1년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손실보전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일반여신, 지급보증 모두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9월 14일에도 종전 결정된 매입율이 과거의 경험회수율에 근거함으로써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거액의 매각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은행들간의 논의를 거쳐 부실채권매입율을 담보부채권인 경우

에는 종전 36%에서 최근 3개월간 전국 법원의 평균 낙찰률 수준인 45%로 상향 조정하고 무담보채권인 경우에는 종전 1%에서 3%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9월 30일에도 인수은행들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이전결정서의 일부 수정이 재차 이루어졌다. 인수후 발생하는 부실자산의 풋백옵션기간을 6개월에서 1년⁴⁶⁾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유가증권은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손실을 보전하며 협조융자계열여신은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은행이 협의하여 정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개 인수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초의 출연은 1998년 9월 30일 이루어졌다. 최초 출연시에는 유가증권, 지급보증대출, 협조융자계열여신 등에 대한 평가손실과 같은 추가부실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한 손실보전만 이루어졌다. 추가부실요인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에 따른 손실과 함께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는 바⁴⁷⁾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 내용

1998년 9월 30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는 5개 인수은행에 대하여 5조7,790억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최초의 손실보전을 지원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1조651억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1조5,376억원, 주택은행의 경우에는 6,812억원,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7,739억원, 한미은행의 경우에는 1조7,212억원의 출연이 이루어졌다.

출연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직접 채권으로 지급되었는데 동 채권은 기준금리가 발행일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1종채권의 평균유통수익율인 상하한 10~15%수준의 변동금리로 발행되었다.

46) 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협의결과 풋백옵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은행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고, 풋백옵션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은행들이 인수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부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이 이루어졌다.

47) 5개인수은행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은 1999년 3월말, 6월말, 9월말 분기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3월말 보전내역 : 1998년 9월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연된 평가손실, 출연약정서에 따라 1998년 9월 이후 발생한 손실금액과 자산운용 등에 따른 자금운용 손익,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한 Put Back Option 해당금액, 사후확인결과 적출된 오류금액 정산 등

- 6월말 보전내역 : 출연약정서에 의한 실현손실 및 자금운용 손익

- 9월말 보전내역 : 협조융자 계열의 여신 정산,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한 리스사 여신, 실적실태관련 자산에 대한 Put Back Option 해당금액

(7) 4개 인수보험회사 손실보전(1998.9.30)

■ 지원 배경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생명보험회사가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으로 각각 계약이전 결정됨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졌다.

■ 지원 내용

1998년 9월 30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최초 손실보전 규모는 1조1,55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보유계약등 미래손익가치의 평가금액과 추후 정산시에 여유금액을 감안하여 지원필요액의 80% 수준인 9,247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3,641억원,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1,970억원, 흥국생명의 경우에는 1,958억원, 제일생명의 경우에는 1,678억원의 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인수되는 자산중 향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부실화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추가손실보전(Put Back Op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 광주·전북은행, 증권사 및 생보사 부실채권 매입(1998.11.6)

■ 지원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8월 21일 계약이전결정을 내린 4개 생보사 등에 대한 「'98.11중 부실채권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11월2일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8년 11월 5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6일 광주, 전북 등 2개 은행과 경영정상화 승인을 받은 2개 증권사(SK, 쌍용) 및 1개 보험사(한덕), 4개 정리생보사(고려, 국제, BYC, 태양)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총 4,969억원의 부실채권을 2,616억원에 매입하였으며, 기관별 매입내역은 <표 2-25>와 같다.

< 표 2-25 > 광주·전북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은 행	광 주	3,074	1,740
	전 북	514	262
	소 계	3,588	2,002
경영정상화승인증권사	S K	202	31
	쌍 용	950	533
	소 계	1,152	564
경영정상화승인보험사	한 덕	29	19
정 리 생 보 사	고 려	36	1
	국 제	25	11
	B Y C	65	15
	태 양	74	4
	소 계	200	31
합 계		4,969	2,616

1) 계약액 기준

은행 및 생명보험사는 은행감독원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매입가능 채권(수정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적용)을, 증권사의 경우에는 '97년도 결산지침에서 정한 회수불확실 채권 및 회수불확실로 분류되나 선순위담보, 보증계약이 존재하거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중 매입가능 채권을 매입대상채권으로 하였다.

매입범위는 광주, 전북은행은 보유부실채권의 50% 범위내로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는 매각을 원하는 채권 전액으로 하였고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1998년 9월의 부실채권 매입률을 준용하였다.

(9) 4개 인수보험회사 손실보전(1998.11.20)

■ 지원 배경

4개 부실생보사의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보전이 1998년 9월 30일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계약이전에 따른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위하여 자산, 부채에 대한 간이 실사결과에 의거하여 추정손실액의 80% 수준의 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8년 11월 20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손실액에 대한 추가 출연지원이 이루어졌다.

■ 지원 내용

확정손실액에 대한 추가 손실보전 규모는 2,288억원이었으며,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688억원, 교보생명 429억원, 흥국생명 765억원, 제일생명 406억원이었다.

(10) 5개 인수은행 출자(1998.12.28)

■ 지원 배경

1998년 9월 30일 5개 정리은행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자산을 이전받은 5개 인수은행의 경우에는 자산의 인수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부분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출자지원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년 12월 28일 이루어졌다. 또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합병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지원을 위한 우선주⁴⁸⁾ 형태의 추가 출자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48)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또는 잔여자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주식으로서 당기 결산시에 배당금이 약정된 우선배당율에 미달한 경우 부족한 배당금을 계속 이월시켜 다음 기의 배당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누적적 우선주, 이월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하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우선주가 소정의 배당을 받고 다시 보통주의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를 참가적 우선주, 보통주의 자격으로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식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누적여부·참가여부를 서로 조합하여 발생이 가능하다. 또한, 우선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달성되거나 발행기한이 도래한 경우 보통주로 자동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될 수도 있다.
우선주와 은행의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 지원 내용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년 6월말 5개 인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되도록 총1조 1,923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보람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295억원의 출자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출자방식은 해당 우량은행의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없도록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로 액면가(5,000원)에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1%로 하였고 이에 맞추어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도 1%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우선주 출자지분은 출자이후 일정시점에서 인수은행이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고, 소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우선주 출자지분의 매입상환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2-26 〉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우선주 출자지분 상환일정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국 민	400	400	600	300	300	2,000
주 택	593	593	890	444	445	2,965
신 한	585	585	878	438	439	2,925
한 미	520	520	780	390	390	2,600
하 나	1,374	1,374	1,551	215	214	4,728
합 계	3,472	3,472	4,699	1,787	1,788	15,218

* 충청은행 인수에 따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보전분(1,433억원)과 보람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지원분(3,295억원)의 합계액임

누적적 또는 참가적 우선주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11) 2개 퇴출증권사 보험금 지급(1998.12.28)

■ 지원 배경

19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실시한 결과 부채과 자산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0월 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영업 정지된 동방페레그린 증권과 1998년 9월 19일 기준으로 회사가 발행한 증권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장은증권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각각 11월 20일, 12월 10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고 1998년 12월 28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제31조⁴⁹⁾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였다.

■ 지원 내용

2개 증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규모는 동방페레그린 증권 100억원, 장은증권 41억원으로 총 141억원이었다.

(12) 5개 특수은행 부실채권 매입(1998.12.29)

■ 지원 배경

특수은행의 누적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98.9.28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와 동 발표내용에 의거한 「'98.12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계획」등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1998년 12월중 부실채권 매입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년 12월 28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5개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과 부실채권 4조 5,308억원을 1조 9,03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9)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등의 지급)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원 내용

매입대상채권은 은행감독원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매입가능 채권으로서 3개월 이상 연체여신, 대지급 발생, 지급보증, 특별채권 및 국내지점 취급 외화채권(기일 미도래 지급보증은 특별채권에 한해 매입대상에 포함)으로 하였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금액(은행선택) 전량을 매입하였고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1998년 9월 매입기준을 준용하였다.

매입규모는 일괄확정매입방식에 의해 5개 특수은행(산업, 기업, 농협, 수협, 축협)의 부실채권 4조 5,308억원을 1조 9,03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각 은행별 매입내역은 <표 2-27>과 같다.

< 표 2-27 > 5개 특수은행 부실채권 매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산 업	31,231	13,606
기 업	5,334	1,369
농 협	6,707	3,193
수 협	1,051	413
축 협	985	449
합 계	45,308	19,030

1) 계약액 기준

한편, 매입대금은 원화채권에 대하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고,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는 1999년 5월 24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특별채권의 지급보증채권에 대하여는 대지급 발생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1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중소기업지원실적 우수은행 후순위채 매입
(1998.12.29)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5개 정리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 주택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인수은행의 자산인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적극 동참한 한미은행 등 중소기업지원우수 11개 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 전담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유지를 통해 은행권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매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98년 12월 29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와 해당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 지원내용

주택은행 등 13개 은행은 총 1조4,51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보유하고 있는 공사채 1조4,517억원을 교환하였다. 후순위 채권의 만기일(5년)이 도래하게 되면 양 채권은 다시 교환하게 되며, 후순위채권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립금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된다.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동 기금의 예탁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율을 기본금리로 하고 가산금리는 대상은행과 약정하되 5개 정리은행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후순위채 매입분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후순위채 매입분에 대해서는 1%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였다.

각 은행별 후순위채 매입내역은 다음 <표 2-26>과 같다.

〈 표 2-28 〉

은행별 후순위채 매입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인수손실보전 ¹⁾	중기지원 우수 ²⁾	계
주택은행	1,482	363	1,845
국민은행	1,000	536	1,536
하나은행	717	315	1,032
한미은행	1,333	631	1,964
신한은행	1,385	-	1,385
보람은행	-	631	631
경남은행	-	631	631
광주은행	-	473	473
상업은행	-	363	363
외환은행	-	363	363
조흥은행	-	347	347
장기신용은행	-	347	347
소 계	5,917	5,000	10,917
기업은행	3,600 ²⁾		3,600
계			14,517

1) 후순위채권 가산금리 0%, 2) 후순위채권 가산금리 1%

(14)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지원

(산업은행 1999.2월, 12월/수출입은행 1999.1~3월/기업은행 1999.1월)

■ 지원배경

1999년 들어서도 특수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확충하고, 기업에 대한 여신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특수은행에 대한 현금 출자가 이루어졌다.

■ 지원내용

출자규모는 3개 은행 전체 4,000억원으로서 대부분 연초에 출자집행이 이루어졌다.

〈 표 2-29 〉

특수은행에 대한 출자지원 내역

(단위: 억원)

은 행	출자일	출자규모	내 용	내 역
산업은행	2.12/2.25/12.15	2,000	현금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펀드출자지원
수출입은행*	1.29/2/25/3.26	1,000	현금	
기업은행	1.30	1,000	현금	

*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9년 2월 1일 한국은행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해 7,000억원의 현금출자가 이루어졌고, 이중 3,360억원은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에 재출자하였음

(15)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1999.2.1)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은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2000년 3월말까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5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마련하고 독일 Commerz은행으로부터 2억불의 외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당시 3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은행의 증자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가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의 취지를 이유로 직접 출자를 하지 않고, 대신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1조6,758억원→2조3,758억원)하여 안정적인 수출입금융 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수출입 금융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외환은행에 대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자받은 7천억원의 재원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출자⁵⁰⁾함으로써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기

50)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미 1982년 7월부터 “협조용자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한 업무제휴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 수출입은행법상 수출입은행의 출자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근거 : 수출입은행법 제4조

-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수은의 외환은행 출자근거 :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로 하였다.⁵¹⁾

■ 지원 내용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수출입금융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7천억원의 증자를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분은 종전 15.8%에서 40.6%로 증가하였고, 수출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998년말 16.16%에서 20.42%로 상승하게 되었다. 한편, 수출입은행에서는 외환은행에 3,360억원을 4월 21일 출자함으로써 Commerz은행의 2,600억원의 우선주 출자, 임직원등 기타 투자자의 4,260억원의 출자 등 총 1조원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짐으로써 외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998년 12월말 추정 8% 수준에서 10.5%로 개선되어 은행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16) 한남투자증권 보험금 지급(1999.2.5)

■ 지급배경

1999년 1월 6일 구 재정경제원에서 한남투자증권에 대하여 증권업 허가취소를 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제2종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예금자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1월 27일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보험금지급 규모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고객예탁금에 해당하는 6천2백만원이었다.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51)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외환은행에 우회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영리법인에 대하여 출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환은행과 같이 연혁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서는 곤란하며 한국은행이 우회출자 등으로 한국은행법의 정신을 사실상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17) 조흥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2.12)

■ 지원 배경

1999년 1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은 조흥은행이 부실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동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99.2.2)함에 따라, 매각대상 채권명세를 확인한 후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9년 2월 12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괄확정매입방식으로 조흥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매입대상채권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분류여신('98.7.1 수정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적용) 중 매입가능채권으로서 3개월 이상 연체여신, 대지급발생 지급보증, 특별채권 및 국내지점 취급 외화채권(단, 기일미도래 지급보증은 특별채권에 한해 매입대상에 포함)으로 하였으며,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 국외지점 취급 채권, 소멸시효완성 채권, 제3자 매각 추진중인 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금액 총 876억원(일반채권 848억원, 특별채권28억원)의 조흥은행 부실채권을 428억원(일반채권 415억원, 특별채권 13억원)에 매입하였다.

〈 표 2-30 〉

조흥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일 반	담보부채권	595	408
	무담보채권	252	7
특 별	담보부채권	3	1
	무담보채권	26	12
합 계		876	428

1) 계약액 기준

매입방법 및 기준(매입률)은 1998년 12월 29일 5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8) 조흥은행 출자(1999.2.13)

■ 지원 배경

조흥은행은 1998년 11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조치 요구 의결을 거쳐 1998년 12월 1일 은행감독원장의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받았다. 또한 동 은행은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급격한 하락등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매우 커서 외부로부터의 대폭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조흥은행은 1998년 12월 17일 공적자금의 지원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 은행을 청산하기 보다는 증자지원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구조조정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액면가에 크게 미달하는 조흥은행의 주가수준을 감안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를 명령하고 정부지원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1999년 3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조흥은행은 강원은행등과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강원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우선 강원은행과 현대중금이 합병을 한 후 추가로 조흥은행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아울러 경영진 교체, 본점의 지방이전, 상호변경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은행으로 탈바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승인하되,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내용

조흥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규모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회계기준 강

화에 따른 총당금 추가적립액, 추가부실 발생에 따른 손실예상액,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등을 감안한 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조흥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규모를 2조1,723억원⁵²⁾으로 정하여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999년 2월 13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⁵³⁾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2조1,123억원의 출자를 결정하였다. 동 출자금액은 1조8,707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ADB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 2억불(2,416억원)로 조달되었다.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95.6% 수준이 되었다.

52) 조흥은행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산출내역

(단위 : 억원)

	항 목	금 액	비 고
A.	부실채권매각후 위험가중자산	266,902	
B.	필요 BIS자기자본 (10% 달성에 필요액)	26,690	A × 10%
C.	보완자본 기초달액 ¹⁾	13,345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
D.	기본자본 필요액	13,345	B - C
E.	부실요인등을 감안후 기본자본 조달액	-8,378	a-b-c+d
	a. 98.6말 기본자본	6,245	
	b. 총당금추가적립 ²⁾	(11,053)	
	- 기존부실채권관련	2,860	
	- 추가부실채권관련	8,193	
	c. 부실채권매각손 ²⁾	(6,715)	
	- 기존부실채권관련	3,778	
	- 추가부실채권관련	2,937	
	d. 경영업무이익	3,145	
F.	증자지원액	21,723	'98. 하반기 D - E

1) 정상·요주의여신에 대한 대손총당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

2) ○ 기존부실채권 : '98. 7. 1부터 시행된 수정은감원기준 부실채권 (3.8조원)

○ 추가부실채권 예상규모 (2.2조원으로 추정)

53)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부실우려금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②공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9) 충북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3.31)

■ 지원 배경

조흥은행 및 강원은행과 합병을 추진중인 충북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매입요청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9년 3월 30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충북은행과 1999년 3월 31일자로 7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25억원에 매입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원 내용

매입대상 채권은 자산실사결과에 따른 1998년 12말 현재 충북은행이 보유중인 고정이하 여신('98.7.1부터 시행된 은행감독원의 기준 적용) 중 해당 은행이 매각을 희망하는 부실채권 전액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입방법 및 매입률 등 매입기준은 1999년 2월 12일 조흥은행 부실채권 매입기준과 동일하다.

충북은행의 부실채권 매입현황은 다음 <표 2-31>과 같다.

< 표 2-31 >

충북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일반채권	담보부채권	19	13
	무담보채권	35	1
특별채권	담보부채권	-	-
	무담보채권	24	11
합	계	78	25

1) 계약액 기준

(20) 평화은행 출자(1999.4.1)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평화은행의 경우에는 부실채권 매각 및 주식매매 손실 증가 등에 따른 적자 규모의 확대로 1998년 10월말 현재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 2,730억원중 1,730억원을 감자하고 임직원 퇴직금 150억원, 일반 공모 1,050억원 등 1,200억원의 증자계획을 이행 완료하는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추가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립으로 1998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에서는 1998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추가증자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경영상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999년 3월 27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부실우려금융기관인 평화은행에 대하여 BIS자기자본비율 4% 충족에 필요한 금액을 출자하기로 의결하였다.

■ 지원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상 평화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 조달한 자본금 범위에 해당하는 2,200억원에 대하여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차원⁵⁴⁾에서 우선주 형태로 1999년 4월 1일 출자지원하였다.

(21) 조흥은행 출자(1999.5.6)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8년말 기준으로 실시한 자산·부채의 평가결과 부채가 자산을 610억원 초과하였고 여신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의 합병시 이미 2조1,123억원이 출자된 조

54) 정부의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상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의에는 정부는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투자자의 지분참여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다.

흥은행에 늘어나게 되는 부실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5월 6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법인에 대하여 출자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 지원 내용

조흥은행에 대한 출자지원 규모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으로 결정되었다.

(22)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 [제1차 풋백옵션] (1999.5.12)

■ 지원 배경

1998년 9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인수은행간에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따라 5개 인수은행이 인수한 자산 중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3차례의 출연계획중 제1차분에 대한 지급이 1999년 3월말을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5개 인수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3조4,280억원의 출연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9월말 최초출연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자산평가 손실 2조3,222억원중 원화대출금등의 평가손실과 이전비용에 해당하는 1조553억원,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되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평가할 경우 실현되는 손실 1조4,268억원, 인수된 유가증권등의 자금운영손실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상황에 따른 실현손실 9,170억원, 상기손실에 대한 지급일까지 경과이자 289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인수은행이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고 관련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상당부분의 요청내역을 조정한 후 1차 추가출연계획에 따른 보전분을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 지원 내용

제1차 추가출연 계획에 따른 자금지원분은 2조2,562억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에 4,974억원 한미은행에 2,688억원, 주택은행에 6,640억원 국민은행에 5,908억원 하나은행에 2,352억원이 지원되었다.

당초 인수은행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은 3조4,280억원이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은행간 사전협의를 따라 은행 스스로 7,414억원을 차감⁵⁵⁾하였고, 예금보험공사의 확인결과 총 1조1,718억원을 차감 또는 지급보류⁵⁶⁾한 데 따라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23) 5개 인수은행 추가부실채권 매입(1999.5.19)

■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5개 인수은행(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이 5개 정리는행(동화, 경기, 대동, 동남, 충청)으로부터 계약이전받은 자산이 인수후 부실화되어 계약이전결정서 제7조(인수후 발생하는 부실자산의 처리)⁵⁷⁾에 의거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1999년 5월 18일 경영관리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5월 19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5개 은행의 추가부실채권을 확정매입물로 사후정산없이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계약이전기준일인 1998년 9월 29일부터 매각기준일인 1999년 3월 31일까지

55) 5개 인수은행이 인수한 핵심예금(은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예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예금)의 평가액 960억원, 인수한 자산에 대한 평가오류금액등 1,958억원, 인수은행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이전시키지 않고 자체 정상화한 여신 등 4,496억원

56) 인수은행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미 수령하였던 정리는행의 고정자산 매각대금 544억원,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수은행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이전결정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경과이자 286억원, Put Back Option대상자산등에 대한 평가오류금액 968억원은 지급요청에서 차감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확인한 결과 오류로 지적된 금액중 인수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6,495억원은 제2차 출연시 정산하기로 연기하고 CP등 만기도래 미회수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실 3,424억원도 우선 지급을 보류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57) '98.6.29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7조에 따르면 인수은행은 정리는행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중 인수후 1년 이내에 부실화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음.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해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으로서 인수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부실화된 자산을 매입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서」상의 매입기준에 의해 일반채권의 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45%, 무담보 채권은 3%의 매입률로 매입하였으며, 특별채권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은 업무방법서상 유효담보가액의 28.2%,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의 매입률을 적용하였다.

5개 인수은행(국민, 신한, 주택, 하나, 한미)의 총 1조 7,514억원의 부실채권을 2,804억원에 매입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32 〉

5개 인수은행 추가부실채권 매입현황¹⁾

(단위 : 억원)

은행	채 권 액			매 입 액 ²⁾		
	일반채권	특별채권	합 계	일반채권	특별채권	합 계
국 민	1,777	1,948	3,725	332	117	449
신 한	2,586	1,417	4,003	533	122	655
주 택	1,862	757	2,619	334	79	413
하 나	853	1,163	2,016	242	94	336
한 미	2,024	3,127	5,151	610	341	951
합 계	9,102	8,412	17,514	2,051	753	2,804

주 1) 외화채권은 채권액 36,057천 \$, 매입대금 9,059천 \$이며, 상기 표상에는 '99. 3. 31기준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함.

2) 계약액 기준

한편, 매입대금 2,804억원 중 원화채권 매입대금 2,693억원은 원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외화채권 매입대금은 보유 원화자금으로 대금지급일자인 1999년 5월 19일자 환율을 적용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였다.

(24) 대구은행 후순위채 매입(1999.6.17)

■ 지원배경

IMF외환위기이후 신발, 섬유산업의 침체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9월 25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제출한 지구노력과 합병내용을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하여 분기별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임원진 전원 사퇴, 조직 및 인원의 50%이상 감축, 급여 30% 삭감을 하도록 하는등 강도높은 지구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31일 실시한 자산·부채清查결과 순자산이 마이너스 3조7,930억원에 이르르고, 금융유동자산(현·예금과 유가증권의 합계)이 1조773억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분율은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사들보증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원금융기관으로 지정하

■ 지원 배경

(25) 사들보증보험 출자(1999.6.24)

정부는 대구은행이 탈행한 후순위채 1,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공채 1,000억원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입지원하였다. 대구은행이 탈행한 후순위채권의 표면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동기금의 예탁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율은 기본금리로 하고 가산금리는 1%로 하였으며,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교환한 공채와 후순위채권을 다시 교환하기로 하였다.

■ 지원내역

있는 대구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은행에 대한 후순위채 매입지원 방침이 결정되었다. 특히, 대구은행은 대동은행등의 퇴출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은행이 탈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6월 17일 대구은행이 탈행한 후순위채권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공채를 교환하는 거래를 체결하였다.

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필요금액을 1조2,500억원으로 결정하여 요청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29일 매입한 미구상채권 대금의 정산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기⁵⁸⁾하고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분할 정산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 지원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IBRD으로부터 도입한 10억불(1조1,822억원)의 차관자금과 678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출자 지원을 하였다.

(26) 50개 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매입(1999.6.30)

■ 지원 배경

정부의 제2금융권 구조조정지원과 관련하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한솔상호신용금고외 49개 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매입계획”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6월 28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개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매입대상채권은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제13조(자산건전성의 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의 채권원금과 청구권 있는 가자금(원·외화 지급보증채권은 제외)으로 하였다. 단, 동일 채무자에게 고정이하 여신과 요주의이상 여신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액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동일 채무자에 대한

58) 2001년 3월 31일까지 정산 연기시 유동성 지원 효과는 7,204억원으로 추정

채권 중 일부만의 매입은 하지 않았다. 매입범위는 해당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원하는 채권 전액(5천만원 이하 소액채권 포함)으로 하여 50개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 1,873억원을 1,051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였다.

〈 표 2-33 〉

50개 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일반채권	담 보	1,263	965
	무 담 보	446	13
	소 계	1,709	978
특별채권	담 보	28	12
	무 담 보	136	61
	소 계	164	73
합 계	담 보	1,291	977
	무 담 보	582	74
	소 계	1,873	1,051

1) 계약액 기준

매입방법 및 기준은 1999년 2월 12일 조흥은행 부실채권 매입시 기준을 준용⁵⁹⁾하였다.

한편,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제9조⁶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및 동법 제39

59) 매입기준

- 일반채권 : 확정매입물로 사후정산없이 매입(계약체결 이후 채권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 특별채권 : 원금채권액의 45%를 적용하여 산정한 개산금으로 선지급한 후 인가조건이 결정되면 원리금 총액을 현가할인하여 정산(상호신용금고연합회나 제1금융권 발행 환매특약부 지급보증서 제출 조건)

60) 자산관리공사법 제9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납입시기 및 방법등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⁶¹⁾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납입을 면제하였다.

(27) 한미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6.30)

■ 자원배경

1998년 9월 30일 자산관리공사가 한미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중에 특별채권으로 매입한 채권중 일부가 일반채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미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일반채권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자원내역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1998년 9월 30일 한미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간에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일반채권의 매입율(원금채권액의 45%수준)을 적용하여 237억원의 부실채권을 83억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61)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연금의 산정방법과 출연시기 및 방법등 출연금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9조에 의하여 은행, 증권, 보증보험에서 총 5,734억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28) 제일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7.8)

■ 지원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7월 8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을 확정매입률로 사후정산없이 매입하였다.

■ 지원 내용

매입대상은 은행이 매각을 희망하는 부실채권 전액으로 하였다.

1999년 7월 8일 자산관리공사와 제일은행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시에는 4조3,624억원의 부실채권을 9,833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최종 실사를 실시한 후 1999년 7월 26일 총 4조5,379억원의 부실채권을 8,97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변경 체결하였다. 제일은행 부실채권의 구체적인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34 〉

제일은행 부실채권 매입내역¹⁾

(단위 : 억원, 백만\$)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²⁾
원 화 채 권	35,991	7,784
외 화 채 권	654 (7,753)	76 (897)
여 신 성 유 가 증 권	1,635	289
합 계	45,379	8,970

주 1) ()안의 숫자는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2) 계약액 기준

(29) 제임은행 출자(1999.7.9)

■지원 배경

정부는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제임은행에 대하여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자산·부채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8,769억원 초과하여 1999년 6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거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해외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은 당시 재무상태 하에서는 거래기업을 포함하고 객의 보호가 어렵고 경영정况화가 지연되면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적자금의 투입은 기존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각과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활한 매각협상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지원 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임은행의 추가부실 발생에 따른 출자금 적립액, 추가부실채권중 매각 예상분의 매각손상당액, 제임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10%를 탈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 등을 감안하여 출자해 줄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임은행에 대하여 총 4조2,086억원의 출자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 1월 제임은행에 대하여 출자한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각각 7,500억원을 5.51 : 1로 병합하여 각각 1,361억원으로 감지하고 조예주주 지분 1,000억원은 완전감자(62)한 후 출자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임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은 각각 1,361억원(3%), 4조3,446억원(97%)으로 조정되었다.

62) 조예주주 지분 1,000억원(주주 약 6만명 추정)은 주주의 손실통단 원칙에 따라 전부 소각하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원상 무산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매수가격 : 906원)

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8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태양생명보험의 인수생보사인 [한국생명보험(주)]과 예금보험

■지원 배경

(32) 한국생명 추가부실채권 매입(1999.7.31)

약4천5백만원이었다.

보험금지급규모는 예금자보호법상 증권회사에 대한 보호대상인 고객예탁금 3

■지원 내용

1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2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산전고를 받게 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7월 한국산업증권(주)가 지체해산 결의 후 1999년3월 1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파

■지원 배경

(31) 한국산업증권 보험금 지급(1999.7.12)

생명에 12억원, 한국생명에게 69억원, 제일생명에게 3억원이 지급되었다. 롯데금융선에 따른 추가출연규모는 총 106억원으로서 삼성생명에게 22억원, 교보

■지원 내용

1998년 8월 21일 4개 부실생보사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4개 인수생보사의 롯데금융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추가출연이 이루어졌다.

■지원 배경

(30) 4개 인수생명보험사 손실보전(1999.7.9)

공사가 인수요청한 추가부실채권(풋백옵션 행사대상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매입률로 사후정산없이 매입하였다.

■지원 내용

홍국생명(주)에서는 인수후 부실화된 자산중 10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을 희망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원금채권액의 45%,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의 3% 등 1998년 11월 6일 매입한 정리생보사 부실채권매입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3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

(33)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 [제2차 풋백옵션] (1999.7.31)

■지원 배경

1998년 6월 29일 계약이전 결정된 5개 정리은행의 자산에 대한 1999년 6월 말기준 제2차 추가출연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 7월 30일 이루어졌다.

■지원 내용

제2차 추가출연 지원분은 총 1,140억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에 302억원, 국민은행에 103억원, 주택은행에 593억원,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49억원, 93억원이 지원되었다. 동 자금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아름중금사가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회수자금에 해당) 1,14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다. 대우그룹 사태이후 구조조정시기(1999.9월 이후)

1998년의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었으나 199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대우그룹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시장은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대우그룹은 1998년말에는 총자산규모 77조원(금융부문 제외), 총 매출액 62조원에 국내외 29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재계 2위의 재벌그룹이었다. 그동안 무분별한 외형확장 경영전략에 치우쳐 재무구조 개선을 등한시했던 거대그룹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재무구조개선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열사 감축,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우그룹은 세계경영의 기치아래 1998년중 해외 현지법인 19개사, 국내 계열사 6개사를 늘리는 등 외형확장을 계속해 왔으며, 투자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증자나 잉여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입에 계속 의존하였고 자금차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밀어내기식 수출과 여기에서 창출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과거의 경영행태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경영으로 1998년중 대우그룹의 매출액은 61.7조원으로 1997년 매출액 49.4조원에 비해 25%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증가(97년 3조원 → 98년 6조원)등으로 당기순이익은 5,540억원의 적자로 반전하였다. 아울러 1998년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원에 달하여 1997년말 29조원에 비해 무려 53%가 증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대우그룹은 그룹전체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점차 힘들어만 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가 1999년 4월 13일 (주)대우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조정하자 당시 대우그룹의 투자와 자금조달, 무역의 첨병역할을 담당하던 (주)대우는 수출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신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우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9일 「구조조정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을 비롯한 기존의 핵심 흑자계열사를 매각하여 조기에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룹을 자동차 및 수출전문그룹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계획 발표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대우계열사 주가가 급등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금융권으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다시 냉담한 반

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9년 6월 30일에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빅딜이 무산되자 대우그룹 회사채, CP에 대하여 만기연장을 해주던 채권금융기관들은 더 이상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대우그룹의 자금부족 현상은 1999년 6~7월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우증권, 대우캐피탈, 대우다이너스클럽등 계열소속 금융사를 동원하여 초단기성인 call자금을 조달하여 그룹의 부도를 막았으나 7월에 들어서서는 동 계열금융사들도 그룹의 부족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우그룹은 계열사를 전문그룹으로 재편하고 정상화후 김우중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한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1999년 7월 19일 발표하게 되었으며, 동 구조조정 실행을 약속하는 대신 김우중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및 교보생명 주식 등 10조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여신에 대한 만기조정, 기 상환한 CP 및 회사채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4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1999년 7월 19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대우그룹이 발행한 CP등 단기여신 기일도래분에 대하여 6개월간 기한연장하고, 회사채는 차환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자금 4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장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금리상승, 주가하락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대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투신사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점차 증폭되어 가기 시작했다. 아울러 신규자금 4조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8월 들어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으며 협력업체의 진성어음마저 결제를 적기에 해 주지 못하면서 대우의 문제는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되어 갔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던 대우그룹은 더 이상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우그룹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상화되기가 어려워짐에 따

라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를 기업개선작업⁶³⁾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대우계열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은 부채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수도 많아 그동안 추진되던 여타 기업과 달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채권금융기관은 중간실사와 최종실사를 거쳐 1999년 12월중 12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자산·부채를 최종 확인하였는데 자산은 59.8조원, 부채는 89조원으로 자본잠식 규모는 무려 2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부가액에 비해 자산은 32.1조원 감소하고 부채는 11.2조원 증가한 것으로 장부가액에 대한 순자산가치 감소액은 43.3조원에 이르렀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10월 31일~12월 1일중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21일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2000년 3월 15일까지 기업개선약정 체결을 모두 완료하였다. 기업개선약정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대우계열 12개사의 금융채무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대우계열사를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⁶⁴⁾, 전환사채 인수, 상환유예등 부채구조조정과 신규

63) 기업개선작업은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인 금융기관들과 채무자인 기업간에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서 채무조건의 완화를 도모하는 사적인 화의의 한 형태를 말한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은행은 기업에 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채무면제,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CB)로의 전환, 신규자금지원, 보증채무 해소 등을 제공하게 되며, 기업측에서는 주로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 핵심사업의 정비, 영업전략의 전환,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중인 기업개선작업은 영국의 영란은행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London Approach방식으로서 영란은행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기업개선작업은 법정관리나 청산 등에 비해 채권금융기관에 높은 기대수익율을 보장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간에 실현가능성과 손실분담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7월 고티계열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적용을 시작으로 104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이중 40개사 조기종료, 합병 등으로 제외되었고 2000년 5월 조기종료방침이 결정된 32개사중 18개사의 절차가 2000년8월말까지 완료되면 잔여 기업은 46개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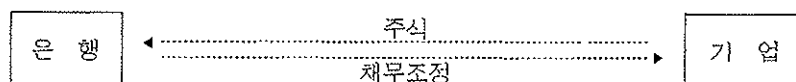
64)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기업의 대출채권을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일부 정리되고, 채무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아져 자본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간여없이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게 된다. 다만,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의 지위로 바뀌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의한 출자전환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중대하거나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35 〉 대우 기업개선작업 대상계열사별 실시결과

(단위 : 억원)

업 체 명	장 부 가 치			실 사 결 과		
	자 산	부 채	순자산	자 산	부 채	순자산
(주)대 우	292,030	265,909	26,121	166,599	340,183	-173,584
대 우 전 차	82,301	76,653	5,648	53,685	85,314	-31,629
대 우 중 공 업	137,941	106,614	31,327	120,283	110,093	10,190
대 우 자 동 차	206,463	155,602	50,861	118,349	179,109	-60,760
대 우 통 신	32,941	29,852	3,089	23,554	32,674	-9,120
쌍 용 자 동 차	33,477	29,769	3,708	28,087	30,978	-2,891
오 리 온 전 기	18,017	13,631	4,386	18,974	17,195	1,779
대 우 전 차 부 품	3,951	2,760	1,191	3,130	2,583	547
대 우 자 동 차 판 매	21,302	13,673	7,629	14,013	12,156	1,857
경 남 기 업	10,871	8,517	2,354	6,264	6,968	-704
대 우 캐 피 털	65,644	62,020	3,624	35,668	59,938	-24,270
다 이 너 스 클 럽	13,995	12,676	1,319	8,860	12,716	-3,856
합 계	918,933	777,676	141,257	597,466	889,907	-292,441



채무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우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총 8조6,165억원(출자전환 4조6,609억원, 전환사채발행 3조9,556억원)으로 대우자동차가 3조3,012억원, 대우중공업이 1조3,746억원 등이다. 한편 채권금융기관은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해 총 46조5,386억원의 채무상환을 계열사 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이중 45조3,782억원은 금리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1조 1,604억원은 정상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표 2-36 〉 대우계열사별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계획(2000.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업 체 명	출 자 전 환	전 환 사 채	계
(주)대 우	9,660	-	9,660
대 우 중 공 업	13,746	-	13,746
대 우 자 동 차	14,098	18,914	33,012
대 우 통 신	2,000	11,451	13,451
대 우 전 자	4,065	7,811	11,876
쌍 용 자 동 차	1,300	-	1,300
경 남 기 업	1,340	-	1,340
대 우 캐 피탈	400	1,380	1,780
합 계	46,609	39,556	86,165

*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4개사는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이 없음

이와 같은 채무조정은 대우계열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상의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정상화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의미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우계열사의 부실을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떠 안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우계열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결과로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이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⁶⁵⁾

(1) 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9.17)

■지원 배경

자산관리공사는 서울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선 경영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1999년 9월 15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999년 9월 17일 서울은행의 부실채권을 확정매입물로 사후정산없이 매입하였다.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9월 17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총 4조5,593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으로 1조1,543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은행 부실채권의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37 〉

서울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일 반 채 권	담 보 부 채 권	8,180	4,938
	무 담 보 채 권	16,247	842
특 별 채 권	담 보 부 채 권	7,529	4,255
	무 담 보 채 권	13,637	1,508
합 계		45,593	11,543

1) 계약액 기준

65) 대우그룹문제의 처리에 따라 금융권별 손실 및 공적자금의 투입관련사항은 pp. 292~294(대우그룹 문제의 처리)를 참조하고, 이에 따른 공적자금의 수급계획의 차질에 관련된 사항은 p. 313~314(공적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참조

(2) 서울은행 출자(1999.9.18)

■지원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서울은행에 대하여 199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 자산·부채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5,082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⁶⁶⁾하는 한편, 동법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1999년 9월 4일까지 동 은행의 이사회로 하여금 정부등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병합의 방법으로, 기타 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소각의 방법⁶⁷⁾으로 자본금감소를 결의토록 자본금감소 명령을 부과하였다.

■지원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요청에 의거하여 서울은행에 대한 지원필요규모를 산정한 결과 자산 초과 부채액 보전분과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에 필요한 금액으로 3조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1999년 9월 6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으나, 서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손의 증가로 1999년 9월 18일 이루어진 실제 출자지원액은 3조3,20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3) 조흥은행 출자(1999.9.29)

■지원 배경

1999년 1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합병을 추진중인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에 대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조건에 대한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승인하고 합병 승인 주총후에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출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다.

66) 제일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부실 발생에 따른 총당금 적립액, 부실채권중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을 적용에 따른 매각예상분의 매각손 상당액, 서울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7) 무상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매수가격 562원)을 부여하여 사실상 유상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하였다.

■지원 내용

1999년 9월 15일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이 합병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지원하였다.

(4) 대한생명 출자(1999.10.1)

■지원 배경

금융감독원이 대한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2조9,080억원 초과하였고, 특별검사 결과 대표이사 최순영등 임직원이 회사 자금의 횡령(1,868억원),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3조864억원)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9년 3월 24일 「보험업법」 제107조⁶⁸⁾에 의거하여 동사에 대하여 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을 선임하였다. 정부는 또한 대한생명보험회사의 자본충실화를 위하여 국내외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처럼 대한생명의 매각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향후 부실규모의 증가가 우려되는 등 회사가치 보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999년 8월 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의 지원을 요청⁶⁹⁾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주주의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대한생명보험회사의 기존주식 전부에 대해서는 무상소각을 결의토록 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요청을 받아들여 1999년 8월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출자결의를 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한생명보

68) 보험업법 제107조(관리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사업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69)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대한생명보험회사의 수권자본금 800억원중 납입자본금 30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의 증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대한생명보험회사가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1999년 6월말 기준 순자산부족액 : 2조6,753억원의 50%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 70) 대한생명의 관리인에게 동지한 처분은 대한생명 대표이사에게 동지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준여한 것은 서면통지하고 상당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사회에 대한 자료는 감소명령은 회사에 대한 명령을 하는 등 독자적 문제를 치유하였다.
- 71) 탈환조건
- 금리: 변동금리, 이자지급방법: 탈환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후금(국민주택1종채권의 평균유동수익률 기준), 채권종류: 정부보증부 무기명식 채권, 탈환형식: 증권에타원 등록탈환(액면탈환), 만기: 탈환일로부터 7년, 상환방법: 탈환일로부터 5년경과후 6개월 단위로 2년간 균등분할상환

가 요청한 출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출자하기로 하였다.

수권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경영진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감독위원회(채권71)를 탈환하여 우선 출자지원하고 추후 대한생명보험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 300여원의 자본금을 제외한 500억원(출자가가능한 최대금액)을 예금보험기금 위원회의 출자요청에 따라 대한생명보험회사의 수권자본금 800억원에서 이미 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

■ 지원 내용

한 500여원의 우선출자를 요청하였다.

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생명의 수권자본금 800억원중 납입자본금 300여원을 제외 보험공사에 대하여 대한생명에 순자산 부족금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원 원 대한생명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예금 31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제기된 절차적 불결을 보정70하여 1999년 9월 14 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결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 8월 적한 것으로서 행정처분 자체의 내용에 불결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었다. 따 자명령, 이사회에 대한 감자명령, 임원적부집행정지 처분 등의 절차적 불결을 지 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에 대하여 행한 간 년 8월 31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은 행정처분이 거처야 할 절차와 형식을 제 의 감자 등 손실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되었다. 한편, 1998 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지원은 대한생명 회의 대표이사 최순영등이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 참고 〉 대한생명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에 대하여 '99. 2.11부터 3.13까지 자산·부채 평가 및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 11조 5,323억원, 부채 14조 4,403억원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조 9,08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부실대출금의 손실예상액(2조707억원), 유가증권 평가손(7,876억원), 부동산 평가차액(1,640억원) 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특별검사결과 적출사항을 보면 우선 최순영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부당 대출 취급이 나타나는데 1988. 1월 ~ 1998. 5월중 대한생명의 자금 1,878억원을 메모,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으로 임의 인출하고 10억원만을 상환함으로써 1,868억원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순영 회장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98. 6월 상기금액을 (주)공영사등 9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전환 처리하였으며, 그후 동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위하여 219억원을 계열사에 추가 대출하였다.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최근 3년('96~'98년)간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고, 영업상태가 불량하여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 및 관계사 17개사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나 채권보전대책의 강구없이 3조 86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중 2조 289억원을 계열사 증자자금 및 崔淳永이 개인연대보증한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98. 2월~'98. 12월 기간중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를 월별로 최저 210억원, 최고 2,811억원 초과하였으며, '90. 1월~'98.12월 기간중 신동아건설(주) 등 5개 관련사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월별로 최저 259억원, 최고 8,216억원 초과하였으며,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에 당일 자금화 되지 않는 당좌수표를 입금한 후,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익월초 재대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월말보고서에는 대출한도 초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다. 외화 유가증권의 불법 투자와 관련해서는 '97. 8월 Cayman 군도에 1억달러의 역외펀드(G.M. Fund)를 설립한 후, 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 실체미상의 SDA Calarasi Ltd.등의 명의로 발행된 무담보 약속어음을 취득하고 8천만달러를 대여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현재 동 투자금액 전액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5) 강원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10.8)

■지원 배경

정부의 강원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조흥은행과의 합병방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10월 8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원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흥은행(구 강원은행)의 부실채권 1,790억원을 726억원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 표 2-38 〉

강원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¹⁾
일 반 채 권	담 보 부 채 권	128	96
	무 담 보 채 권	280	8
특 별 채 권	담 보 부 채 권	0	0
	무 담 보 채 권	1,382	622
합 계		1,790	726

1) 계약액 기준

(6) 5개 인수은행 2차 추가부실채권 매입(1999.10.21)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10월 21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개 인수은행의 2차 추가부실채권 1,807억원을 465억원에 매입하였다. 은행별 매입부실채권액은 주택은행 806억원, 국민은행 236억원, 신한은행 154억원, 한미은행 464억원, 하나은행 147억원이다. 5개 인수은행 2차 추가부실채권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39 〉 5개 인수은행 2차 추가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은 행	채 권 액	매 입 액 ¹⁾
주 택 은 행	806	194
국 민 은 행	236	47
신 한 은 행	154	47
한 미 은 행	464	131
하 나 은 행	147	46
합 계	1,807	465

1) 계약액 기준

(7) 6개 지방은행 부실채권 매입(1999.10.26)

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라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되는 6개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부실채권을 1999년 10월 26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입하였다.

매입현황을 보면, 총 4,805억원의 부실채권을 2,238억원에 매입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40〉과 같으며, 매입기준은 강원은행('99.10.8) 부실채권의 매입시 기준을 준용하였다.

〈 표 2-40 〉 6개 지방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은 행	채 권 액	매 입 액 ¹⁾
제 주 은 행	18	4
전 북 은 행	693	351
부 산 은 행	2,026	933
대 구 은 행	779	276
광 주 은 행	197	131
경 남 은 행	1,092	543
합 계	4,805	2,238

1) 계약액 기준

(8)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 [제3차 풋백옵션] (1999.11.1)

■지원 배경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6월 29일 동화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신한은행 등 5개 인수은행에 대해 1년간의 인수자산에 대한 추가부실 손실보전 (Put-back Option)을 종료하고 1999년 11월 1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출연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

최종 출연지원 규모는 1조755억원이었으며, 이를 포함할 때 총 4차례에 걸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규모는 9조2,247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당초 약 11조원으로 추정하였던 예상규모보다는 줄어든 것이었다.

〈 표 2-41 〉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총 출연지원 규모

(단위 : 억원)

	출연일자	국 민 (대 동)	신 한 (동 화)	주 택 (동 남)	하 나 (충 청)	한 미 (경 기)	계
인수시 부채대비 자산부족분 출연	'98.9.30	10,651	15,376	6,812	7,739	17,212	57,790
Put-back 및 지급이연분	계	7,163	7,323	10,819	3,129	6,023	34,457
1차	'99.5.12	5,908	4,974	6,640	2,352	2,688	22,562
2차	'99.7.31	103	302	593	93	49	1,140
3차	'99.11.1	1,152	2,047	3,586	684	3,286	10,755
합 계		17,814	22,699	17,631	10,868	23,235	92,247

※ ()는 피인수은행

이처럼 당초 추정치보다 출연규모가 감소된 것은 크게 3가지 요인에 기인하였다.

첫째, 당시 회계법인 실사결과대로 8.8조원을 즉시 인수은행에 출연하지 않고 5.7조원만을 투입하고 협조융자여신 및 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실금액 등 3.1조원은 1년간 지급이연 시켰는데 이후 경제여건 호전 및 유가증권의 가치의 상승으로 지급이연금액 3.1조원이 2.6조원으로 줄어들어 약 5,000억원의 공적자금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당시 급박하게 진행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대해 분류 잘못 및 과소평가한 부문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밀 사후확인을 실시한 결과 약 5,093억원의 오류가 발견되어 회수조치 하였으며, 동 금액만큼의 공적자금이 절감되었다.

셋째, 인수은행들도 당초 집계한 금액에서 약 2,000억원 정도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Put-back 청구금액이 인수자산 대비 6.0%로 감소하였다.

1999년 11월 2일에 최종 출연으로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추가 손실보전(Put-back Option)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재금액 약 3,530억원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익증권 970억원 등 총 4,500억원은 지급보류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동 금액은 지급보류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9) 5개 인수은행 자산매입(1999.11.1)

국민은행 등 5개 인수은행이 5개 퇴출은행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자산중 인수를 거부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1,588억원을 지급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 표 2-42 〉

은행별 매입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국 민	신 한	주 택	하 나	한 미	계
매입금액	179	591	538	54	226	1,588

(10) 6개 부실생보사 출자(1999.11.5/11.10)

■ 지원 배경

1998년 8월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1998년 9월 30일 4개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이전 결정을 통해서 퇴출되고 기타 14개 생명보험회사중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등 7개사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고 동아, 태평양, 한덕, 국민, 조선, 두원, 한국생명 등 7개사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7개 조건부 승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행실적이 저조하고 지급여력 비율이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7개 생명보험회사중 국민생명보험, 태평양생명보험, 두원생명보험에 대해 1999년 10월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999년 11월 3일 조선생명, 동아생명보험, 한덕생명보험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지원을 요청하였다.

■ 지원 내용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6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업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300억원을 출자하고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 9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액을 제외한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명령을 동시에 부과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생명, 국민생명, 두원생명⁷²⁾에 대해서는 1999년 11월 5일 각각 3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⁷³⁾하여 출자를 지원하였고 조선생명, 동아생명, 한덕생명에 대해서는 1999년 11월 10일 각각 300억원의 출자를 지원하였다.

72) 두원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대한생명보험으로 계약이전의 결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대한생명보험에 30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73) 발행조건

- 발행금리: 변동금리부, 채권종류: 정부보증부 무기명식 채권,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3개우려단위로 후급(국민주택1종채권의 평균유통수익을 기준), 만기: 발행일로부터 7년, 상환방법: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후 6개월단위로 균등분할상환

(11) 대한생명 출자(1999.11.25)

■ 지원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9월 14일 대한생명보험을 부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500억원의 우선출자를 요청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999년 10월 1일 500억원을 출자지원하였다.

한편, 1999년 9월 14일 출자요청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손자산부족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출자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적정금액의 산출을 위해서 전문회계법인에서 1999년 10월 6일부터 1999년 11월 12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경영진단결과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한도를 고려하여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소지원금액을 2조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설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에 출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결과 대한생명의 손자산부족액은 2조6,753억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회계법인의 경영진단결과 대우그룹문제 및 계열사 대출로 인해 약 6,800억원의 추가부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총 손자산부족액은 약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대한생명보험의 향후 경영진단결과, 누적결손의 해소시점, 상각가능시점, 지급여력비율 100%달성시점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자산부족액의 61%수준인 2조원의 출자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약정서를 체결하고 2조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대한생명보험에 출자지원하였다.

(12) 기업은행 및 4개 시중은행 외화채권 매입 (1999.12.20)

■지원 배경

금융기관의 외화자산의 건전성제고 등을 위해 기업은행 및 4개 시중은행의 외화표시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매입요청이 이루어졌고,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1999년 12월 20일 「자산관리공사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 은행들에 대한 부실채권을 확정매입물로 사후정산 없이 매입하였다.

■지원 내용

199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고정이하 외화표시 대출원금과 청구권 있는 가 지급금 및 외화 여신성 유가증권으로서 비거주자, 해외점포취급 외화표시 대출채권 및 외화 여신성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1차로 일괄 매입원칙에 따라 채무자별 외화표시채권만을 매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채권을 포함한 채무자의 총 채권을 매입대상(단, 원·외화 지급보증채권은 제외)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12월 20일 5개 은행으로부터 총 1,149억원의 외화채권을 매입하고 358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43 〉 5개 특수·시중은행 부실채권 매입현황

(단위 : 억원)

은 행	채 권 액	매 입 액 ¹⁾
한빛은행	376	18
하나은행	122	122
외환은행	81	2
주택은행	77	1
기업은행	493	215
합 계	1,149	358

1) 계약액 기준

(13)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 [풋백옵션 지급보류분] (1999.12.24)

■ 지원 배경

1999년 11월 2일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최종 출연 지원 당시에 일부 이전이 있어 지급보류 되었던 4,500억원의 미지급액 중 일부에 대한 지원이 예금보험공사와 5개 인수은행간에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 지원 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999년 12월 24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보류액 4,500억원 중 3,822억원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출연지원하게 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에 371억원, 신한은행에 1,903억원, 주택은행에 189억원, 한미은행에 1,088억원, 하나은행에 271억원을 출연지원하게 되었다.

(14) 정리금융공사 출자(1999.12.24)

■ 지원 배경

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 Newbridge에 제일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Newbridge가 인수를 거부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인수의무자(put obligor)를 정하기로 하고 동 인수의무자로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를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제일은행외에 동아생명 등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자산도 함께 매입⁷⁴⁾하게 되었다. 정리금융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의 근거조항인 「예금

7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인수금융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자산, 즉, 부실채권 등 대출자산, 유가증권, 자회사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장부가 또는 평가금액에 인수하게 된다.

- 2000년6월말 현재 자산매입금액: 3조6,178억원
 · 제일은행 분리자산 및 put자산 매입: 3조2,002억원
 · 5개 인수은행 미인수자산 매입: 1,588억원
 · 동아생명, 국민생명, 태평양생명 분리자산 매입: 2,588억원

자보호법」 제36조의3⁷⁵⁾에 근거하여 1999년 1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조직형태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예금보험공사의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등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⁷⁶⁾만 두기로 하였다.

■지원 내용

정리금융공사의 설립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수준인 1억원의 출자가 1999년 12월 24일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4항⁷⁷⁾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15) 대한·한국투신 및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1999.12.28)

■지원 배경

1999년 9월 대우그룹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CP등을 보유하고 있던 투신사의 경우에는 손실부담의 확대로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과거 누적부실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던 대한투신, 한국투신의 경우에는 외부자금의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수익률의 하락으로 고객의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 투자신탁회사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양 투자신탁회사의 부담을 정확하게 실사하여 부실문제를 처리해 나가되 우선 시장의 안정과 고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금

7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①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76) 인력구성

- 임원: 사장(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부 부장 겸임), 이사 2인(자산관리부 팀장 겸임), 감사(예금보험공사 감사실 팀장 겸임)
- 직원(총22명): 16명(예금보험공사 직원 파견), 6명(부동산관리를 위한 법정의무채용인력인 전기·설비 기사등)

77)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④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출자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우선 출자 지원⁷⁸⁾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지원내용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출자필요규모는 총 3조원으로 결정하고 한국투자신탁에 2조원, 대한투자신탁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재원조달은 정부 현물출자를 통해 9천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현물출자를 통해 각각 1조3천억원과 6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손실분담차원에서 기존주주도 2천억원정도를 출자하기로 하였다.

〈 표 2-44 〉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증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한국투신	대한투신	계
정부	0.6	0.3	0.9
산업은행	1.3	-	1.3
기업은행	-	0.6	0.6
기존주주	0.1	0.1	0.2
계	2.0	1.0	3.0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12월 21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에 6천억원, 대한투자신탁에 3천억원 및 한국산업은행에 6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정부보유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이중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6천억원은 산업은행의 한국투신출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주식과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증권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해 준 것이다.

78)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와 제7조를 개정하여 출자대상 기업체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포함하는 한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 표 2-45 〉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단위 : 억원)

출자대상기관	출자재산	출자가액 (시가기준)	액면가액 (액면기준)	출자주식수 (천주)	지분율 (%)
한국투자신탁	중소기업 은행주식	6,000	3,712	74,239	19.3
대한투자신탁	한국담배인삼 공사주식	3,000	509	10,177	5.3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주식	4,000	2,474	49,492	12.9
	한국수출입 은행출자증권	2,000	1,536	-	6.2
	계	6,000	4,010	49,492	-
계		15,000	8,231	133,908	-

(16) 5개 부실생보사에 대한 출자(1999.12.29)

■ 지원배경

조선생명보험, 동아생명보험, 국민생명보험, 태평양생명보험, 한덕생명보험 등 5개 부실생명보험회사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보험사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는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했다. 아직 5개 부실생보사에 대한 자산, 부채에 대한 최종실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만료시한이 1999년말로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순자산부족예상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원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하였다.

■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자를 지원하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잔액규모를 고려하여 각 회사별 지원예상액의 80%수준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각 회사별 구체적인 출자지원규모는 〈표 2-47〉과 같다.

〈 표 2-46 〉

5개 부실생보사의 정리일정

구 분	조선생명	동아생명	국민생명	태평양생명	한덕생명
인수회사	현대그룹	금호그룹	SK그룹	동양그룹	SK그룹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1999.11.3	1999.11.3	1999.10.29	1999.10.29	1999.11.3
MOU체결 (계약이전결정일)	1999.10.30	1999.11.29	2000.2.29	1999.12.9	2000.4.17
본계약체결	2000.1.12	2000.2.18	2000.3.29	2000.3.29	2000.5.10

〈 표 2-47 〉

회사별 출자지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액	회 사 명	출자금액
동아생명	9,914	한덕생명	2,027
국민생명	2,562	조선생명	693
태평양생명	1,451	계	16,647

(17) 대한생명에 대한 출연(1999.12.29)

■ 지원배경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9년 12월 2일 두원생명보험에 대하여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생보사인 두원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되는 대한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두원생명보험의 순자산부족액 전액을 지원해야 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의 잔액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만료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순자산부족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선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내용

예금보험기금에서는 1999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채권 2,368억원을 발행하여 대한 생명에 출연형태로 지급하였다.

(18) 제일은행 자산매입(1999.12.29)

■ 지원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 미국 Newbridge와 제일은행의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999년 9월 17일에 투자약정서(TOI)를 체결하였다. 이후 동 투자약정서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와 Newbridge간에 본계약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협상이 완료되어 1999년 12월 23일 Newbridge와 본계약서⁷⁹⁾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일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79) 계약서 주요 내용

① 계약서 구성

- Acquisition Agreement : Closing까지 지분매각에 관한 사항
- Assistance Agreement : Closing이후 공사의 지원관련 사항
- Shareholders' Agreement : 의결권행사 및 주식처분 사항

② Acquisition Agreement 주요내용

- Newbridge 미인수 자산의 분리후 제일은행 자산·부채의 일치
 - ※ 미인수 자산 : 분리대상 자회사·해외지점, 주식, 부실여신(NPL), 폐쇄종금사관련 자산, 영업상 불필요한 자산(Marginal Asset) 등
- 자본금을 제일은행 지분 50.99%를 5,000억원 (Newbridge투자금액)으로 하는 수준(9,805.84억원)으로 감자
 - ※ 자기자본비율 3% 또는 BIS비율 10%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금이 될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감자
- 예금보험공사 지분에서 제일은행 전체지분의 50.99%를 Newbridge의 Holding Company앞 매각(매각대금 5,000억원)
- 공사는 Financial Closing시점의 제일은행 전체 주식수의 5%를 매입할 수 있는 Warrant 보유
-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확약(Covenants) 및 보상조항(Indemnification)
 - ※ 보상기간 : 4년

③ Assistance Agreement 주요내용

- 제일은행 잔류여신(Remaining Loan)에 대하여 초기충당금 3.5% 지급
- 제일은행 잔류여신(Remaining Loan)에 대하여 공사의 정리금융공사앞 이전권리 인정
 - ※ 이전사유 : 지급불능, 부도, 파산, 법정관리
 - ※ 보장기간 : 일반여신과 사적화여신 2년, Workout 및 금융기관여신 3년
- 잔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Reserve) 지원
 - ※ 공사 Payment, Call, 중재(Adjudication)중 선택권 보유
 - ※ 설정일자 : 2000. 6. 30, Closing후 2년시점, Closing후 3년시점
 - ※ 보장기간 : 일반여신과 사적화여신 2년, Workout 및 금융기관여신 3년, 보증은 Closing후 3년 시점에서만 설정
- 잔류여신의 이전 및 대손충당금(Reserve)에 대한 중재(Adjudicator)

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제일은행의 본 매각에 있어서는 Newbridge가 인수하기 거부하는 분리자산의 매입대금으로 3조5,276억원⁸⁰⁾이 소요되고, 구조조정 특별충당금으로 380억원의 출연이 필요하였다. 다만, 실제 자금소요는 3조5,656억원에서 Newbridge로부터 받은 주식매각대금 5천억원과 적정자본금(9,805.84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유상감자한 대금 1조4,182억원을 차감한 1조6,4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조6,474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본

-
- * 한국신용평가사를 중재자로 선정, 은행과 함께 중재계약 체결
 - 보증 및 약정에 대한 보호
 - 대우 Workout, 여타 Closing시 진행중인 Workout 및 사적화의 여신에 대한 보장
 - 고정금리채(Fixed Income Securities)에 대한 원금 및 수익률 보장
 - * 보장기간 : 만기 또는 매각시까지
 - * 보장수익율 : 제일은행 평균조달금리 + 100bp
 - * 보장수익율을 초과한 실현수익율은 공사 수취
 - 자금지원의 누적개념 50%이상 정부채*로 지급
 - *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별도 조건을 정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 * 필요시 시중은행을 결제은행, 증권예탁원을 예탁자로 선정하여 정부채와 관련한 Special Settlement Agreement, Paying and Fiscal Agency Agreement, Recording and Deposit Agreement 체결
- ④ Shareholders' Agreement 주요내용
- 공사가 의결권을 위임하여 Newbridge측이 의결권 단독 행사
 - * 공사는 제일은행 자산 전부의 처분, 제일은행에 의한 파산 및 해산신청, 감자, 신주발행, 100억 원을 초과하는 관계사와 특별조건 거래, 관계사와 합병, 이사·감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공사측이 선임 또는 동의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 보유
 - 이사 및 감사 임명권 Newbridge측 보유
 - * 공사는 사외이사중 3명 임명 및 감사위원 1명 선임권
 - 주식처분의 제한 : 1년 전면금지, 2년차 상대방 승인
 - 공사주식 처분시 Newbridge에 우선매수권 부여
 - Newbridge 보유지분의 30%이상 매각시 공사지분도 동일조건으로 동일비율 매각의무 (Drag Along)
 - Newbridge 보유지분 30%미만 매각시 공사지분도 동일조건으로 동일비율 매각권리 (Tag Along)
 - Newbridge 보유지분 상장시 공사지분도 같이 상장 권리 (piggyback 등록권리)
 - Financial Closing시 주식총수의 5%범위내 Management 스톡옵션 인정
 - 계약종료 사유 : Newbridge 보유지분 15%이하 또는 Closing후 10년 경과시점
- 80) 초기 분리자산 매입대금 : 3조 5,276억원
- 부실여신 (NPL) 3,208억원
 - * Workout, 사적화외가 진행중인 업체 및 대우여신에 대하여는 Protection을 제공하고 2000. 6. 30까지 제일은행에 잔류
 - 뉴욕지점 자산 3,080억원
 - 주식, CB, 주식형 수익증권 2조 4,209억원
 - 한아름종금 예금 및 발행어음 2,581억원
 - Marginal Assets 2,197억원
 - * 2000년 8월 18일 매입한 제일은행의 분리자산규모가 3조 1,19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차액 4,079억원을 정산하였음

매각에 따른 소요자금을 충당하였다.

한편,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각기준일 후에도 자금지원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매각기준일 후 주요 자금소요내역을 살펴보면 매각기준일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따른 자금지원⁸¹⁾, 매각기준일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부채등 정산에 따른 자금지원(매각기준일부터 18개월간), 부도여신 매입에 따른 자금지원⁸²⁾, 건전성 하락에 따른 설정 충당금 지원⁸³⁾, 외화약정 및 원화시설자금 인출시 초기충당금 3.5% 지원(수시발생), 채권수익을 보장에 따른 지원⁸⁴⁾, 대우·기업개선작업 및 사적화의여신 보장에 따른 지원⁸⁵⁾, 진술과 보장, 확약 등 위배사항의 보상(수시발생)등의 소요가 예상된다.

이처럼 매각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지원 또는 채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타의 소액지원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결정으로 지원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19) 지방은행 후순위채 매입(1999.12.30)

■ 지원 배경

1999년 하반기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workout)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은행들이 손실을 입었고, 특히 1999년말부터 채무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시행되어 은행들이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할 경우 지방은행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81) '99. 9. 30자 B/S기준으로 분리자산을 매입하고 Closing이후 Closing일자 기준 B/S의 실제 분리자산 내역과 차이 정산

82) 이전사유 발생, 보증 대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지원 (수시발생)

83) Call 또는 Payment 공사선택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이(설정일자)

84) 채권매각 또는 만기시 실현수익율과 보장수익율 차이보전 (매분기)

85) 출자전환 : 공사인수, CB전환 : 수익률보장 또는 공사 Call(수시발생),
이자감면여신 : 2000. 6. 30까지 수익률 보장 (2000. 6. 30)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공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고자 1999년 12월 30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개 지방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되었다.

■ 지원 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의결시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공채 4,800억원과 평화, 전북, 경남, 제주, 부산, 광주은행이 발행하는 동일 액면금액의 후순위채권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2000년 4/4분기에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에는 제주은행분을 제외한 총 4,500억원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매입 지원이 이루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광주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에 각각 1,000억원, 전북은행에 500억원의 후순위채 매입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각 은행별로 BIS자기자본비율이 0.5%~1.5%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의 금리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대가로 제공되는 공채의 표면금리에 일정율을 가산⁸⁶⁾하였고, 후순위채권의 만기⁸⁷⁾가 도래한 때에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대가로 제공한 공채를 반환받아 상환하게 된다.

한편,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하위후순위채(Lower Tier2)⁸⁸⁾에 의한 자기자본 인정한도에 여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위후순위채(Upper Tier2)의 매입이 이

86) 은행신용도에 따라 1~2%p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였고,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최초 5년간은 2%p, 5년후부터는 3%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87) 평화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5년3개월로 하고,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10년3개월로 하였다.

88) 하위후순위채권과 상위 후순위채권의 비교

구분	하위(Lower Tier2)	상위(Upper Tier2)
-만기	5년 만기	10년이상
-손실가능성	파산시를 제외하고는 원리금 지급 보장	· 무배당시: 이자지급 유예 · BIS비율 8%미만: 이자지급유예 또는 주식전환
-자기자본인정	기본자본의 50%까지 인정	기본자본의 100%까지

루어졌으며, 광주은행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에서 광주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지급과 상환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졌다.

(20) 조선생명에 대한 출자(2000.1.13)

■지원 배경

1999년 10월 30일 현대그룹과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조선생명보험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조선생명보험의 순자산부족분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담규모에 대한 출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지원 내용

조선생명보험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순자산부족분 2,332억원중 예금보험공사 부담분(50%)인 1,166억원에서 이미 출자가 이루어진 993억원을 차감한 173억원이 현금(회수재원)으로 출자지원되었다.

(21) 5개 인수은행 손실보전 [풋백옵션정산] (2000.1.20)

정부는 1998년 6월 5개 퇴출은행을 5개 우량은행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하면서 5개 퇴출은행의 순자산부족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5개 퇴출은행의 초기 결손보전과 추가부실보전(Put back)을 위해 5개 인수은행에 대하여 그동안 9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5개 인수은행과의 인수계약에 따른 자금지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1월 20일 기 출연한 금액에 대한 단수금액 및 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의 차이로 인한 경과이자 등과의 차이금액 2,699백만원을 정산 지급하게 되었다.

〈 표 2-48 〉

은행별 출연규모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은행명	3차 단수 미정산액 ¹⁾	경과이자 ²⁾	단수금액 ³⁾	기타 미정산금액 ⁴⁾	경과이자 ⁵⁾	계
국 민		91	△24			67
신 한		464	△29			435
주 택	△7	46	△37			2
하 나		67				67
한 미	9	290	40	1,726	63	2,128
합 계	2	958	△50	1,726	63	2,699

1) '99. 1. 11 자금지원시 단수금액 중 '99. 12. 24일 추가 자금지원시 미정산분

2) '99. 12. 24 출연한 원금에 대하여 9일간 9.92%로 계산한 경과이자('99. 12. 16~12. 24)

3) '99. 12. 24 자금지원시 단수 차액

4) 협조융자 대출금 실현손익관련 정산 오류분 1,433백만원, 파산재단으로 이전한 자산관련 정산분 중 오류금액 173백만원, 성업공사 매각대금 평가차액 정산대금 중 오류금액 120백만원('99. 12. 24 지급대상')

5) 주5)의 금액에 대한 경과이자('99. 11. 2~2000. 1. 20)

(22) 23개 투신사의 대우관련 부실채권 매입(2000.1.29)

■지원 배경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1999년 8월 12일 투신사등의 수익증권환매대책에서 발표한 투신사 고객에 대한 환매보장방침에 따라 원리금의 95%를 보장하는 제3차 환매보장이 2000년 2월 8일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환매요구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투자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관련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23개 투자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계열 12개사 관련 무보증채권(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1월 28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관련 부실 채권 18조5천억원규모를 6조4,074억원의 현금(회수재원)을 사용하여 사후정산부 조건으로 매입하였다.

각 채무기업별 채권 매입율은 정부가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과정에서 결정된 채무조정비율을 근간으로 한 개산지급율⁸⁹⁾로 하였다. 개산지급율로 매입함에 따라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약정(MOU)이 체결된 후 자산관리공사와 투자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산조건에 합의하게 된다.⁹⁰⁾

(23) 제일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2000.1.31)

1999년 9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Newbridge간에 체결된 제일은행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정부(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으로 제일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신주를 향후 액면가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일은행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를 911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인수자금은 동일금액의 예금보험기금채권(만기 2004.3.28, 이자율 1%)을 지급하였다.

89) 개산매입율 내역

채무기업별	개산매입율	비고
(주)대우	18%	주요4사: 1999. 12. 7 대우자문기관이 해외채권단에 1차로 제시한 4개 계열사 본사에 대한 채권회수율 적용
대우자동차(주)	33%	
대우중공업(주)	65%	
대우전자(주)	34%	
대우캐피탈(주)	40%	
대우통신(주)	70%	기타8사: 1999. 11. 4일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 발표시 각사별 회수율(1-채무조정비율) 적용
(주)다이너스클럽코리아	30%	
(주)대우자동차 판매	100%	
오리온전기(주)	100%	
대우전자부품(주)	100%	
쌍용자동차(주)	30%	
경남기업(주)	70%	

90) 자산관리공사는 2000. 7. 18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투자신탁 등 23개 투자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한 대우계열 무담보채권 18조5천억원에 대한 매입율을 당초 지급한 매입율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계열사중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주) 대우 등 12개 회사의 총 협약대상채권 62조6천억원중 29.44%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최대채권자가 되었다.

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당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채권발행후 3년부터 7년 이내(Newbridge가 소유지분의 75%이상 매각시, 또는 Newbridge의 소유지분이 총지분의 15%이하가 되는데는 의무적으로 행사하여야 함)로 정해졌으며, 주당 신주인수가격은 행사시점까지의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5,000원 \times (1+9.25\%)^n$ (n=행사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결정되었다.

(24)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출연

(2000.2.17/3.15/3.17/4.15/5.15/6.15/7.15/8.16/8.28)

1999년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의 Newbridge사와 제일은행 매각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제일은행이 인수한 자산과 관련된 총당금 및 손실보전,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2000년 2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8차례 222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제일은행에 대한 이러한 풋백지원을 향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다.

〈 표 2-49 〉

제일은행에 대한 출연 내역

(단위 : 억원)

일 자	2.17	3.15	3.17	4.15	5.15	6.15	7.15	8.16	8.28	계
지원금액	7	23	17	2	2	19	22	1	128	221

(25) 동아생명에 대한 출자 및 자산매입(2000.2.22 / 2.23)

■지원 배경

1999년 11월 29일 금호그룹과 금융감독위원회간에 동아생명보험 인수에 관한 MOU가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199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실사를 통해 순자산부족분이 확정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

보험공사의 부담분에 대하여 출자를 실시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호그룹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다.

■지원 내용

동아생명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순자산부족분 1조1,477억원중 동아생명의 영업권 가치 555억원과 기출자분 1조214억원을 차감한 708억원을 현금(회수재원 활용)으로 출자하고 부동산 및 그 관련재산과 대출채권 일부를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2,711억원(회수재원 활용)에 매입하였다.

(26)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지원(2000.2.25)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융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1,000억원 현금출자를 2000년 2월 25일 실시하였다.

(27) 대한생명 출연(2000.3.9)

■지원배경

두원생명을 대한생명보험으로 계약이전한 후 실사를 통해 순자산부족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지원내용

1999년 12월 2일 기준으로 두원생명보험의 순자산부족액을 실사한 결과 부족액규모는 2,96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기지원금액 2,368억원과 두원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에 대한 가치평가액 42억원을 차감한 587억원이 현금(회수분 활용)으로 출연지원되었다.

(28) 서울보증보험 출자(2000.3.14 / 8.14)

■지원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6월 3일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1조2,500억원의 출자를 요청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의 인수대금의 정산을 연기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1999년 6월 25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1조2,500억원을 출자하고, 기존주식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소각하고 주주 보험사등 주요 피보험자가 출자(819억원)하거나 후순위대출(3,291억원)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4,4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금지원방안을 결의한 이후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삼성자동차 2조1천억원, 대우그룹 8조9천억원⁹¹⁾에 달하는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추가적인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대우회사채에 대한 대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2000년 2월 25일 대우회사채 대지급 소요금액에 해당하는 출자(약 6조원)를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요청하였다. 다만, 출자시기와 방법은 대지급 시기 및 금액, 서울보증보험의 가용유동자산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요청에 따라 향후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상태를 감안하여 출자 필요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기로 하고, 「예금자보호법」

91) 약 8조9천억원에 달하는 대우회사채 원리금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예상소요액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억원)

구분(보증금액)	기 대지급	2000년도					2001년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 (88,509)	190	12,208	3,540	4,791	13,601	34,140	26,604	60,934

였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인수자산에 대한 매입을 실시하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담분에 대하여 물자를 실시하는
산·부채실사를 통해 순자산부족분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한 양해각사(MOU)가 체결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9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
1999년 12월 9일 중앙그물과 금융감독위원회에 태평양생명보험 인수에 관

■ 지원배경

(30) 태평양생명 출자 및 자산매입(2000.3.31/5.12)

매입비용 준용하였다.

이 매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매입가격은 1999년 9월 서훈은행 부실채권 매입시
금(회수제한 활용)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 매입기준은 확정매입비용으로 시후정산없
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간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채권 990억원을 370억원의 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5개 인수는행이 보유하고 있는 협조용자 계열여신중 예

■ 지원내용

리공사간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다.
으로부터 인수는행으로 이전된 협조용자 계열여신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거하여 5개 정리는행

■ 지원배경

(29) 5개 인수는행 부실채권 매입(2000.3.18)

8월 11일 7천억원을 출자지원하였다.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3월 14일 서훈보증보험에 7천억원을 출자지원하고,

■지원내용

태평양생명보험에 대한 실사 결과 순자산부족분 3,127억원중 태평양생명의 영업권가치 530억원과 기출자분 1,751억원을 차감한 846억원을 현금(회수자금 활용)으로 출자하고 부동산 및 그 관련재산을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289억원(회수자금)에 매입하였다.

(31) 나라종금 예금대지급(2000.5.8)

■지원배경

1999년 9월이후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라 일부 종금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 및 자금 회수등의 어려움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예금 인출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1월 22일부터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던 나라종금의 경우에는 2000년 5월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자산·부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제3자 인수 등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영업인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나라종금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2000년 5월 8일부터 실시하였다.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나라종금에 대한 예금을 대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인수했던 고금리(15%)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재발행차금(1조4,570억원)중 8,760억원을 한아름 종금에 대출지원하고 한아름종금으로 하여금 예금대지급을 하도록 하였다.⁹²⁾

92) 한아름종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8,760억원 이외에도 자체자금 3,876억원을 활용하여 총 1조2,636억원의 예금을 대지급하였다.

표하기로 하였다.

자를 추진기로 하였으며 공적자금 투입은 6월부터 개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
 련하여 양 투자신탁회사는 2000년 6월까지 증권사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분리
 사 자체 회수자금,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
 외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원조달은 예금보험공
 신탁의 조기정상화가 긴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양 투자신탁회사에 약 5조원 내
 를 논의하였다. 동 논의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
 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하여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조기 경영정상화방안
 정부는 2000년 5월 9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

■ 지원배경

(33) 한국·대한투자증권 투자(2000.6.10)

금융공사를 통해 168억원에 매입하였다.
 용)으로 출자하고 국민생명 부동산 및 그 관련재산과 대출채권의 일부를 정리금
 업권까지 200억원과 기출자본 2,327억원을 차감한 1,023억원을 현금(회수자금 환
 한덕생명보험에 대한 자산원사결과 순자산부족분 3,550억원중 한덕생명의 영

■ 지원내용

대한 매입을 하였다.
 시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생명보험의 미인수자산에
 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순자산부족분중 부담분에 대하여 출자를 실
 시를 통해 순자산부족분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9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설
 2000년 4월 17일 SK그룹과 금융감독위원회간에 한덕생명보험 인수에 관한

■ 지원배경

(32) 한덕생명 출자 및 국민생명 자산매입(2000.5.12/5.15)

■ 지원내용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결과 양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조과부채액 규모는 5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가치를 6천억원수준으로 추정하여 이를 차감한 4조9천억원의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출자지원하기로 확정되었다.

당초에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이 증권회사로 전환되는 6월경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3차례정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지원하기로 한 금액중 2조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나머지 2조9천억원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조달하고 6월 10일 일시에 4조9천억원의 출자지원(한국투신 3조원, 대한투신 1.9조원)이 이루어졌다.

(34) 증권사 예금대지금(2000.6.12)

2000년 들어 나라중금의 퇴출(2000.5.3)과 영남중금의 영업정지(2000.5.24) 등으로 중합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신축소 등 영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나라중금어음의 문제로 조래된 한국중금의 유동성 부족은 한국중금이 중금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중금은 일시적 유동성부족문제를 극복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000년 6월 8일 예금보험공사 공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주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880억원 규모의 한국중금 후순위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한편, 한아를중금의 하나은행에 대한 미지급예금 945억원을 지급하여 동자금이 한국중금에 지원되도록 하였다.⁹³⁾

93) 한아를중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945억원 이외에도 자체자금 850억원을 활용하여 총 1,79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내용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 금고 부설채권 매입계획 동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6월 8일 경영관리하

■지원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2월 26일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상호신용금고의 부설채권의 매입하기로 하였다. 부설채권의 매입대상은 부설채권의 매각을 원하는 상호신용금고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구노력을 승인받은 금고로 하고 매입대상채권은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고정이자 분류여신 중 금고가 매각을 희망하는 채권으로 하여 2000년 6월 중에 매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36) 8개 상호신용금고 부설채권 매입(2000.6.20)

금하였다.
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어를중금이 국민은행에 대한 미지급예금 900억원을 지야 한 차입금 중 858억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금호중금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유동 642억원)하였고, 추가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산업은행에 지급해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어를중금이 미지급예금을 지급(농협 1,500억원, 산은 이에 따라 중앙중금에 대하여 농협(1,500억원), 산업은행(1,500억원)이 유동적면한 중금사에 대하여 은행을 통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유동성 부족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중금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적용한 중금사에 대하여 정부는 "중금금융회사의 현황과 대책"을 통하여 중합적인 구조영입기반이 구축되고 대우그룹의 기업개선택업의 여파로 이력등을 겪고 있는

(35) 중금사 예금대지금(2000.7.4 / 7.10 / 8.3)

원회를 개최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을 의결하였다. 매입규모는 총8개의 상호신용금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230억원이며 198억원의 현금(회수재원 활용, 계약액 기준)을 지급하여 매입하였다.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낙찰율을 적용하고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3%수준의 시가로 매입하였다.

(37) 부실생보사 매각에 따른 정산금 지원(2000.7.14/7.28/8.12)

조선생명, 동아생명, 태평양생명, 국민생명을 각각 현대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 SK생명이 인수함에 따라 정산을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였다.

〈 표 2-50 〉

정산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지원대상	현대생명 (←조선생명)	금호생명 (←동아생명)	동양생명 (←태평양생명)	SK생명 (←국민생명)	계
일 자	2000.7.14	2000.7.14	2000.7.28	2000.8.12	
지원금액	111	700	414	143	1,367

(38) SK생명에 대한 자산매입(2000.7.31)

2000년 5월 10일 SK생명이 한덕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SK생명이 한덕생명의 자산 중 인수를 거부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67억원에 매입하였다.

(39) 서울보증보험의 부실채권 매입(2000.8.3)

회사채 시장의 수급불안정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9일 재정경제부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

공사가 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3일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보증보험의 1조1,358억원(계약액 기준)의 부실채권을 2,997억원에 매입하였다.

(40) 영남중금 출자(2000.8.19)

2000년 6월 20일 “종합금융회사의 현황 및 대책”에서는 2000년 6월말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를 적용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중금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영남중금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8월 19일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달성을 위한 1,717억원을 출자하였으며 8월 24일 영업을 재개하였다.

(41)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출연 및 자산매입(2000.8.21)

정부는 1999년말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당시 1999년말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999년 9월말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매각가격을 정하고 추후 연말 결산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30일부터 매각기준일(1999년말)까지의 영업 결과 및 결산보정에 따른 순자산감소액 1,684억원을 제일은행에 추가 출연하는 한편, 동 기간중 추가로 발생한 분리자산·부채 815억원을 정리금융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재원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공사에 815억원을 대출지원하였다.

〈참고 1〉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처리경과

정부가 사상유례없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증자의 전제조건으로 한 감자명령, 5개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대한생명에 대한 감자 등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먼저, 서울은행의 주식감자와 관련하여 “정부등이 출자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후 계약이전결정된 5개 은행중 동화은행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와 계약이전결정을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와 제14조의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감자 및 출자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제1항제2호와제2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 제23조와 국민의 자유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제37조의 규정과 위입시 한계와 범위를 정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앞의 두건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마지막 대한생명 관련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소원을 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취지를 보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소각명령 또는

감자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계약이전결정관련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판시취지가 유사하다.

〈 참고 2 〉 금융구조조정관련 주요 법률의 적용대상 금융기관

구 분	대 상 금 융 기 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은행법상 은행 •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투자신탁회사 • 보험회사 • 상호신용금고 • 신탁회사(신탁업법) • 종금사 • 여신전문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	•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일부 수산업협동조합 포함)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증권회사 • 보험회사 • 종금사 • 상호신용금고 • 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공사법	• 은행법상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각각의 협동조합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보험회사 • 상호신용금고 • 종금사 •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증권회사 • 투자신탁회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여신전문금융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새마을금고

5. 金融圈別 構造調整 推進과 公的資金 支援內譯

가.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내역

(1) 총괄

은행부문은 대부분의 기업여산을 제공하고 있고 지급결제와 신용창출기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곧바로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에 대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표 2-51 〉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

(2000.8말 기준 단위: 억원)

사용 자금출처	출 자	출 연	자산매입등	소계(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165,110	96,449	17,682	279,241	174,916	454,157
회수자금	-	4,345	16,013	20,358	26,519	46,877
소계(Γ)	165,110	100,794	33,695	299,599	201,435	501,034
공공자금(Λ)	125,486 ²⁾	1,666	64,525 ³⁾	191,677	10,000	201,677
계(Γ+Λ)	290,596	102,460	98,220	491,276	211,435	702,711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108,069억원 포함

3) 후순위채 매입은 보완자본을 확충하는 출자의 성격을 가지나 이 표에서는 편의상 자산의 매입등에 포함하여 계상함

1997년말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하여 자기자본 확충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된다 하더라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은행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조건부로 승인된 7개은행과 기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상회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감소후 증자, 인원 및 점포감축 등 자구노력과 합병 등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따라 증자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은행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지원에 따라 82조6천억원의 공적자금(회수자금 재활용분 18.6조원 포함)과 27조원의 공공자금 합계액의 64% 이상이 은행부문에 투입되었다.

은행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등의 주요 소요내역을 보면, 우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에 20.7조원을 지원하고, 5개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2.4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빛은행과 조흥은행과 같은 합병은행에 대한 지원 및 기타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울이고 있는 은행에 대한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997년말 특수은행 6개를 포함하여 총 33개에 달하던 은행은 2000년 8월말 현재 23개로 줄어들었다.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10개 은행의 정리는 은행부문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은행의 퇴출기준으로 삼은 것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해당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였다. 정부는 우선 1997년말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은행들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퇴출시키거나 다른 우량은행과 합병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와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이 다시 누적되어 추가적인 은행권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 등 6개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2000년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표 2-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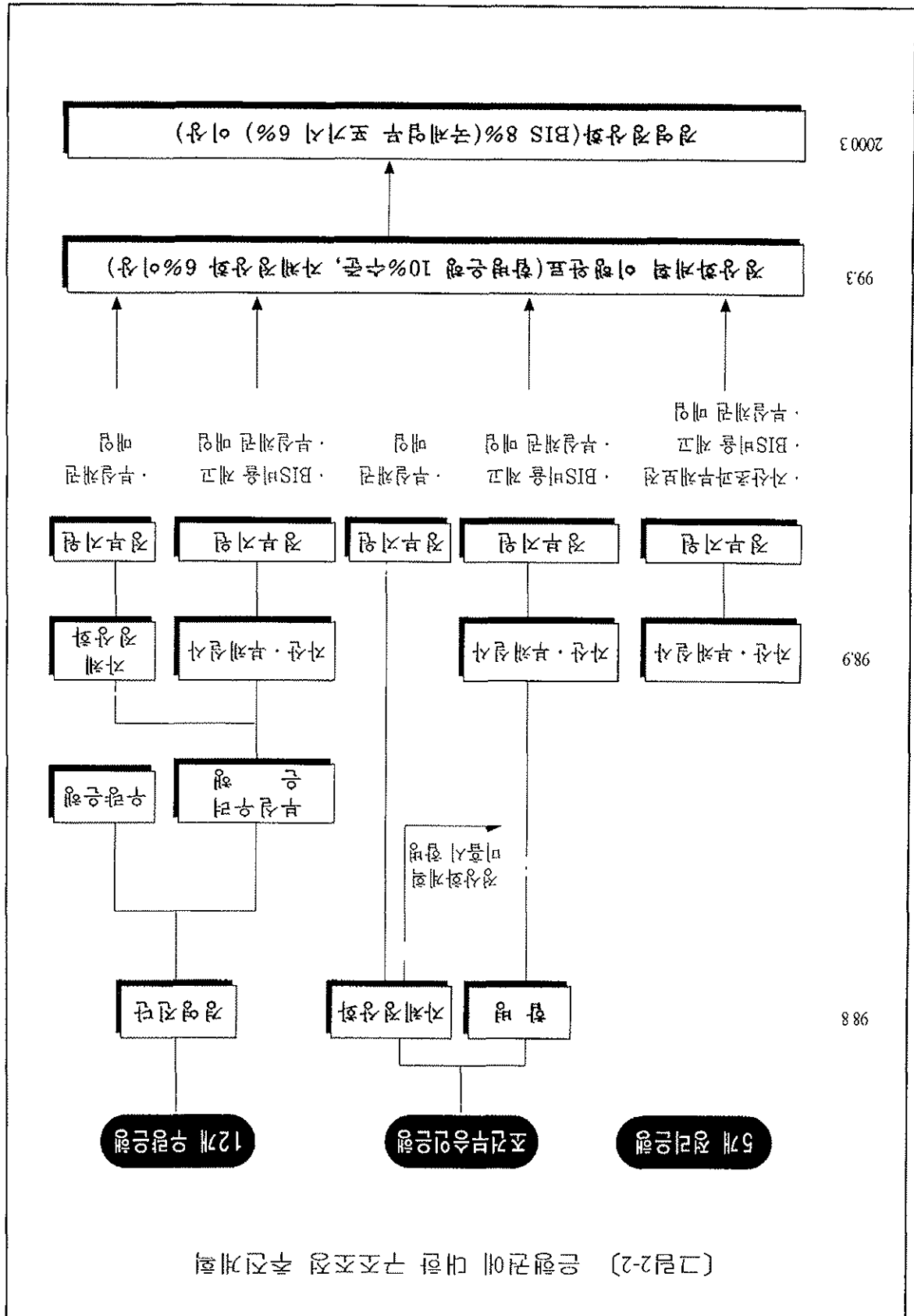
은행권 구조조정 내용

○ 제일은행 서울은행	→ Newbridge사에 매각 → 공적자금 투입후 독일 도이치방크의 경영자문을 받아 정상화 추진중
○ 5개 정리은행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인가취소후 퇴출
○ 합병은행 - 상업,한일 - 조흥,충북,강원 - 하나, 보람 - 국민, 장기신용	→ 상업은행과 한빛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 →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충북은행이 조흥은행으로 합병 → 하나은행이 보람은행을 흡수합병 → 국민은행이 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
○ 기타자체정상화 은행 -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평화	→ 공적자금, 또는 후순위채 매입 등 별도자금 지원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

(2)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해외매각

■ 경영정상화 추진배경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부문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은 곳은 대규모 기업에 대한 여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었다. 1997년초부터 계



속된 대기업의 부도에 따라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양 은행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감독원(한국은행 산하)에서 1997년 9월 5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영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으며, 1997년 11월에 들어서는 은행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의 급증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타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1997년 11월 26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양 은행의 부실채권 4조3,943억원을 2조9,103억원에 매입하고, 1997년 12월 12일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1998년 1월 양 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발행주식을 8.2:1로 병합하여 납입자본금을 8,200억원에서 은행법상 최저자본금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고 1998년 1월 31일 각각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⁹⁴⁾ 각 은행당 출자지원액 1조5천억원 중 7,500억원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7,500억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후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의 논의를 거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 해외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에서 승인한 양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근거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게 되었다.

■ 해외매각의 추진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의 민영화를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98년초 외국 회계법인인 Coopers & Lybrand로 하여금 두 은행의 자산실사를 진행토록 하고, 실제 매각절차를 전담할 주간사기관 선정을 위하여 외국의 우수 investment bank를 상대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98.4.9~10 이틀동안 4개 investment bank (SSB, J.P.Morgan, CSFB, Morgan Stanley)로 부터 presentation을 가졌으며 이들 4개 기관으로 부터 업무수행능력, 이해상충, 수수료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

94) 이와 같이 기존 자본금 감소후 신규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Accordion방식이라 한다.

여 평가한 결과, 이번 두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Morgan Stanley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investment bank를 최종 선정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Morgan Stanley와 계약을 체결하고, '98년 5월초부터 동 investment bank의 두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구체적인 매각방법 및 절차등 매각과 관련한 본격적인 전략수립에 들어감으로써 외국 유수 금융기관을 상대로한 민영화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98.12.31(목) 오후 2:00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인뉴브릿지 캐피탈(Newbridge Capital)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콘소시엄과 제일은행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게 되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부실자산과 일부부채를 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 설립될 정리금융기관(Bad Bank)*에 이전하고, 부실자산 분리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은행을 Clean Bank상태로 전환하여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매각이후에도 정부는 은행주식 전체의 49%를 소유하게 되며 Premium으로 정부보유주식의 11%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리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보유주식의 처분은 시가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Newbridge측은 2년동안 정부의 승인 없이 보유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고 정부도 Newbridge측과 동일비율·동일조건으로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1년동안 정리금융기관에 이전(Put) 가능, 2년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이전 가능하도록 Put-back option을 부여하였으며, 은행 경영권은 Newbridge측에 은행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Newbridge측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후 정부는 Newbridge측의 은행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해나가기로 하고 Newbridge측과 관련사항에 관한 세부협상을 계속하였다.

■ 선 경영정상화 추진

제일은행은 97년중 한보·기아 등 대형부실로 정상경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98.1월 공적자금을 긴급 지원하였으나, 그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부실증가, 한계기업의 부도, 부실채권 정리에 의한 매각손 등 과거 부실요인이 현재화됨에 따라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자기자본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 제반 업무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은행 본연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9.6.25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예안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자금지원 요청을 하였다.

해외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를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은 당시의 재무상태하에서는 거래기업을 포함한 고객보호가 어렵고, 이에 따라 은행 영업기반이 무너지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면 앞으로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으며, 기존부실의 정리는 매각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활한 매각협상을 위해서도 은행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을 제값을 받고 팔고 향후 이미 투입된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지원규모는 한빛·조흥은행의 예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BIS 비율을 1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며,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에 앞서 주주의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기존주식에 대한 감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하였는 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동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납입자본금 수준까지 보전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병합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완전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 해외매각 타결

정부는 이후 Newbridge와 매각조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여 제일은행의 매

각에 관한 구체적 조건에 합의하고, '99.9.17(금) 마침내 이를 담은 투자약정서(TOI : Terms of Investment)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98.12.31 제일은행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이래 수십차례에 걸친 협상과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혀 타결에 이른 것이다.

합의된 제일은행 매각조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뉴브리지 캐피탈은 5천억원을 투자하여 정부보유주식(보통주)의 51%를 인수하되 은행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3% 및 BIS비율 10%가 동시에 유지되도록 하였고, Newbridge는 은행경영 정상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2년간 2천억원까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둘째, 정부는 경영권 이관의 댓가(premium)로 제일은행 총발행주식의 5%(정부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3년후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warrant)을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은행의 경영성과(upside potential)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제일은행이 인수하는 기존여신에 대해서는 인수후 2년 이내(work-out 여신은 3년 이내)에 부도등 발생시 정부가 매입해 주고, 부실화되어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적립해줌으로써 기존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뉴브리지 캐피탈과의 매각협상에 있어 제일은행이 매각된 후에도 영업기반이 유지되고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으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한 부실여신(고정이하)를 제외하고는 매각시점에 모두 뉴브리지측이 인수토록 하였다.

제일은행의 매각은 우리나라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경영진을 영입하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게 되어 당초 해외매각을 추진하게 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Newbridge가 제일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도 기대되었다.

이후 양측은 투자약정서(TOI)를 토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양도하는 실무절차를 거쳐 제일은행 매각을 완결시키기로 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실무협상을 이어 받아 Newbridge Capital이

제일은행에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KFB Holding Company와 제일은행의 매각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합의하고, '99.12.23(목)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계약은 이미 합의된 투지약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일은행에 잔류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은행매각 후 2년말까지 (Workout 여신 및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3년말까지) 부도 등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매입하고, 부실화 되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적립해 줌으로써 잔류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우여신, Workout 여신, 사적화의 여신의 경우 은행매각 시점에서 고정이하 여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액 제일은행에 잔류하되, 향후 Workout Plan 확정 등에 따라 주식·CB로 전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여신의 이자가 감면될 경우에는 2000.6월말까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하여 초기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Workout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 매각후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월별 영업보고서를 제출케하고 사외이사 3명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은행의 경영을 Monitoring 하기로 하였다.

본계약체결에 따라 은행매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99년말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Newbridge는 2000.1.20일 지분매수대금 5,000억원을 납입하고 제일은행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본계약체결과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매각기준일인 99년말을 기준으로 Newbridge가 인수하지 않기로 한 담배인삼공사 및 한전주식 등 시장성있는 주식과 부동산, 현지법인 자산 및 일부 부실채권 등을 은행매각전에 매입하였다. 한편, 매각된 제일은행의 자본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의 당시 자기자본 2.4조원과 차액인 1.4조원을 유상감자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이로써 2년간에 걸친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이 마침내 마무리되게 되었다.⁹⁵⁾

95) 제일은행 민영화관련 주요일정

- 1998년1월: 정부출자 및 민영화방침 발표
- 1998년3월말: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구성

- 1998년9월 : 법무 및 회계심사 완료
- 1998년9월 : 미 투자펀드기반인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원은행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교환
- 1999. 1~8월 : 뉴브리지캐피탈과 세무 인수계약 협상
- 1999년9월17일 : 투자조건서 (terms of investments : TOI)를 체결
- 1999년12월23일 : 본 계약 체결
- 2000년1월20일 :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5000억원의 매각대금을 수취
- 96) 국제기준에 의한 경우 97만 기준 종자산 48조원중 1/3 정도가 부실채권으로 추정

이와 같이 제원은행 정상화에 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투입된 것은 첫째, 제원은행은 기아·한보 등 거액의 부실채권이 많아 Clean Bank화하는데 보 다 많은 자금이 소요(96)되었고, 둘째, 해외매각을 통해 정리하는 기회의 은행을 완 전한 Clean Bank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실자산을 모두 인수함에 따라 약 7~8조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출자자금만 비교할 경우에는 제원 3.7조원, 한빛 3.3조원, 조흥 2.7조원, 서울 4.8조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소요는 미미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제원은행을 매각하면서 향후 2년간 풋백양정을 체결하였으나, 9 월중 지원될 풋백으로 그동안의 누적부실을 모두 정리하게 되고 현재의 경기회복 세를 감안할 때 향후 신규부실요인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풋백에 필요한 추가 지원소요는 미미할 것이다.

주인수권(전체주식의 5%)을 행사할 경우 보다 많은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출자지분(액면가 5,000원)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계약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신 담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돌아를 것이다. 특히, 제원은행이 정상화되어 보유중인 당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자금회수가 마무리될 경우 실세 공적자금부 (49%)를 매각하여 상당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자금의 상 부분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6.3조원(출자자금 5.7조원 등)도 정부지분 실패권 매입대금 6.7조원은 시가로 매입한 자산을 매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대 지금까지 제원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2.5조원이며, 이중 자산 및 부

■ 제원은행 해외매각에 대한 중간평가

제일은행 해외매각에 따른 공적자금 부담은 누적투입액 기준이 아니라 자금회수가 최종 완료된 이후 회수되지 못한 순비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5개 퇴출은행 정리시 투입된 자금(9.6조원)과는 달리 제일은행의 경우 투입자금중 상당부분은 회수가능하며, 선진국에서도 부실은행정리에 통상 총자산의 20~30%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제일은행의 정리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는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 상황은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으며, 제일은행을 청산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병, M&A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위해 29.6조원(97말 기준 예수금 규모)의 공적자금 부담을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매각 대신 폐쇄시켰을 경우에는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일은행 매각조건이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98년초 정부가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려 했을 때 해외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막대한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제일은행의 경우 더군다나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누구도 제일은행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은

상황과 상대방이 있는 게임으로 정부는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한 5천억원은 Clean Bank로 전환된 제일은행의 적정가치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경영권인수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그동안 누적부실정리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부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뉴브리지가 투자한 5천억원은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게 될 것이며, 뉴브리지가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명확한 경영비전 제시 등을 통해 은행정상화에 기여한 점도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거래고객의 편의,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의 증가 등 보다 큰 이익을 얻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표 2-53 〉

제일은행 관련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

자금출처 \ 사용	출자	출연	자산매입등	소계(A)	부실채권 매입(B) ²⁾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49,586	380	16,094	66,060	21,499	87,559
회수자금	-	4,318	16,013	20,331	4,671	25,002
소계(ㄱ)	49,586	4,698	32,107	86,391	26,170	112,561
공공자금(ㄴ)	7,500	1,666	2,235 ¹⁾	11,401	1,442	12,843
계(ㄱ+ㄴ)	57,086	6,364	34,342	97,792	27,612	125,404

주 1) 후순위채 매입은 보완자본을 확충하는 출자의 성격을 가지나 이 표에서는 편의상 자산의 매입등에 포함하여 계상함

2) 실제 인수액 기준임

(3)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 홍콩상하이은행과의 MOU 체결

정부는 서울은행에 대해서도 제일은행과 함께 해외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99년초까지 제일은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⁹⁷⁾하였으며, '99.2.22(월) 세계 최우량은행인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그룹과 서울은행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였다. HSBC는, 금융관련 전문잡지인 Banker지에 의하면 '97.12월말 기준 총자산 4,736억불, BIS 비율 14.2%, 세전순이익 82억불을 시현하고 있는 세계 최대·최우량 은행그룹 중 하나이며 장기 투자 위주의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이다.⁹⁸⁾

MOU의 주요내용은 첫째, 부실자산과 일부부채를 기존 서울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 설립될 부실자산관리금융기관(Bad Bank)에 이전하고 부실자산 분리 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은행을 Clean Bank 상태로 전환하여 매 각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전체지분의 30%를 소유하나, HSBC에 동 지분 을 매각시에는 19% 지분에 해당하는 Warrant를 보장받게 되어 있어, 경제적이 익을 고려한 실질적 지분율은 49%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유지분의 처분 은 HSBC는 인수시점으로부터 4년후 3개월간 정부보유지분 매입청구권(Call Option) 보유하고 HSBC가 Call Option 불행사시 정부는 1년간 HSBC 앞 정

97) 서울은행 민영화관련 주요일정

- 1998년3월말: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가 구성
 - 회계법인 선정(삼일, Coopers & Lybrand)후 자산·부채 실사
 - 매각 주간사로 모건 스탠리사를 선임
- 1999년2월22일: 홍콩상하이은행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1999년3월~9월: 자산·부채 실사작업, 협상 진행
- 1999년8월31일: 매각협상 결렬 발표 및 서울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 동 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9월중 부실채권 매각, 3조 3201억원의 중자 지원
- 2000년4월14일: 독일 도이치뱅크와 경영자문계약체결

98) HSBC 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개인금융,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업무와 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으로서, '97.12월말 기준 총자산 4,736억불, BIS비율 14.2%, 세전순이익 82억불, ROE 20.7%를 시현하고 있는 세계 최대·최우량 금융기관 중 하나

- 1865년 구 홍콩상하이은행을 모태로 출범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 자회사 설립 및 인수를 통해 성장했으며, 1992년 Midland Bank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은행으로 부상하였고 13만여 직원을 고용하여 79개국에서 5,500여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은행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미국과 유럽지역을 탈피하여 아시아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부보유지분매도청구권(Put Option) 보유하며, 이 경우 HSBC는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도록 하였다. 넷째, HSBC는 은행인수의 대가로 일정금액(2억불)을 정부에 지급하고, 다섯째,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1년동안 Bad Bank에 매각가능하도록 하고 부실여부 판정기준은 금융감독원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HSBC에 경영권을 위임하고, 단, 보유자산의 전부 매각, 파산 신청, 해산, 감자, 기타 주주로서의 정부이익에 반하는 사안 및 주총 특별결의 사항은 75% 주주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정부이익을 보호하였다.

■ 매각협상의 결렬 및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정부와 영국계 은행인 HSBC는 지난 2.22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당초 MOU에서 정한 5월말 매각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매각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왔으나, 매각조건에 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양측은 99.8.31일 매각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초 IMF·IBRD와의 합의를 통해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추진키로 한 근본 취지가 외자도입 측면보다는 외국 전문경영진의 영입 및 이를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려 서울은행의 경영진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적으로 공개선정하여 경영을 담당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중개회사등을 통해 저명한 금융인을 최고경영자(CEO)로 물색하여 경영진 구성을 일임하거나, 또는 우수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을 담당케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은행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해외매각을 통해 처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에 앞서 경영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제일은행과 같은 방식에 따라 '99.9.3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자금지원 요청을 하였다. 공적자금 지원규모는 한빛·조흥은행의 예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BIS 비율을 1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며,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에 앞서 주주의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동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납입자본금 수준까지 보전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병합하되 소액주주 주식은 완전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 도이치은행과의 구조개선자문계약 체결

정부는 서울은행의 경영진 선임을 추진하여 오던중 도이치은행의 경영자문제안을 받고 보다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4.14일 도이치은행⁹⁹⁾과 구조개선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자문계약은 통상적 자문(Technical Assistance)과 달리 포괄적 내용으로서 도이치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서울은행장과 주요 경영진의 선정을 정부에 추천하고 도이치은행측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서울은행의 여신심사, 위험관리, 영업전략등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자문과 집행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이치은행은 도이치은행의 자문하에 수립하는 구조개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하여 CEO 및 주요 경영진의 선정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둘째, 도이치은행의 은행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서울은행의 영업(front office), 위험관리, 후선업무(back office)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국제기준(International Best Practice)에 부합하는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선계획(restructuring plan)을 수립하는 등 핵심부문(core disciplines) 진단 및 구체적 구조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단대상 부문은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 소매금융(Retail banking), 신탁사업, 국

99) 도이치은행(은행장 Mr. Rolf-E Breuer)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개인금융, 기업금융, 투자은행 업무, 전자금융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으로 99.12말 기준 총자산 8,399억불, BIS비율 12.0%, 세전순이익 41억불, ROE 23.3%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은행

- 1999년 7월 6일 미국의 BTC (Bankers Trust Company)와 합병으로 소매금융과 도매금융업 분야의 세계 최대은행으로 부상
- 9.3만여 직원을 고용하여 57개국에서 2,374여개 지점을 운영중이고 도이치은행의 본사를 중심으로 고객별 5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지점이 영업중임
- 서울은행 자문은 인도네시아의 Bank Mandiri 정상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투자은행(Global Corporates and Institutions) 본부가 주축이 되어 자문업무를 진행할 예정

제금융, 자금(Treasury) 등 영업부문(Front office)과 신용위험관리(Credit risk management), 워크아웃(Workout) 등 위험관리부문(Risk management),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조직구조, 인사, 전산(Information technology), 영업망(Logistics), 운영(Operation), 회계 및 관리, 감사/준법감시(Audit/Compliance) 등 후선업무부문(Bank office) 등을 포괄하기로 하였다. 셋째, 구조개선 목표에 부합하는 비전 및 전략의 수립과, 경영진(management) 및 조직구조 정비, 여신, 소매금융, 운영(operations)부문에 도이치은행의 은행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구조개선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등 구조개선(restructuring)의 실행을 지원·지문하기로 하였다.

도이치은행은 작년말 현재 총자산 8,399억불, BIS비율 12.0%, ROE 23.3%, 당기순이익 41억불 등 세계 최대 은행으로서 특히, '98~'99년도에 인도네시아 4개 부실은행의 합병 및 정상화를 추진¹⁰⁰⁾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이치은행이 서울은행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대 은행으로서의 높은 신인도를 바탕으로 선진금융 기법과 경험을 전수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부실은행 경영정상화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자문을 제공하는 이외에 경영진 선임을 지원하고 핵심부문에 간부를 직접 파견하여 실행 작업에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서울은행의 신인도 제고를 통한 영업기반 회복 등 경영정상화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해외매각이 결렬된 후 우선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지원으로 4.8조원,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3조원등 총 8.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동 자금중 부실채권매입자금은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매입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순조롭게 회수하고 있으며, 출자자금은 향후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회수할 예정이다.

100) Bank Bumi, Bank Dagang Negara, Bank Exim, Bank Bapindo 등 4개 은행을 합병하여 Bank Mandiri 설립

〈 표 2-54 〉 서울은행 관련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

자금출처 \ 사 용	출자(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후순위채매입 (C)	총 계 (A+B+C)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40,701	20,327	61,028	-	61,028
회수자금	-	8,566	8,566	-	8,566
소계(ㄱ)	40,701	28,893	69,594	-	69,594
공공자금(ㄴ)	7,500	1,319	8,819	2,700	11,519
계(ㄱ+ㄴ)	48,201	30,212	78,413	2,700	81,113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4) 5개 정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지원

1997년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 12개은행(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제외)중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1998년 6월 29일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된 5개 은행(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설립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강제로 퇴출이 결정되었다. 5개 은행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퇴출여부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으며, 동 건의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출이 결정되었다.

5개은행의 퇴출방식은 다양한 부실은행 처리방식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한 계약이전결정으로 하였다.

계약이전결정은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선택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특정 영업분야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산·부채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의 양수도와는 차이가 있으며¹⁰¹⁾,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도산은행(Failing Bank) 처리시 사용하는 방법¹⁰²⁾중 P&A(Purchase and Assumption)

101)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양수도의 차이

구 분	계 약 이 전 결 정	영 업 양 수 도
의 의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출등 금융거래에 관련 된 계약을 선택적으로 이전 -합병 또는 자체 경영정상화 불가시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 로 실시	-특정 영업분야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부채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 리를 포괄적으로 양도
이행주체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조치	-합의에 의해 양도·양수기관이 이행
절 차	-인수·피인수기관 모두 주총결결 불필요 ·피인수기관: 이사회결의 및 주총결결의 배제(금 융산업구조개선텐법 제14조제5항) ·인수기관: 이사회 결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결결의를 행하는 경우 합병절차 단축에 준하여 절차 간소화. 이 경우 주총결결의는 이사회에 대한 신입투표 의 성격(금융산업구조개선텐법 제14조제9항)	-양도·양수기관 모두 주주총회 결의 필요 ·영업의 일부양수의 경우 양수기관은 주총결결의 불필요(상법 제374조)
고용승계의무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므로 이에 속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이전대상이 아님	-영업의 포괄적 승계이므로 고용승계의무가 있음 (대법원 판례)

102)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도산은행처리방식

- ① 은행폐쇄 및 예금대지급방식(close a bank and pay off the insured deposit)
 - 도산은행을 폐쇄하고 부보예금에 대하여 대지급하는 방식
 -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으로서 여러 처리방식중 경제활동 및 금융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② 건전은행에 대한 도산은행 부보예금 양도방식(insured deposit transfers)
 - 특정 건전은행에 부보예금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설한 후 동 건전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도산은행 부보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부보예금을 인수한 대가로 인수은행은 인수예금상당액을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인수은행은 그만큼 수신고가 높아지는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연방예금보험공사
에 지급
 - 예금대지급방식과 유사하지만 프리미엄의 수취로 정리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③ 건전은행에 의한 도산은행 자산·부채승계방식(P&A)
 -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된 건전은행이 도산은행의 모든 예금채무를 인수하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
 - 도산은행이 폐쇄되더라도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일반대중은 계
속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지역경제 및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연방예금보험공사도 인수은행으로부터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등 방식을
우선 고려
- ④ bridge bank 방식
 -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P&A방식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 산하에 bridge bank를 신설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P&A방식에 의한 도산은행 처리가 이루어 질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산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케 하는
방식
 - 연방예금보험공사는 bridge bank를 인수할 은행을 2년 이내(단,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에 결정하
여야 하며, 최종적인 인수은행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산은행의 폐쇄 및 예금대지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⑤ 도산방지 지원방식(open-bank assistance)
 - 문제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당행 은행의 지급능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은
행도산을 예방하는 방식
 - 자금지원은 장기저리대출, 부채인수,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출자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⑥ 자금지원을 통한 합병·자회사방식(assisted merger)
 -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도산은행 또는 인수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수은행의 도산은행 흡수합병
또는 자회사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식

와 유사하다.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은행 퇴출시 공적자금 지원소요는 우선 부채(예금)와 인수자산간의 차액에 대한 손실보전, 자산인수에 따른 BIS비율 하락 보전, 인수 자산의 추가부실화에 따른 put-back옵션 행사에 따른 손실보전등이 발생하게 되며, 5개 정리은행에 대한 지원현황은 <표 2-55>와 같다.

< 표 2-55 >

5개 정리은행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우선주출자 ¹⁾ (기상환액)	출연	자산매입등 ²⁾	소계 (A)	부실채권 매입(B) ³⁾	계 (A+B)	공공자금 [후순위채 매입] (C)	총 계 (A+B+C)
동남→주택	2,965 (2,075)	17,820	538	21,323	1,302	22,625	270	22,895
대동→국민	2,000 (400)	18,186	179	20,365	1,912	22,277	253	22,530
동화→신한	2,925 (-)	24,606	591	28,122	2,314	30,436	1,250	31,686
경기→한미	2,600 (520)	24,344	226	27,170	3,663	30,833	710	31,543
충청→하나	1,433 (1,374)	11,140	54	12,627	1,587	14,214	640	14,854
계	11,923 (4,369)	96,096 ⁴⁾	1,588	109,607	10,778	120,385	3,123	123,508

주 1) 우선주출자에 대해서는 pp. 117~118 (5개인수은행 출자) 참조

2) 5개 인수은행이 5개 퇴출은행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자산중 인수를 거부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매입

3) 실제 인수액 기준임

4) 회수금 재사용분 27억원 포함(국민 1, 신한 4, 한미 21, 하나 1억원)

·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인수예정은행간에 자금지원의 조건, 규모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협상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⑦ 건전은행에 의한 흡수합병방식(unassisted merger)

· 건전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의 재정적 지원없이 도산은행을 흡수합병하는 방식

·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식이나 일반적으로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인수를 통해 다른 금융시장으로 신규진출하는 경우외에는 실현가능성이 낮음

(5) BIS비율 8%미만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BIS비율 8%미만 12개 은행중 퇴출은행 5개를 제외한 상업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등 7개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승인 받았다.

이중 상업은행·한일은행, 조흥은행·충북은행·강원은행은 각각 합병을 조건으로, 외환은행은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평화은행은 증자등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정부등에 의한 출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표 2-56 〉 조건부 승인은행의 자구노력 및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자 구 노 력	출자(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공공자금 (C)	총계 (A+B+C)
한빛(상업·한일)	합병(99.1.6)	32,642	25,425	58,067	6,973	65,040
조흥 (조흥·충북·강원)	합병(99.5.4/9.15)	24,763	21,853	46,616	8,153 ²⁾	54,769
외환	외자유치(Commerz은행)	-	15,131	15,131	4,223	19,354
평화	감자 (2,730억원→1,000억원) 자체증자(1,200억원)	2,200	721	2,921	1,800	4,721

주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 출자 2,41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후순위채매입 5,737억원

■ 상업·한일은행의 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간 합병은 대규모 부실 시중은행간 합병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대형합병이라는 점에서 금융구조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컸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998년 6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각각 50조원과 55조원에 이르는 등 양 은행의 자산을 단순히 더할 경우 100조원이 넘는 대형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영정상화계획에 근거하여 양 은행의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과 손실분담을 조건으로 충분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상화가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에 근거한 「금융기관합병등에대한인가기준및지원사항」¹⁰³⁾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제출한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Terms

103) 합병후의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지원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라)항 이하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식병합 등을 통한 자본금 감소·경영진 교체·인력 및 점포감축·자체증자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를 경유하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동종금융기관간 합병의 경우

1) 공통사항

가)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자비율 30%이내, 발행가 기준 3,000억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상증자를 추가 허용.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나)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복 해외점포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진출 경합지역의 해외점포 설치를 우선 배려

다) 지점 설치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점포(본점을 포함한다) 이외에 1개의 지점 신설을 허용. 다만,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는 동일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을 신설하여야 한다.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우선 매입(상업공사의 경험회수율 등을 감안한 시가에 매입)

마) 자기자본비율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지원(합병승인 주주총회 후에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지원. 다만, 합병명령에 의해 합병하는 경우이거나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바)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시 우선 지원

2) 개별 사항

가) 전국은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시중은행"이라 한다)간, 시중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합병될 경우

① 은행법시행령 제9조의2 및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자본금 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중 1개의 자회사 신설을 허용

② 융통어음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

③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나) 지방은행간 합병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의 지역영업소 설치제한을 폐지

② 서울특별시 소재 지점의 대출한도 적용을 배제

다) 증권회사간 합병의 경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허용

라) 생명보험회사간 또는 손해보험회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규모에 따라 최장 5년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

마) 지방소재 종합금융회사간 또는 지방소재 보험회사간 합병의 경우

① 본점 위치의 제한을 폐지

② 기존의 지방소재 회사에 대한 우대조치를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유지

바) 상호신용금고간 합병의 경우

① 동일영업구역내에서 1개 지점의 이전을 허용

②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업무승인시 우대

③ 계약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영업권의 상각기간을 5년간 연장

나.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의 경우

1)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업무를 허용

2)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증권회사가 되는 경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허용

3) 시중은행과 증권회사가 합병하여 시중은행이 되는 경우

가)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허용

나)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설치를 허용

of Reference ; TOR)를 승인하는 한편, 주주의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양 은행의 자본금을 약 10:1수준의 주식병합을 통해 감자토록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년 9월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998년 10월말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양 은행은 1999년 1월 6일은 합병등기를 완료하고 “한빛은행(Hanvit Bank)”으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이와 함께 1999년 1월 22일 출자금용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빛은행장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¹⁰⁴⁾하고 있다.

< 표 2-57 > 상업·한일은행 합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공공자금(C)	총계(A+B+C)
상 업	16,321	13,942	30,263	2,333	32,596
한 일	16,321	11,483	27,804	4,640	32,444
계	32,642	25,425	58,067	6,973	65,040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 조흥·강원·충북은행의 합병 관련 공적자금 지원

조흥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간에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우선 강원은행이 조흥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1999년 2월 11일 현대종금과 합병을 한 이후 조흥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등 3개 은행간에 자율적인 합병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제 합병은 합병비율에 이견이 있었던 강원은행을 제외한 조흥은행과 충북은행간에 먼저 1999년 5월 4일 이루어지고 조흥은행과 강원은행간에는 1999년 9월 15일에야 합병이 이루어졌다. 조흥, 충북, 강원은행간

104)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의거하여 1999년5월, 1999년8월, 1999년11월, 2000년3월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1999년11월에는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임점확인을 실시하였다.

< 참고 1 >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조건(TOR : Terms of Reference)

■ 경영진 개편

항 목	내 용
임원정원	• 4개 대형시중은행 평균
임원교체	• 합병은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임원으로 교체 •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
이사선임	• 객관적 선임기준 확립
비상인이사	• 권한의 명확화

■ 인원·점포감축

항 목	내 용
직 원 수	• 2000년부터 합병후 1인당 영업이익(총경비 차감전)이 외국 선진은행 수준(2.6억원)이 되도록 감축 • 2급이상 상위직 중심으로 우선 감축
점포축소	• 중복점포 통합 • 적자점포 정리 • 저생산성 점포의 중점정리

■ 수익성·생산성

항 목	내 용
총자산수익률 (ROA)	• 2000년말까지 1.0% 이상
자기자본 이익률(ROE)	• 2000년말까지 15.0% 이상
수익대비 비용비율	• 2000년말까지 60% 이하
Cost Ratio ¹	• '99년말까지 40% 이하

1. Cost Ratio = (영업경비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이자부문의이익 + 비이자부문의이익 + 신탁부문의이익) * 100

■ 재무건전성

항 목	내 용
BIS 자기자본비율	• '99.6말 이후 10% 이상 유지
고정이하 여신비율	• 2000년말까지 1.0% 이하
위험노출도 ¹	• 2000년말까지 100% 이하
Loan Workout 계획	• 구체적인 대상 및 일정제시

1. 위험노출도 = 위험노출자산 / 자기자본

- 위험노출자산 : 고정이하 무수익자산 - 대손충당금 - 유동자산담보
- 유동자산담보 : 자산중 현금, 정부보증유가증권(시가기준)으로 담보화된 금액(ex :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의 시가)

■ 기 타

항 목	내 용
자본금 감액	• 금감위의 감자 또는 주식병합명령에 따라 추진
계약연봉제 ¹	• '99년말까지 2급이상 실시 • 2001년말까지 전직원 확대
자회사정리 / 고정자산처분	• 부실자회사 정리 : 98말까지 • 고정자산 처분 : 99말까지
재무구조전망 ²	• 2004년까지 전망
기업대출확대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출을 정부지원전 대비 순증상태로 유지
합병관련계획 ³	• 합병전후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위험관리기법 개선계획 ³	• ALM • 신용위험관리 • 환율변동위험관리

1. 회계법인 자문하에 추진

2. 회계법인 자문하에 정부지원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3. 금감위의 best practice를 참조하여 컨설팅사에 자문하에 작성

〈 참고 2 〉 한빛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 내용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 및 (주)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함) 세 당사자는 한빛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전 문

(주)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이라 함) 및 (주)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함)은 1998. 8. 24.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관련법률 제4조, 제8조 및 그 부속법령인 재정경제원고시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에 따라 공사의 증자지원 등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였다.

금감위는 1998. 9. 14.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승인하였다. 양 행은 1998. 9. 21. 금감위를 경유하여 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공사는 양 행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1998. 9. 30. 금3,264,200,000,000원을 출자하여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1998. 10. 31. 금감위에 붙임1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서(이하 '경영정상화계획서'라 함)를 제출하였다.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1998. 12. 31.을 합병기일로, 1999. 1. 6.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합병되었으며 합병은행의 명칭은 한빛은행이다.

한빛은행은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이 이미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금감위 및 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함)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한빛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의무)

- ① 한빛은행은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따른 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한빛은행은 특히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 중 한빛은행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요약, 정리한 붙임2 '필수이행사항'을 당해 기간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한빛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진척상황 보고의무)

- ① 한빛은행, 금감위 및 공사가 위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빛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진척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 및 공사에게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보고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화 요약
 2. 재무제표를 비롯한 은행 경영 및 재무 상태의 개괄
 3.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분류된 각 항목별로 당해 기간 동안 추진 또는 달성하여야 할 사항
 4. 위 제3호의 추진 또는 달성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실제 추진 내용 및 그 결과
 5. 위 제4호의 실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6. 경영정상화계획과 대비한 실제 결과에 대한 한빛은행의 자체 평가
 7. 차기 이행 계획
- ② 제1항에 따라 한빛은행이 제출할 보고서는 본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제출하되, 해당분기의 보고서는 그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감위 및 공사는 제2항과 같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과 별도로, 한빛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한빛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빛은행은 금감위 및 공사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금감위 및 공사에게 즉시(7일 이내) 요구받은 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수정)

- ① 한빛은행이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정기보고시에 보고사항과 함께, 이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빛은행은 급격한 시장상황변화, 관련규정변경(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기타 외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금감위 및 공사에 그러한 사정변경을 즉시 보고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금감위는 한빛은행이 전2항에 따라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수정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 그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이 금감위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부분에 한하여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 및 붙임2 '필수이행사항'의 해당부분을 대체하고 그 일부분을 구성한다.
- ④ 금감위는 한빛은행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시한 경영정상화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 그 수정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빛은행은 금감위의 위와 같은 변경 요구가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의 범위 내이거나 그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4조 (경영정상화계획 불이행시의 조치)

- ① 금감위는, 한빛은행이 붙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상화계획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한빛은행은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한빛은행의 자산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다.
 1. 한빛은행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점포, 조직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및 자회사정리
 5.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이미 취득한 위험자산의 처분

6.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영업의 일부 정지 또는 일부 양도
- ② 한빛은행이 불임2 '필수이행사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당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조에 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하는 경우, 금감위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또는 그와 함께 한빛은행의 임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2항에서 한빛은행이 불임1 '경영정상화계획서', 불임2 '필수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하여야 할 사항 중 양적인 수치로 그 이행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목표수치를 그 목표한 기간내에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를, 양적인 수치로 그 이행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그 이행사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그 목표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때를 의미한다.
 - ④ 한빛은행이 불임2 '필수이행사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외한 불임1 '경영정상화계획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감위는 제1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또는 그와 함께 1월 내지 3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빛은행에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내에도 한빛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 한빛은행의 임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한빛은행이 금감위로부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사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할 한빛은행 임원 전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한빛은행은 모든 신임 임원으로부터 임원선임 즉시 불임3의 양식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각서를 정구하여 금감위 및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공사는 한빛은행이 정상화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조치를 한빛은행에 대하여 취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5조 (본 약정의 효력 발생일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한빛은행이 제1조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신주인수가 이루어지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 결과로 예금보험공사의 한빛은행에 대한 의견권 있는 주식보유비율이 한빛은행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③ 본 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상업은행과 한빛은행이 금감위에 제출한 정부 지원조건 이행각서(1998.9.14 일자)에 첨부된 <별지> 정부지원조건은 본 약정 물임2, 원수이행사항으로 대체한다.

제6조 (한빛은행의 주식매각)

공사는 금감위의 의견을 들어 한빛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부터 공사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기에 대한 매각, 국내 또는 해외 공개매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빨리 축소해야 하며 한빛은행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정부의 경영관여 배제)

금감위 및 공사는 본 약정, 감독관련 법령, 공사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등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예산 등 한빛은행의 인사적 내부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의 합병은 구조조정 이후 최초의 다자간 합병이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합병, 대형은행과 소형은행간의 합병이라는 특징을 갖는 한편, 강원은행의 형태중금과의 합병이 선행됨으로써 기업중간에도 합병이 이루어진 사례였다.

이처럼 다양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증자지원 2조7,179억원, 부채채권 매입 2조1,853억원 등 총 5조4,769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조흥은행과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과의 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1999년 11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조흥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조흥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여 조흥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58 〉 조흥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합병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공공자금(C)	총계(A+B+C)
조 흥	24,763	19,532	44,295	7,263	51,558
강 원	-	1,176	1,176	430	1,606
충 북	-	1,145	1,145	460	1,605
계	24,763	21,853	46,616	8,153 ²⁾	54,769

주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ADB차관자금 출자 2,41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후순위채매입 5,737억원

■ 외환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외환은행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출자와 외자유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 7월 독일 Commerz은행으로부터 3,50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였고 대주주인 한국은행의 간접적 지원을 받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1999년 4월 3,360억원을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증자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주주인 Commerz은행이 외환은행의 우선주를 추가로 2,600억원 인수하였으며, 손실분담 차원에서 임직원과 일반주주가 각각 1,000억원, 3,260억원을 출자하였다.

이처럼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자구노력이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밝힌 바대로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의 Commerz은행이 자발적으로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시가에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매입외에는 별 다른 공적자금의 지원없이 경영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 표 2- 59 〉

외환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A) ¹⁾	공공자금(B)	계(A+B)	기 타
외 환	15,131	4,223	19,354	3,360 ²⁾

주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수출입은행의 출자

■ 평화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평화은행은 1992년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노사관계의 인식 전환차원에서 설립된 은행으로서 당시 향후의 경영성과를 보아가며 특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기로 한 바 있다. 주주 구성을 보더라도 노동단체, 노동조합원 및 일반근로자들이 상당수의 지분을 소유한 은행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은행은 1998년 6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미만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당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승인하기로 건의하였으나 1998년 3월말 기준 자산·부채 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어 정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유상증자규모의 확대 등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승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은 1998년 10월 자본금을 2,73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자하면서 주가가 액면가 미만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액면가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체증자 노력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999년 4월 2,200억원의 우선주 출자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평화은행에서는 우선주 출자지원에 대한 지구 노력 차원에서 1999년 5월, 12월 각각 800억원, 500억원의 자체 증자를 함으로써 총 자본금을 5,700억원으로 확충하였다.

평화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은 일부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7개 조건부 승인은행중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영정상화계획중 증자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한 은행으로서 “기존 주주 등의 지분참여에 상응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부합되는 지원사례였다.

〈 표 2-60 〉

평화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우선주출자(A)	부실채권매입(B) ¹⁾	계(A+B)	공공자금(C)	총계(A+B+C)
평화	2,200	721	2,921	1,800	4,721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6)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초과은행의 정상화관련 공적자금 지원

한편, 1997년말 기준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한 13개 은행¹⁰⁵⁾에 대해서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6월말기준으로 8월말까지 회계법인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 또는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13개 은행 모두 1998년 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¹⁰⁶⁾ 제주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우량은행들 간에는 자율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에 합병이 추진되어 1999년 1월 5일에 합병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의 합병은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간의 이루어진 합병으로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의 합병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는 우량은행간의 합병으로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원칙상 증자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채권 매입지원만 이루어졌다.

105)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106)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1997년말 기준으로 경영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영진단 및 경영실태 평가에 관계없이 1998년4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간에는 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6일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당시 급격한 부실화로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상태에 처해 있었던 보람은행을 인수합병하는 하나은행이 동반부실화되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3,295억원의 우선주 출자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합병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61 〉 BIS자기자본비율 8% 달성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A)	부실채권매입(B) ¹⁾	계(A+B)	공공자금(C)	총계(A+B+C)
국 민	-	4,744	4,744	3,936	8,680
장 신	-	2,442	2,442	1,147	3,589
주 택	-	2,726	2,726	4,365	7,091
한 미	-	3,307	3,307	1,964	5,271
신 한	-	8,629	8,629	3,785	12,414
하 나	3,295	1,256	4,551	1,672	6,223
보 람	-	2,386	2,386	1,831	4,217
대 구	-	5,831	5,831	2,040	7,871
부 산	-	6,138	6,138	2,160	8,298
광 주	-	2,384	2,384	2,973	5,357
제 주	-	1,196	1,196	420	1,616
전 북	-	939	939	1,300	2,239
경 남	-	4,225	4,225	3,551	7,776
계	3,295	46,203	49,498	31,144	80,642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나. 비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지원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민간 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시차를 두고 추진해 나가되 그때 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및 은행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라 지급불능사태에 빠지는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각 금융권별로 적기시정조치를 정비하고 단계별 경영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 1997년말부터 2000년 8월말까지 487개의 부실금융기관이 인가취소, 합병소멸, 자진해산 등으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하여 32조5천억원의 공적자금과 기타 6조8천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지원하였다.

〈 표 2-62 〉

제2금융권 구조조정 현황

(2000.8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97년말현재 (A)	구조조정현황				비중(B/A)
		인가취소	합 병	기 타	계(B)	
계	2,069	87	131	259	477	23.1
종합금융회사	30	18	3	-	21	70.0
생명보험회사	50	5	6	2	13	26.0
증권회사	36	5	-	1	6	16.7
투신사	31	6	1	3	10	32.3
상호신용금고	231	43	19	16	78	33.8
신용협동조합	1,666	2	101	237	340	20.4
리 스	25	8	1	0	9	36.0

〈 표 2-63 〉

제2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64조원의 채권 발행자금					공공자금 ²⁾	총 계
	예금보험 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¹⁾	소 계	회수자금	합 계		
총금	58,272	15,084	73,356	33,789	107,145	11,457	118,602
보험	53,634	13,660	67,294	18,837	86,131	18,876	105,007
증권	144	289	433	470	903	-	903
투신	-	-	-	84,074 ³⁾	84,074	38,000 ⁴⁾	122,074
금고	31,062	1,051	32,113	196	32,309	1	32,310
신탁	12,647	-	12,647	1,934	14,581	-	14,581
계	155,759	30,084	185,843	139,300	325,143	68,334	39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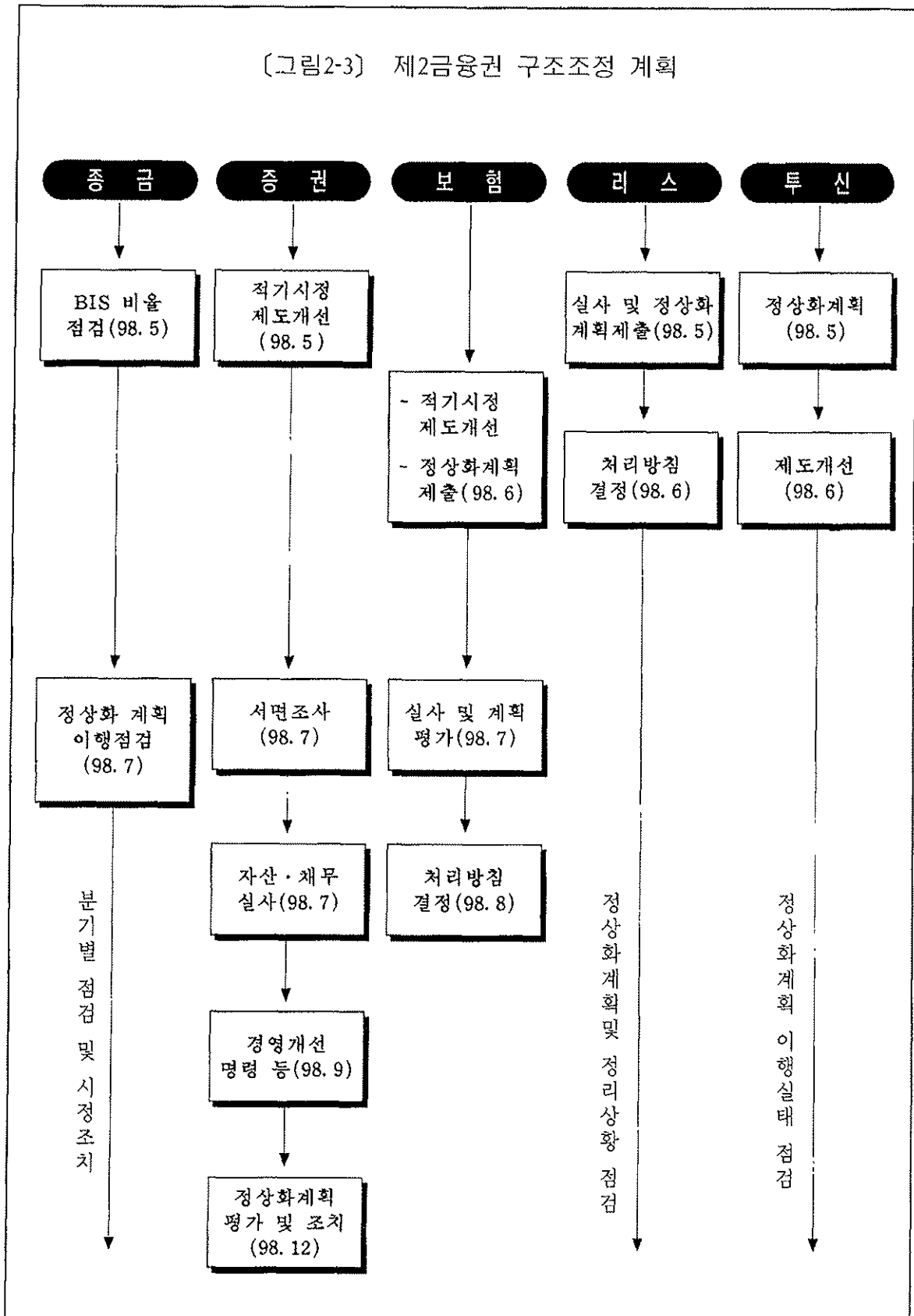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총금, 보증보험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출연지원한 자금

3)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출자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차입한 20,000억원 포함

4)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정부현물출자 9,000억원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출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산은·기은에서 차입한 29,000억원 포함

〔그림2-3〕 제2금융권 구조조정 계획



이후 정부는 IMF의 자금지원에 계기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조정 중합대책을 통해 경영실패를 몰래 중합금융회사를 3음금으로 분류하고 구조 조정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1997년 11월 19일, 금융시장안정 및 구조 정부는 1997년 8월 이후 사실상 자금불응상태에 빠진 중합금융회사가 금융 ■부실중합금융회사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착수

를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태에 속하게 되었고,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0월 이후에는 허위부담을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 8월 이후 상당수의 중합금융회사가 사실상 부도 격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7년 중반 이후 대부분의 중합금융회사가 유동성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합금융회사가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었다.

려웠으므로 자금조달원을 자체 발행어음 등의 국내단기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 금융회사로 전환한 24개 투자금융회사들은 자체 신인으로 외화자금의 차입이 어 하여 외화리스와 같이 장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중합 중합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저리의 단기외화자금을 조달 되어 외화자금의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어렵게 되었다. 가 발생하여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악화 영업환경이 악화되게 되었다. 연초부터 환보, 기아 등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 음으로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던 중합금융회사는 1997년 들어 급격히 자부담금 영업환경속에서 저리의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어음(CP)나 외화리스 라 1997년에는 30개 중합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1996년도까지 비교적 1994년과 1996년에 걸쳐 24개 투자금융회사를 중합금융회사로 전환인가함에 따 1975년도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6개 중합금융회사가 설립된 이후

■외환위기 이전 중합금융회사의 경영현황

(1) 중합금융회사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제자금 지원

는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 종합금융회사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2월 들어 본격적인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정부는 1997년 12월 2일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향도 등 9개 종합금융회사를 영업정지시켰다.

이는 상호신용금고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금융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금융기관 부도사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정부는 9개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정지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금융기관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인출이 지속되었다. 결국 같은 달 10일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더 이상 정상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한, 나라, 중앙, 한화, 신한 등 5개 종합금융회사를 추가로 영업정지시키게 되었다.

참고로 1997년 12월 들어 12월 8일까지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이탈한 예금 규모는 12조6,010억원에 이르렀다.

부실 종합금융회사를 과감히 영업정지시킴으로써 종합금융회사 전체로 확산되던 예금인출사태는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정부는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정부는 12월 10일 5개 종합금융회사의 추가 영업정지와 함께 30개 전 종금사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자기자본확충과 유동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명령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다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금융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처리를 병행하였다. 한국은행은 12월 12일 은행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된 종합금융회사에 지원하였던 유동성지원자금 7조3천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동 규모만큼의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금융회사

의 예금보험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신용관리기금(1998년 4월 예금보험공사로 기능 이관)이 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정지된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998년 1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과 은행 등의 차입금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종합금융회사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는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종합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고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처리를 위해 12월 중순이후 종합금융회사 정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함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인 전문가로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이 제출되는 12월 30일 11인의 경영평가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998년 1월 중순까지 IMF의 권고안을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첫째 98년 3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권고기준 자기자본비율 4%를 충족하고, 98년 6월말 6%, 99년 6월말 8%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둘째, 종합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력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며, 셋째,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와 대출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넷째, 금융기관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997년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와 12월 30일 제출된 각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였으며 1998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개별 종합금융회사별로 면담을 실시하고 1월 26일 1차 경영평가결과를 구 재정경제원에 보고하였다. 구 재정경제원 장관은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후 2월 17일 인가취소하였다.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에 이어 1998년 2월 26일까지 최종적인 평가작업을 계속하였다. 1998년 2월 26일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위원회는 나머지 20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구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 평가결과에 따르면 삼양, 한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한, 대구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특별한 재무구조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또, 영업정지중인 나라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계열기업여신의 정리, 자본확충 등 정상화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영업정지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8년 2월 26일 정상영업중인 대구, 삼양 종합금융회사를 영업정지시키고 영업정지중인 한솔, 대한, 나라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정지기간을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고 평가된 중앙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는 3월 2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한편, 개별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토록 명령하였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솔, 대구, 삼양 종합금융회사를 각각 청문절차를 거쳐 1998년 3월 16일, 4월 1일, 4월 15일 인가취소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 나라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1998년 3월중 각각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상 이행목표인 자기자본비율 4%를 충족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동 자본확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1998년 4월말까지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998년 4월 1일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는 두 종합금융회사가 자본확충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98년 5월 2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실종합금융회사의 1차적인 구조조정은 마무리되게 되었으며, 1998년 4월 이후 나머지 종합금융회사들은 비록 자금조달이나 영업에 다소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가교종합금융회사(Bridge bank)의 설립 및 예금자보호

정부는 경영평가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를 인가취소하기에 앞서 퇴출되는 종합금융회사의 잔여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구인 가교은행(Bridge bank)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7년 12월 중순이후 구체적인 가교은행 설립방안을 준비하였다.

물상 부채금용기관을 파산처리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은 즉시 회수하게 되므로 거래기업의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출자산의 가치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예금채무를 제외한 기타 채권자는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되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회수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어 자금경색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파산방식보다는 가교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도 부설 중합금융회사를 파산처리할 경우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 섯물경제의 충격과 대외채무의 지급정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물시장 경색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교금융기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997년 12월 26일 정부는 중합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으로 하여금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한어중합금융회사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중합금융회사는 IMF의 권고안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예를 따라 3년의 존속시한을 두게 되었다. 한어중합금융회사는 신규입수는 취급하지 않고 인가취소되는 중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받아 대출금회수와 자산매각 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예금대지금 및 차입금 상환 등 부채정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98년 1월 30일 1차 경영평가결과 인가취소가 예정된 10개 중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 중 일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한어중합금융회사로 이전되게 되었으며, 이후 한어중합금융회사는 1998년 8월 인가취소된 새한, 한전 중합금융회사 등 16개 중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결정에 따르면 한어중합금융회사는 해당 중합금융회사의 자산 중 예금 및 외화채무, 예금지급보증, 콜머니 등을 인수하게 되었다.

한어블중합금회사가 이전받지 않는 부설자산과 기타 차입금 등을 당해 중합금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계약이전과 함께 자산부채 이전에 따른 한어블중합금회사와 개별 파산 중합금회사간의 자금정산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설제로 지급토록 하여 파산 중합금회사에 남겨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점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한어블중합금회사는 16개 인가취소 중합금회사로부터 총 21.2조원의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금융기관 예금과 일부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상환완료하였다.

우선 한어블중합금회사는 1997년 12월 발표된 예금자 전액보장조치에 따라 1998년 1월 5일부터 영업정지된 14개 중합금회사의 예금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예금을 대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5조원의 지급채원을 마련하였으며 우선 개인과 법인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지급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퇴출되는 중합금회사의 예금자에 대해서도 한어블중합금회사의 회수자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자금으로 즉시 예금대지급을 하였다.

한편, 한어블중합금회사는 부채와 함께 총 9조6천억원 규모의 자산도 인수받게 되었으며, 인수자산이 대부분 한계기업의 기업어음과 장기리스자산인 관제로 조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60% 수준의 자산을 회수하였으며 이는 예금대지급과 차입금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어블중합금회사는 1998년 9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으로 성격을 바꾸게 되었으며, 2000년말 존속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 중합금회사의 지속적인 구조개편 추진

1998년초 대규모 부설중합금회사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중합금회사의 신인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누적된 부설자산문제는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1998년 3월 대주주의 증자포기로 제일중합금회사가 영업정지된 데 이어

1998년 6월 대주주인 거평, 성원토건 등의 부도로 계열 금융기관이었던 새한, 한솔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영업정지되었다. 이들 3개 종합금융회사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각각 1998년 5월 18일, 1998년 8월 12일 인가취소되었으며 잔여 자산부채는 한아름종합금융회사로 이전되게 되었다.

한편, 1998년 10월 그동안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던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매각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 인수를 위해 대규모 부채탕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11월 자산관리공사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70% 수준으로 사후정산조건부로 매각했던 종합금융회사는 실제 회수율이 20% 내외에 그치게 되자 막대한 손실을 다시금 입게 되었다.

그 결과 기아자동차에 대한 여신이 가장 컸던 대한종합금융회사가 손실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6월 결국 인가취소되었고 현재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1997년 11월 종합금융회사를 장기적으로는 은행, 증권사 등으로의 업종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3개 종합금융회사가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외, 현대, LG 등 3개 종합금융회사는 1999년중 각각 계열금융기관인 외환은행, 강원은행, LG증권과 합병하여 은행 또는 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꾸준히 종합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기능개편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대주주 및 경영진의 소극적 자세와 대형 금융기관에의 흡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합병이나 타 금융기관 전환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종합금융회사는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대우계열에 대한 종합금융회사의 여신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일부 종합금융회사가 대우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중개역할을 하였으며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 이후 이러한 연계불자금의 처리문제가 표면화되게 되었다.

대한투신, 한국종금 등으로부터 1조원 수준의 자금을 제공받아 대우계열 금융기관인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캐피탈에 다시 자금을 제공했던 나라종합금융

제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전환에 앞서 자금과 권이 융합금융회사의
부원문제가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0년 6월 20
일, 융합금융회사 현황과 대책을 발표하고 첫째, 6월말 기준으로 도입되는 신자산건
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한 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자체 정
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합금융회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예금보험공사
의 자회사로 전환한 후 금년말까지 합병,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전환, 금융지주회사
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해나가기로 하고, 둘째, 일부 증권사의 유동
성위기를 방지할 경우 어렵게 영업을 지속해 오던 나머지 증권사 전체로 유동성위
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동 평가결과가 나오는 기간 중에 우선 유동성 부
족을 겪는 증권사에 대하여 은행을 통해 긴급한 유동성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증권
사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기대책을 함께 추진하
였다. 한편 은행의 지원자금은 예금보험공사나 한어를 증권사가 이차피 지급해야 하
는 미지급 예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이러한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 한스, 중앙 융합금융회사에 대하여 7월 21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8월 20일
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동 계획이
향후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승인되지 못함에 따라 독자생존 또는 예금보
험공사 자회사 전환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융합금융회사는 영남, 한스, 한불, 한국, 동아, 중앙, 중앙, 리젠트

회사가 올 자금의 증가로 인한 손실부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0년 초반 들어 꾸준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4월에 인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금제공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대우관련 연계를 지위에 연루되었던 한국 중합금용회사와 연단 중합금용회사 역시 수신고재이탈에 따른 유동성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결국 한국 중합금용회사는 2000년 6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금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으며, 연단 중합금용회사는 영영정지된 이후 자체정산화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지정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8월 24일 영영를

현대울산, 금호 등 9개사이며 예보의 자회사로 전환된 영남종금과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중인 한스·한국·중앙종금 등 3개사를 제외할 경우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는 5개사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합병 등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금융시장에서 종합금융회사의 역할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1997년말 기준으로 30개였던 종금사가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9개사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퇴출종금사에 대한 예금대지급, 자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 표 2-64 〉 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0.8월 기준 단위 : 억원)

사용 자금출처	출 자	예금대지급	소계(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	58,272	58,272	15,084	73,356
회수자금	-	33,789	33,789	-	33,789
소계(ㄱ)	-	92,061	92,061	15,084	107,145
공공자금(ㄴ)	2,017 ²⁾	8,760 ³⁾	10,777	680	11,457
계(ㄱ+ㄴ)	2,017	100,821	102,838	15,764	118,602

주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2) 신용관리기금이 출자한 한아름종금과 청솔종금(폐쇄)의 자본금을 1998년4월1일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것으로 계상

3) 고급리채권 매각이익금 중 나라종금 예금대지급에 사용한 금액임

〈참고〉 2000년8월말 현재 폐쇄종금사 관련 금융기관 미지급예금(6조2,754억원)¹⁰⁷⁾은 실제 예금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아름종금이 인수한 종금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공적자금 지원내역에서는 제외

종금사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적자금의 지원이 늘어났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한 일부 종금사가 다시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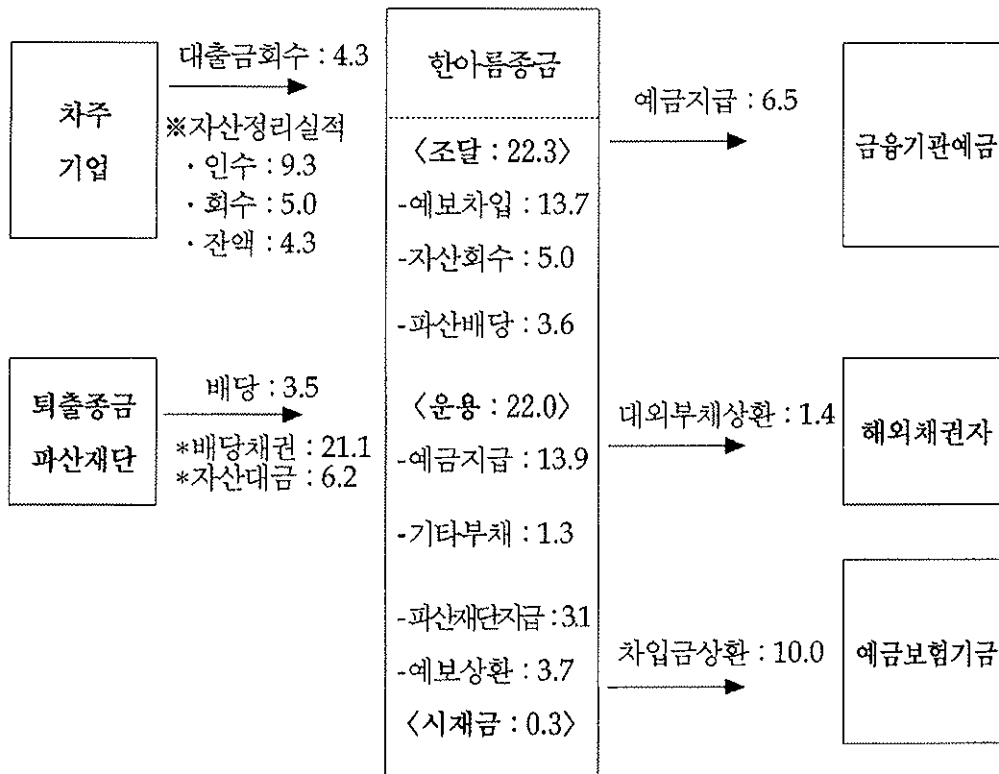
107) 금융기관 미지급예금 규모(억원)

은행	투신	보험	증권	기타	계
33,888	13,758	3,982	1,631	9,495	62,754

〈 참고 〉 한아름 종금의 자산부채 현황(2000년 6월말 현재)

2000년 6월말 현재 총 16개 폐쇄종금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한아름종금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22조3천억원을 예금보험기금 차입, 자산의 회수, 파산재산으로부터의 배당등을 통해 조성하여 퇴출종금사 예금대지급, 부채상환 등에 총 22조원을 지출하여 약 3천억원의 시재금을 보유하고 있다(아래 그림 가운데). 한아름종금은 앞으로도 채무기업으로부터의 대출금 회수, 종금사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배당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아래 그림 왼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미지급예금 6조5천억원, 해외채권자에 대한 부채 1조4천억원, 예금보험기금 차입금 10조원 등을 상환(아래 그림 오른쪽)할 계획이다.

(단위 : 조원)



※ —————▶ : 앞으로의 현금흐름

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당시로서는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유동성 유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의한 결과에 따라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만, 종금사 자체의 영업력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무너지고 대우그룹 등과 같이 대규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부실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종금사 전체의 생존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자구노력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종금사들이 추가로 정리된 것은 아쉬웠던 점이다.

(2) 증권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적자금 지원

증권사는 1997년말 총 36개사 영업중이었는데 기업의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보증에 대한 대지급 부담이 늘어나고 증시침체에 따른 영업손실의 확대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도가 발생한 고려증권·동서증권에 대하여 1998년 6월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었고, 장은증권, 산업증권, 한남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998년 7월과 8월중 업무정지가 이루어졌다. 이중 산업증권은 1998년 12월 증권업을 폐지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남투자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하여 1999년 1월 허가가 취소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8년 6월말 기준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재산채무비율이 100%에 미달한 4개 증권사(SK, 쌍용투자, 장은, 동방페레그린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장은증권 및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대해서는 계획을 불승인하고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98.10.9) 후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장은 : 99.3.15, 동방페레그린 : 99.4.9)

조건부승인을 받은 SK증권과 굿모닝증권은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자구노력을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된 공적자금 규모는 아래 <표 2-65>와 같다.

〈 표 2-65 〉

증권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0.8말 기준 단위: 억원)

자금출처 \ 사 용	예금대지급(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144	289	433
회수자금	-	470	470
계	144	759	903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3) 투자신탁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적자금 지원

외환위기 당시 주식시장의 침체, 과거로부터의 누적된 부실로 인해 일부 투신사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투신사는 정리하는 한편, 나머지 투신사는 대주주의 책임하에 강도높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1997년 12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신세기 투신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19일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객재산을 한국투신에 계약이전토록 한 후 1998년 2월 17일 인가취소하였다. 신세기투자신탁을 영업정지한 후 신탁재산에 대해 실사한 결과 나타난 총부실 6,478억원(연계차입금액)에 대해서는 동사의 고유재산을 처분하여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종업종내의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나머지 투신사들로부터 조성된 기금(투자신탁안정기금)에서 3,586억원을 인수한 한국투신에 지원함으로써 보전하였다.

1998년 8월 14일에는 대주주인 거평그룹의 계열사 부도로 대량환매가 쇄도하여 유동성 부족에 처한 한남투신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고 신세기투신의 예와 같이 신탁재산을 국민투신(현재 현대투신)에 인계하도록 명령하였다. 실사결과 신탁재산중 손실분에 대해서는 동사를 인수한 국민투신에 대하여 인수후 5년간 무기명증권금융채 발행을 통해 2조원, 투자신탁안정기금

108) 1996년 이후 인가받은 회사로서 그 이전의 투신사가 수익증권 판매업무와 신탁재산금융업무를 함께 영
위하던 것과는 달리 신탁재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투신사를 말한다.

1999년 11월 4일에 11월 10일 이후 환매비용 상환조정에 따른 시장호란 기
을 투입하여 양 투신사를 지원하였다.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자금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장영향력이 큰 양 투신사의 부실이 지속될
의 부실을 많이 안고 있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없이
통해 손실을 스스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손실을 부담할 대주주가 없고 이미 기존
한 투신사가 부담토록 하였다. 대주주가 있는 증권사와 투신사는 대주주 증자등을
대우채권의 시장가치간의 차액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와 신탁재산을 금융
경우에는 9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금액과
50%, 2000년 2월 8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80%, 2000년 2월 8일 이후 환매하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대해서 1999년 11월 10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권이 편입된 펀드에 대해 기간에 따라 지급비용을 탄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환매가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환매를 분산시키기 위해 대우채
제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던 투신사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증권
그러나,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기업개신작업으로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회사
업금을 축소해 나가는 등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갔다.

화계획에 입각하여 보유유가증권의 매각, 인원축소 등을 통한 관리비 절감으로 차
나머지 투신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8년 8월 정구한 경영정상
에게 모두 환매한 후 폐쇄하였다.

들은 수탁고가 많지 않고 신탁재산의 손실도 거의 없었으므로 신탁재산을 고개를
였다. 동방페레그린투신은 동방페레그린증권과 함께 인가취소되었다. 이를 투신사
람은행이 합병되면서, 오뚜크투신은 제일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진폐업후 해산하
조정계획에 따라 자체 정리되었다. 고려투신은 고려증권의 부도로, 보람투신은 보
한편, 일부투신(금융)사(108)의 경우는 모기업이 부도가 나가거나 대주주의 구조
그 관리자를 통해 손실이 보전되도록 하였다.

에서 5,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함으로써

성에 대비하여 투신사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우로 인한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나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대우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과 기존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 1월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주주 등이 3조원을 출자하였다.(한국투신 2조원, 대한투신 1조원). 이후 대우로 인한 손실이 확정되면서 늘어난 부분과 기존의 신탁재산의 부실을 클린화하는 과정에서 양 투신사가 부담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양 증권사에 2000년 6월 4조9천억원을 추가 출자하였다.(한국투신 3조원, 대한투신 1조9천억원)¹⁰⁹⁾ 이와 함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부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¹¹⁰⁾

한편,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축소하고 고객의 환매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00년 1월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18조5천억원의 대우 무담보 채권을 6조4천억원에 매입하였다.

109) 2000년3월말 당시 양 투신사의 자산부채초과규모는 △5조5천억원이었으나 이중 6,000억원은 자구계획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4조9천억원 지원

※ 한국·대한투신 부실규모 (2000. 3말, 조원)

구 분	한 투	대 투	계
A. 99.10말 자산초과부채규모	1.2	0.5	1.7
B. 대우관련 손실			
(대우무보증채)	1.9	1.5	3.4
(대우콜 ¹⁾ 등)	(1.6)	(0.7)	(2.3)
(대우콜 ¹⁾ 등)	(0.3)	(0.8)	(1.1)
C. 대우 이외 관련 손실			
(부도채권 : 법정관리, 부도, 화의, 청산등)	1.6	0.9	2.5
	(0.6)	(0.2)	(0.8)
(준부도채권등 : 워크아웃, 투기등급채권, 리스채등)	(1.0)	(0.7)	(1.7)
D. 기타 ²⁾	0.7	0.2	0.9
계(E) = A+B+C+D	5.4	3.1	8.5
공공자금지원(F)	2.0	1.0	3.0
자산초과부채규모(E-F)	3.4	2.1	5.5

주 1) 종금사 등을 경유한 대우콜 자금에 대해 추정손실률 50% 적용

2)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

110) 금융감독원에서는 2000년2월23일부터 3월20일간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부실책임규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투신 12건(문책 8, 개선 1, 주의 3), 대한투신 6건(문책 5, 주의 1)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한국투신 임직원 16명(해임권고 1, 업무집행정지 3, 문책 12), 대한투신 임직원 10명(해임권고 1, 업무집행정지 2, 문책 7)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각각 4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 표 2-66 〉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0.8월 기준 단위: 억원)

자금철처	사 용	출 자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	-	-
회수자금		20,000	64,074	84,074
소계(ㄱ)		20,000 ²⁾	64,074	84,074
공공자금(ㄴ)		38,000 ³⁾	-	38,000
계(ㄱ+ㄴ)		58,000 ⁴⁾	64,074	122,074

주 1) 계약액 기준

2) 투신사에 총 예금보험공사가 49,000억원이 출자되었으나 이중 산은·기은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한 29,000억원은 공공자금에 포함

3) 2000년1월 양투신사에 대한 출자금(3조원) 중 정부의 직접출자 19,000억원만 포함

4) 2000년6월 출자는 전환증권사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투신사 출자분으로 계상

이처럼 원칙적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신사에 대해 공적자금이 지원된 데 대해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투신권이 부실화될 경우 주식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막대한 부채규모를 가지고 있던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부담을 투신권에서 계속 떠안을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최대 50% 최소 5%의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그동안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투신사 및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채권시가평가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하였다¹¹¹⁾. 종래의 장부가평가방식은 채권의 취득가액에 이자가 가산되도록 평가함으로써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환매지급금액과 채권의 시장가격의 차이만큼을 손실로 떠안게 되어 부실규모가 커졌으며,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손실

111) 2000년7월1일부터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을 수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소멸하도록 하였다.

를 우려하여 투신자들이 채권매매를 상대적으로 기피함으로써 채권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채권시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의
해 발생했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손익이전 문제가 해소되고 운용실적의 공시
로 투신사 및 펀드매니저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신탁배당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투신사 자산공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한 신탁재산공용보고서를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100억원이상인 신탁재산¹¹²⁾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
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채별의 제2금융권 지배를 막고 자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하는 한편, 투신사
가 고객재산을 고객 이외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
산공용상의 제한과 함께 투신사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투신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신탁재산 총액
이 6조원이상인 대형 투신사¹¹³⁾는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
록 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수주
주권의 행사요건도 일반상장법인 요건의 1/2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모든 투신사
는 내부의 업무처리절차, 고객관리, 자산공용위험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
준을 설정하고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임명토록 하였다.

(4) 보험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8년 5월 11일 총 50개의 보험사중 자금여력이 부
족한 18개 생보사와 4개 준보사 등 22개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회계법인의 실사와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개 생보사(국제, BYC, 태양, 고려)를

112) 금액기준으로 전체 펀드의 88%가 해당됨

113) 한국투신, 대한투신, 제일투신, 현대투신, 한대투신, 삼성투신, I.G투신, 교보투신, 조흥투신, 주은투신 등 9개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1998년 8월 11일부터 영업을 정지한 후 우량 대형생보사에 계약이전 조치(국제→삼성, BYC→교보, 태양→흥국, 고려→제일)를 1998년 8월 21일 내렸다.

한편, 1998년 8월이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14개 생보사중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6개 부실생보사(국민, 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2조9천억원)한 것으로 밝혀진 대한생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대한생명의 경우에는 적정한 인수자가 없어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우선 추진중이며 나머지 6개 부실생보사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의 축소와 고용안정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가에게 공개매각 또는 계약이전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다.¹¹⁴⁾

〈 표 2-67 〉

6개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추진현황

회사명	국민	동아	태평양	조선	한덕	두원
인수사	SK	금호	동양	현대	SK	대한
인수방식	제3자매각(M&A)					계약이전
MOU체결	2000.2.29	99.11.9	99.12.9	99.10.30	99.12.29	99.12.2
본계약	2000.3.29	2000.2.18	2000.3.29	2000.1.12	2000.5.10	99.12.2

한편, 한국 및 대한보증보험사는 1998년 11월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여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누적부실이 너무 커서 효율적인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기존 주식이 전액 소각된 후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중에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대우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라 향후 약 6조원규모의 대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출자규모를 결정하여 출자 지원중이다.

114) 대한생명의 처리 및 지원배경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pp. 148~150을 참조하기 바람

〈 표 2-68 〉

보험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사 용 자금처치	출 자	출 연	자산매입등	소계(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39,625	14,009	-	53,634	13,660	67,294
회수자금	9,750	1,955	3,335	15,040	3,797	18,837
소계(ㄱ)	49,375	15,964	3,335	68,674	17,457	86,131
공공자금(ㄴ)	18,822	-	-	18,822	54	18,876
계(ㄱ+ㄴ)	68,197	15,964	3,335	87,496	17,511	105,007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5)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적자금 지원

1997년말 231개사가 영업중이던 상호신용금고는 기업부도 증가 및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로 업종 전반에 걸쳐 경영부실이 급속하게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호신용금고업계의 지구노력을 유도하여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되, 회생이 어려운 부실금고는 제3자 매각 및 가교금고¹¹⁵⁾로의 계약이전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8월 현재 42개의 금고가 인가취소되고 19개 금고가 합병으로 소멸되었으며 15개 금고가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금고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15) 1998년9월 부실금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한아름금고가 설치되었다. 2000년 8월말 현재 총 41개 금고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한아름금고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총 4조2천억원을 예금보험기금 차입(2.9조원), 자산의 회수(1.2조원),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배당(0.1조원) 등을 통해 조성하여 퇴출금고 예금대지급(3.5조원), 예금보험기금 차입금 상환(0.2조원), 자산매입대금(0.1조원) 등에 총 3조9천억원을 지출하여 약 3천억원의 시재금을 보유하고 있다.

〈 표 2-69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사용 자금철처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대출 등	소계(A)	부실채권 매입(B) ¹⁾	계(A+B)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	-	28,977	2,085	31,062	1,051	32,113
회수자금	-	9	-	-	9	187	196
소계(ㄱ)	-	9	28,977	2,085	31,071	1,238	32,309
공공자금(ㄴ)	1	-	-	-	1	-	1
계(ㄱ+ㄴ)	1	9	28,977	2,085	31,072	1,238	32,310

1) 실제 인수액 기준임

1997년말 1,666개에 달하던 신용협동조합도 신용협동조합법상 부실처리기준에 입각하여 경영지도 및 자율합병을 통해 자체정상화 또는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 8월 현재 인가취소 2개, 합병 101개, 해산·파산 237개 등 총 340개 조합이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금대지급을 위해 지급된 공적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70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

(2000.8말 기준 단위 : 억원)

자 금 출 처	예 금 대 지 급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12,647
회수자금	1,934
계	14,581

〈 참고 〉 리스사의 구조조정

리스사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1997년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이은 부도로 리스사도 부실이 심화되었다. 1998년 4월말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총 25개사중 21개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리스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리스사는 모두 은행의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대주주인 모은행의 처리방침에 따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5개 정리은행의 자회사인 리스사(경인·중부·대동·동남·동화리스)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경인리스)하거나, 제3자인수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중부리스)하고 있으며, 대동·동남리스 및 동화리스는 경인리스에 자산·부채를 이전하고 청산하는 절차를 추진 또는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이 심한 서울, 대구, 중앙, 광은, 부산리스 등 5개사와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다가 채권단간 합의도출에 실패한 기업리스 등 6개사의 경우에는 가교리스사를 통한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가교리스사를 통한 자산부채 이전방식을 활용할 경우 리스거래 기업이 계속 리스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파산처리방식에 비해 채권금융기관의 부실도 축소되는 이점이 있다.

기타 리스사의 경우에는 기업개선작업(개발리스), 사적화의를 통한 채무조정(조흥, 한미, 주은, 경남, 한빛, 리스), 합병(한일+상은리스, 산업+한국기술금융)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중이며 국민, 외환, 전은리스 등 3개사는 채무조정이나 제3자 매각 또는 자산·부채 이전방식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리스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은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는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 資産管理公社·預金保險公社, 政府 등 資金支援主體別 公的 資金 支援現況

가.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부실채권이라 하면 「자산관리공

사법」 제1조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¹¹⁶⁾중 부도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지칭하며,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 IMF등과 합의한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중 매입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에 매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와 매각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1997년 11월 23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한 이후 2000년 8월말까지 정부보증채권발행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20조5천억원과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회수한 자금중 9조5천억원 및 공공자금 1조1천억원을 재사용하는 등 31조1천억원¹¹⁷⁾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75조7천억원어치(계약액 기준)를 매입하였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은 1998년 9월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잠정가격에 매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후정산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 재발을 방지하고 매입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법원의 담보물건별 평균낙찰율등을 감안하여 확정매입율로 매입을 하게 되었다.

116)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기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채권을 말한다.

117) 실제 인수액 기준임

〈 표 2-71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

채권구분		1998년9월이전(개별정산)	1998년9월이후(확정매입)
일반채권	담보부채권	유효담보가액의 70~75%	담보가용가액의 45% 유효담보가액의 45%(계약이전대상)
	무담보채권	- 회수의문 : 채권액의 10~20% - 추정손실 : 채권의 1~3%	원금채권액의 3%
특별채권	담보부채권	채권액의 70~75%	유효담보가액의 28.2%
	무담보채권	채권액의 20~60%	원금채권액의 3%
리스자회사채권		-	원금채권액의 50%

주) 유효담보가액: "감정평가액-선순위채권", "채권액", "근저당설정액"중 가장 작은 금액
 담보가용가액: "감정평가액-선순위채권"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여 47.2조원규모를 매입하였고, 종금 2조7천억원, 보험 7조원, 증권 1천억원, 금고 2천억원, 투신 18조5천억원 규모를 매입하였고, 평균매입율의 경우에는 초기 개산가격방식으로 매입한 종금사의 경우와 대부분 담보부여신인 금고의 매입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약39%수준에서 매입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매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2-72 〉

금융권별 부실채권 매입

(단위 : 억원)

구 분	은 행	종 금	보 험	증 권	금 고	투 신	계
채권액(A)	472,222	26,988	70,224	1,152	2,103	184,788	757,477
매입액(B)*	195,250	17,555	16,711	564	1,249	64,074	295,403
평균매입율 (B/A×100)	41.3%	65.0%	23.8%	49.0%	59.4%	34.5%	39.0%

* 계약액 기준임. 단, 계약후 정산결과 부실채권의 실제 인수액은 21조1,435억원(은행), 1조5,764억원(종금), 1조7,511억원(보험), 759억원(증권), 1,238억원(금고), 6조4,074억원(투신)이며 총 합계액은 31조 781억원임

한편, 자산관리공사의 실제 부실채권매입 규모는 계약 후 정산·해제등의 파
 정을 거쳐 당시와는 달라지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간에 부실채권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우선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실채권과 그 근거서류를 받
 아 우선 매각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채
 권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그 결과 아래 표에서 "인수(A)"에 해당) 한편, 사
 후정산조건으로 매입한 법정관리·회리관련 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등에 대한 가
 치가 확정되게 되면 가치정산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그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
 산하는 한편 법정관리·회리 인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채권의 규모를 조정하게
 된다.(그 결과 아래 표에서 "실제인수(C=A+B)"에 해당한다. 단, 금융기관의 경
 우에는 자산관리공사와 달리 채권조정작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후 계약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된 채권과
 매금을 서로 정산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순매입액과 매
 입에 사용된 순매입대금규모(아래 표에서 "순인수(C-D)"에 해당)가 된다.

이처럼 부실채권의 매입 후에 다양한 파정을 거쳐 실제 매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계약액기준으로 물계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다.

〈 표 2-73 〉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인수현황(2000. 8. 31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기관		계약상인수		인수(A)		증/감(B)		실제인수(C=A+B)		환매/해제(D)		순인수(C-D))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합 계		757,477	295,403	744,601	286,034	82,884	24,747	827,485	310,781	142,294	76,853	685,191	233,928
시 중 은 행	국민은행	15,375	5,512	15,018	4,889	1,416	-145	16,434	4,744	1,307	732	15,127	4,012
	대동은행	8,596	1,931	8,599	1,934	740	-22	9,339	1,912	201	147	9,138	1,765
	동남은행	5,481	1,345	5,482	1,345	547	-43	6,029	1,302	122	79	5,907	1,223
	동화은행	13,304	2,622	13,305	2,622	1,081	-308	14,386	2,314	193	109	14,193	2,205
	보람은행	4,694	2,377	4,364	2,187	632	199	4,996	2,386	2,410	1,139	2,586	1,247
	서울은행	75,579	30,360	77,940	31,261	16,121	-1,049	94,061	30,212	29,513	16,312	64,548	13,900
	신한은행	15,952	6,688	15,297	6,327	4,256	2,302	19,553	8,629	6,813	3,148	12,740	5,481
	외환은행	24,727	12,192	23,383	11,354	5,161	3,777	28,544	15,131	6,753	3,883	21,791	11,248
	장기은행	3,457	2,550	3,437	2,466	69	-24	3,506	2,442	2,163	1,684	1,343	758
	제일은행	79,316	30,311	85,495	31,655	2,488	-4,043	87,983	27,612	28,104	16,548	59,879	11,064
	조흥은행	33,239	15,795	33,597	15,560	6,587	3,972	40,184	19,532	8,559	4,420	31,625	15,112
	주택은행	8,389	2,702	8,261	2,426	910	300	9,171	2,726	1,215	499	7,956	2,227
	평화은행	2,666	740	2,354	705	324	16	2,678	721	531	231	2,147	490
	하나은행	3,409	1,132	3,302	1,072	443	184	3,745	1,256	687	472	3,058	784
	한미은행	9,371	2,860	9,028	2,639	1,670	668	10,698	3,307	1,068	573	9,630	2,734
	한빛은행	47,830	22,941	44,959	20,976	8,648	4,449	53,407	25,425	10,390	5,003	43,017	20,422
	소계	351,385	142,057	353,621	139,418	51,093	10,233	404,714	149,651	100,029	54,979	304,685	94,672
지 방 은 행	강원은행	4,199	1,863	1,610	806	673	370	2,283	1,176	293	159	1,990	1,017
	경기은행	14,581	3,708	14,615	3,742	885	-79	15,500	3,663	645	338	14,855	3,325
	경남은행	7,687	3,670	6,493	3,230	1,613	995	8,106	4,225	1,777	895	6,329	3,330
	광주은행	3,837	2,168	3,471	1,988	800	396	4,271	2,384	2,388	1,208	1,883	1,176
	대구은행	9,478	4,673	8,527	4,228	2,909	1,603	11,436	5,831	1,611	680	9,825	5,151
	부산은행	9,780	4,899	9,081	4,575	2,274	1,563	11,355	6,138	2,239	1,187	9,116	4,951
	전북은행	1,484	789	1,378	740	429	199	1,807	939	75	24	1,732	915
	제주은행	2,370	1,009	1,245	482	1,148	714	2,393	1,196	368	182	2,025	1,014
	충북은행	2,804	1,160	2,720	1,136	233	9	2,953	1,145	880	377	2,073	768
	충청은행	7,416	1,984	7,416	1,984	472	-397	7,888	1,587	11	4	7,877	1,583
	소계	63,636	25,923	56,556	22,911	11,436	5,373	67,992	28,284	10,287	5,054	57,705	23,230

금융기관		계약상인수		인수(A)		증/감(B)		실제인수(C=A+B)		환매/해제(D)		순인수(C-D)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특수은행	기업은행	7,333	2,356	6,933	2,274	409	-180	7,342	2,094	988	460	6,354	1,634
	산업은행	39,987	20,148	36,780	18,565	12,507	7,200	49,287	25,765	12,189	6,190	37,098	19,575
	농협중앙	7,713	3,821	4,391	2,321	4,088	2,258	8,479	4,579	905	500	7,574	4,079
	수협중앙	1,123	467	528	199	590	318	1,118	517	297	139	821	378
	축협중앙	1,045	478	1,025	467	51	78	1,076	545	773	448	303	97
	소계	57,201	27,270	49,657	23,826	17,645	9,674	67,302	33,500	15,152	7,737	52,150	25,763
종합금융사		26,988	17,555	26,988	17,555	1,308	-1,791	28,296	15,764	9,619	6,396	18,677	9,368
보증보험사		69,985	16,661	69,986	16,661	629	800	70,615	17,461	6,422	2,186	64,193	15,275
생명보험사		239	50	221	50	9	0	230	50	15	7	215	43
증권사		1,152	564	684	299	755	460	1,439	759	36	19	1,403	740
상호신용금고		2,103	1,249	2,100	1,240	9	-2	2,109	1,238	734	475	1,375	763
투신(운용)사		184,788	64,074	184,788	64,074	0	0	184,788	64,074	0	0	184,788	64,074

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대지급 의무를 지며 이와 함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원, 대출, 자산매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8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은 총 1,722개 기관으로서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보험, 중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 표 2-74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권별 부보금융기관 현황

(2000년 8월말 단위: 개)

구 분	국 내	외 국 계	기 타	계
은행	21	44	44*	109
증권사	43	22	-	65
보험사	27	13	-	40
(생명보험)	15	8	-	23
(손해보험)	12	5	-	17
종합금융회사	9	-	-	9
상호신용금고	164	-	-	164
신용협동조합	1,335	-	-	1,335
계	1,599	79	44	1,722

* 신용사업 영위 단위수협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52조6천억원(회수자금 재사용 금액 9조1천억원 포함)과 함께 6조3천억원의 공공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자금지원 성격별로 보면 출자에 총 28조7천억원, 출연·예금대지급에 26조3천억원, 자산매입 등에 4조원을 사용하였다.

〈 표 2-75 〉 예금보험공사의 성격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조원)

	출 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계
○ 공적자금	20.5	21.0	2.0	43.5
○ 회수자금	3.0	4.2	1.9	9.1
소 계	23.4	25.2	3.9	52.6
○ 공공자금	5.2	1.0	0.1	6.3
계	28.7	26.3	4.0	59.0

주) 동 수치는 공적자금 성격에 부합하는 자금을 집계한 것으로서 기금을 통해 조성되고 집행된 현금흐름 위주의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음.¹¹⁸⁾

118)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통합예금보험공사가 되기 이전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신협중앙회가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폐쇄종급사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대출금을 통합예금보험공사이전의 신용관리기금이 자신의 채무로 전환한 것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64.4조원임

다.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 현황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위기 초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재원과 업무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이전이나, 법률 등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등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였다.

(1)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는 주로 특수은행의 증자지원과 외환위기 초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증자지원, 대우그룹 사태이후 부실화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증자지원을 위해 활용되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출자하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취득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의 가치를 같게 만든 후 출자하게 되며,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출자에 따른 혜택도 커지는 장점이 있다.

〈 표 2-76 〉

현물출자를 통한 주요 출자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제일·서울은행	한국투신·대한투신	특수은행	계
지원금액	15,000	9,000	78,069	102,069

(2)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후순위채 매입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이를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사채와 은행이 발

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등가교환함으로써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후순위채권의 매입은 총 4차례에 걸쳐 은행권에 대해 6조4천억원 규모만큼 이루어졌다.

(3) 정부예산

정부의 예산에 의한 지원은 특수은행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총 2조3천억원이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규모에는 일부 국가기관의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특수은행을 경유하여 출자된 금액(6,5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위한 64조원의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채권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이자에 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4) 한국은행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7천억원의 증자를 지원하였다.

〈 표 2-77 〉

은행별 후순위채 매입내역

(단위 : 억원)

은행명	1차매입(97.12.24)		2차매입(98.12.29)		3차매입(99.6.17)		4차매입(99.12.30)		비고
	금액	가산금리	금액	가산금리	금액	가산금리	금액	가산금리	
조흥은행	4,500	1%	347	1%					
상업은행	1,970	1%	363	1%					한빛은행
제일은행	1,420	2%							
한일은행	4,640	1%							한빛은행
서울은행	2,700	2%							
외환은행	3,860	1%	363	1%					
한미은행			1,964	0% : 1,333 1% : 631					
신한은행	2,400	1%	1,385	0%					
국민은행	2,400	1%	1,536	0% : 1,000 1% : 536					
동화은행	1,250	2%							신한은행
동남은행	270	1%							주택은행
대동은행	253	2%							국민은행
하나은행	640	1%	1,032	0% : 717 1% : 315					
보람은행	1,200	1%	631	1%					하나은행
평화은행	800	1%					1,000	2%	
주택은행	2,520	1%	1,845	0%					
대구은행	1,040	1%			1,000	1%			
부산은행	1,160	1%					1,000	1%	
충청은행	640	2%							하나은행
광주은행	1,500	1%	473	1%			1,000	1%	
제주은행	420	2%							
경기은행	710	1%							한미은행
전북은행	800	1%					500	1%	
강원은행	430	2%							조흥은행
경남은행	1,920	1%	631	1%			1,000	1%	
충북은행	460	2%							
기업은행	2,990	1%	3,600	1%					
장신은행	800	1%	347	1%					국민은행
총 계	43,693		14,517		1,000		4,500		63,710

〈 참고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정부는 1997년말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제지원조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합병이나 계약이전, 자산양도와 같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재산의 변동에 따른 세금부담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등과 같이 건전성제고를 위한 기준의 강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일몰기한조항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요 세제혜택내용을 보면 “금융기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① 금융기관 양도 자산에 대한 특별 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제2항)	☐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금융기관 :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받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 ○ 자산관리공사 :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②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3항, 제4항)	☐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된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99사업년도까지 적용
③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50조)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법에 의해 1999.12.31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 합병등으로 2000.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구 분	지 원 내 용
④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52조)	□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등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소
⑤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1항)	□ 부실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⑥ 자산·부채 인수시 자산부족액의 손금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1항)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을 손금에 산입
⑦ 취득세, 등록세 및 증권거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19조, 120조)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Ⅱ. 公的資金의 回收現況과 回收展望

1. 公的資金의 回收現況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현황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8월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75조 7,477억원중 약 45%수준에 달하는 34조1,018억원을 국내외 매각 또는 자산담보 부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정리하여 17조8,603억원을 회수하였다. 34조1,018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투입한 공적자금은 15조9,496억원이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자산관리공사는 1조9,107억원의 매각이익을 거두었다. 이처럼 공적자금 회수과정에서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시가에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상승등 시장여건이 호전될 경우 매입가격이상의 자금회수가 가능해지게 되며, 이와 함께 부실채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회수율을 높인 데도 원인이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리 기법중 “국제입찰”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직접 자산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경영입찰에 참여하는 자산매각방식으로서 1998년도에 2회, 1999년도에 4회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8월말 현재 부실채권 4조3,472억원을 정리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의 발행은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매각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부실채권 6조286억원을 정리하였다.

“채권개별매각”은 시장성이 있는 채무기업의 개별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으로서 2000년 8월말까지 253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환매와 해제”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되돌려주고 매입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로서 14조2,294억원이 환매·해제되어 매입대금 7조6,853억원이 회수되었다.

〈 표 2-78 〉

부실채권 정리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매입액	매각액	매각익
국제입찰	43,472	11,078	12,989	1,911
ABS발행	60,286	29,997	30,095	98
AMC매각	5,290	1,290	1,986	696
채권개별매각	253	32	83	51
법원·공사경매	33,620	20,601	26,659	6,058
기타 자진변제등	55,803	19,645	29,938	10,293
소 계	198,724	82,643	101,750	19,107
환매·해제	142,294	76,853	76,853	0
정리실적 계	341,018	159,496	178,603	19,107

주 1) 회수완료기준임

2) 매각성사된 채권 62,548억원(회수예상액 23,830억원)을 반영한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403,566억원(회수액 202,433억원)임

〈 참고 〉 자산유동화제도(Asset Backed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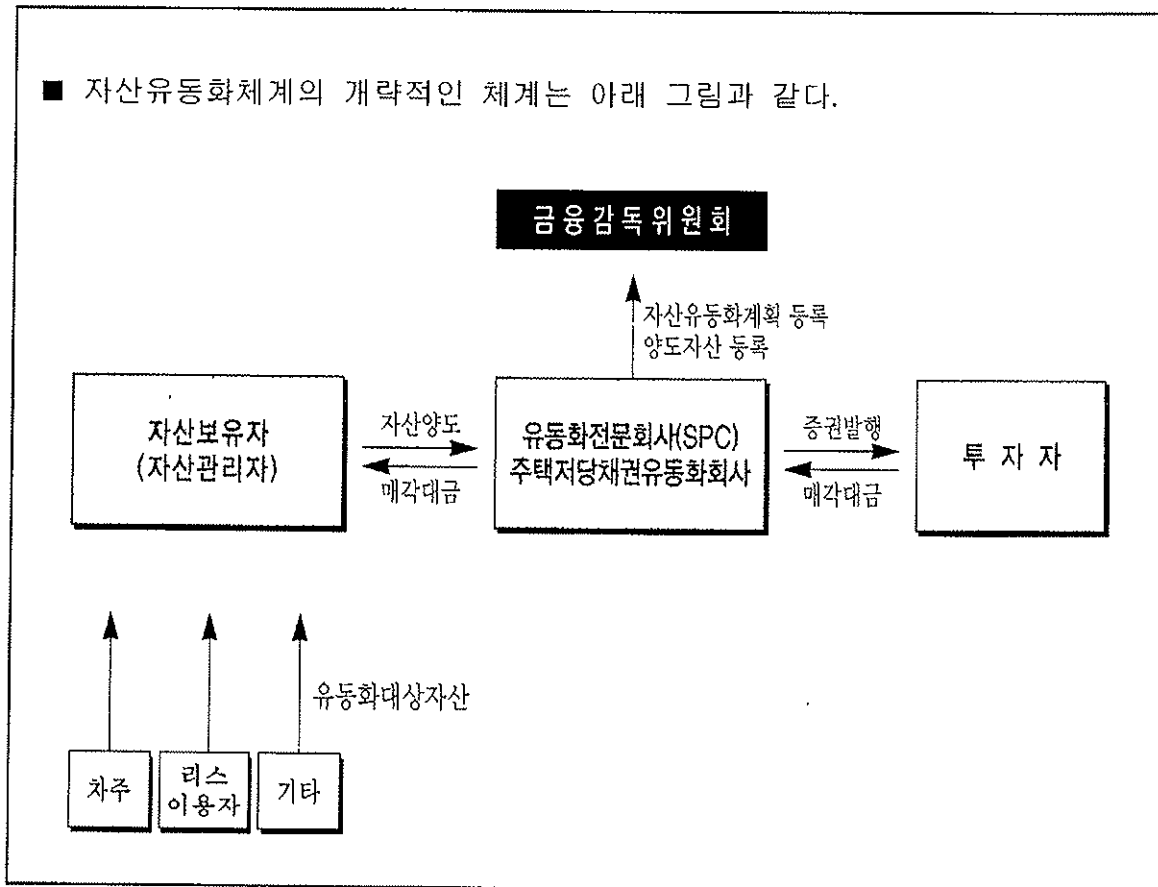
자산유동화제도는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보유 대출채권 등을 모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직접 매각보다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유동화제도는 지난 수십년전부터 유럽시장에서 이미 존재해 왔으나, 전형적인 유동화형태는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1980년대 들어 주택저당채권(mortgage)이 활발하게 유동화되었고, 정리신탁공사(RTC)가 저축금융기관(S&L)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제도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가 도입되어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자산유동화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4월 14일 발표된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1998년9월16일 시행)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동차 할부채권, 카드론 채권 또는 담보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고 있다. 한편, 주택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mortgage)의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1999년 4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유동화전문회사(SPC)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또는 MBS)을 발행하게 된다.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근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등을 모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 자산유동화체계의 개략적인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현황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8월말 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중 7조4,635억원을 회수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파산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분배에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5월 공사내 채권회수전담조직(채권관리본부)을 설치하여 채권회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175개 파산재단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보유자산을 적정가에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조기배당을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21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초기의 영업정지단계에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경영관리인으로 선임되고, 해산 또는 파산된 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게을리 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회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¹⁹⁾

2000년 8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총 202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원인 조사를 거쳐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부실 책임자 2,094명을 적발하고 이 중 721명을 대상으로 3,9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가압류 1,397건에 5,894억원, 가처분 270건)하였다.

이러한 자금회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 채권회수기간이 단축되어 67개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4조7,830억원을 회수하였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1조4,181억원, 지분매각을 통해 5,000억원을 회수하고,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 상환을 통해 4,370억원, 기타 보험사의 주식매각 등을 통해 268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자산매각을 통해서도 2,986억원을 회수하는 등 자금 회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표 2-79 〉

예금보험공사 자금회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주식매각	파산배당등	자산매각	계
회수금액 ¹⁾	23,819 ²⁾	47,830	2,986	74,635 ³⁾

주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포함

2) 제일은행 유상 감자분 14,181억원 포함

3)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신용관리기금·신협중앙회가 종금·금고·신협 등에 단기대출금 등으로 지원한 금액 중 회수한 1조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8.5조원임.

119) 2000년8월말 현재 27개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인, 5개 법인의 청산인, 27개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120) 서울지방법원 1997. 12. 26자 97파9307 결정, 서울지방법원 1997. 12. 26자 97파9308 결정에서 동서증권
과 고려증권이 일부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
은 구 회사정리법을 적용하여 도산한 금융기관은 경제의 기민성이 없고 회사정리절차를 통하여 경제
를 도모하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관련해서는 일반기업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의 기민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법정관리
인이 선임되고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회사정리절차
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금융기
관 영업의 주요 원천인 「신용」이 훼손되어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경제하기 곤란
하여 계속가지보다 청산가지가 크다고 할 수 있어 회사정리절차가 금융기관의
경제절차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120)

파산의 경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인과 동원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해산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타리 정함이 없
는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잔여재산을 배분하지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
한법률」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원
에 금융전문가 또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추천할 수 있고, 법원은
동 추천인이 금융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당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산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해 금융
기관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 포
함)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대채권자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공적자금을 회수기능을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일반 기업과 동일
하게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파산법 등에 의하여 청산인(해산인), 파산관재인(파산인), 법정관리인(회사
정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법인과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
청산인 등이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 관련인, 파산관재인, 청산인

121) 등 공적자금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부채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또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채자산의 소유자와 수요자인 투자자가 분담하면서 향후 자산가치 상승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CRV)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각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부채채권을 매각하는 데는 큰 양한 부채채권 매각방법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ETP) 등 다 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자산유동화증권(ABS), Equity partnership¹²¹⁾ 등 다 터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지고 손실규모도 커 를 회수하여 약 1.9조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 채권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2000년 8월말 현재 투입자금 대비 112%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부채채권을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손실이 없 이다.

채권·보유주식의 매각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투입자금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 에 시점에서 볼 때는 실현된 비용(realized cost)은 아니다. 앞으로 부동산·부채 공적자금은 잠재적 부채의 우려는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원으로서는 현

2. 向後 公的資金 回收展望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부채한 때에는 적가시정조치에 의거하여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용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채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금융 기관별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금융기 관에 대한 적가시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관 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 인은 임원의 직무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부채금융 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관 리인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임할 수도 있다.

122)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3년 무이자 융자조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차관자금 출자금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은행, 투신, 투신)금액의 경우에도 해당 금 산하지 않는 한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채를 발행한 금융기관(모두 은행임)에서 이를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 공적자금관리기금 보유채권과 후순위채권을 교환한 것으로서 만기가 되면 후순위 차관자금 출자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보면 후순위채 매입은 후순위채 만기시점까지 한편, 공적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매입,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현물출자, 상환이 안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손실로 귀결시켜야 할 것이다.

보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결국 주식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후 국공적으로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자 지원금액의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비용도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귀결될 수 최종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물론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자비용을 금이상을 회수하여 예금대지금으로 인한 손실과 이자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리공사가 상환부담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 및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원 예산에서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융자"122)되는 것으로서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매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축소될 수 있다.

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에 대하여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차액만큼의 손실이 불가피한 전 다만, 예금대지금 자금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된 금융기관 전망하고 있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은행 내재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인력축소, 임부의 효율성 향상 등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영업성파가 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과거의 부실이 대부분 정리되었고 조적 및 원혜이상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흥, 한빛, 제일, 서울은행을 예금보험공사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보유은행 주식이 예면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매각을 하게 되면 역시 회수에 큰 문제가 없게 된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투입한다고 해서 모두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취득한 자산등의 매각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손실규모는 향후 자금회수노력, 시장여건 등 가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 및 손실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는 보유주식의 매각 등 본격적인 자금회수가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이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의 자금회수노력을 독려하는 등 자금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1 〉 주요국의 공적자금 회수 실적

□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1992년 자산규모 2위 규모인 노드은행(Nordbanken)과 4위 규모인 고타은행(Gota bank)을 국유화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을 합병한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994년에는 스웨덴은행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정부출자은행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은행의 자문을 구하였고 투자자간 경쟁을 조성하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1998년말 현재 57.5%를 매각하여 투입자금(650억 크로네, 원화 약 7.3조원) 전체를 이미 회수하였다. 다만, 아직도 정부가 은행 지분의 42.5%를 보유하고 있어 완전한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미국

미국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이 부실해짐에 따라 부실해진 저축대부조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1989년 8월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 : RTC)를 신설하였다. RTC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030억달러와 부실조합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820억달러 등 1,850억달러를 활용하여 747개의 부실조합(총자산 4,026억달러)을 정리하였다.

RTC에 의하여 총 4,026억달러의 자산중 87%가 회수되었는데, 회계감사원은 총 손실(이자비용등 포함)을 879억달러(부실조합 자산대비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중 납세자 부담이 820억달러(조성된 공적자금 대비 85%) 수준인 것으로 보았다.

부실조합의 자산대비 RTC의 손실율을 보면 1989년에는 3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그때 정리된 부실조합들이 가장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고 영업권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정리비용은 점차 하락하여 1992년과 1993년에는 전국적인 경기가 호전되어 자산대비 비용의 비율은 9%~10%사이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 되었다.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 참고 2 〉 공적자금과 국가채무와의 관계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Manual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공공차관 등)와 지방정부 등 국가가 직접 상환 및 이자부담을 지는 채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 관련 보증채무 64조원 등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인 우발채무와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 등 통화당국의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IMF기준상 국가채무^{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수되는 경우 국가채무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부실채권매입을 위해 지원한 자금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후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자금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출자규모 이상으로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금대지급 부분등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퇴출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정리과정을 통해 일부 보전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부분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출자자금의 초과회수금액등으로 보전할 수 없는 예금대지급등의 미회수 부분은 재정부담으로 남게되어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주) IMF GFS Manual상 국가채무

- ①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 채무 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등으로 작성
 - Debt statistics should correspond in coverage to the government being studied, that is, central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etc.
- ② 국가가 직접 상환 및 이자부담을 지는 채무만 포함
 -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serviced through interest payment and/or redemption should be included in debt.
- ③ 국가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통화당국의 채무, 국가채무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무 등 → 국가채무에서 제외
 - Government guarantees of the debts of others should be excluded, along with other contingent liabilities, until the government is called upon to take over and service that debt.
 - The monetary authorities' obligations-for currency issues, for example-are excluded from government debt, as monetary authorities' functions are considered to be not a part of government bu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sector.

이와 함께 이자융자자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양 기금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재정에 상환해야 하나, 만일 회수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의 손실로 잡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구 분	상환가능성	국가채무 전환가능성
증자지원 자금	→ 원금이상 회수가능	전액 회수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회수분만큼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
출연 및 예금대지급 자금	→ 손실발생 불가피	
부실채권 매입자금	→ 원금수준 회수가능	
이자융자채원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의 조성과 이에 따른 이자지원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적자금 회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여 백